



2022.4.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안옥진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보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오지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장희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예산 기준 751조 2,591억원 규모로 2020년 결산 기준 751조 393억원 대비 2,1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2021년 예산 규모는 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 607.7조원보다 약 143.5조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관광·체육업계·농어민 등 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구현하는 실행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부 공공기관의 이해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연혁, 통제 및 관리, 지배구조 등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념과 연혁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통제 및 관리에서는 예산회계, 경영실적 평가, 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와 역대 정부의 관리정책을, 지배구조에서는 내부·외부지배구조로 나누어 법·제도적 체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핵심 내용인 재무, 유형,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 및 재무 현황 등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차례

1부 공공기관의 이해

1. 공공기관의 의의	2
가.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나. 공공기관의 유형	4
다. 국외의 공공기관	6
2. 우리나라 공공기관 변천사	10
가. 2007년 이전 공공기관	10
나. 2007년 이후 공공기관	15
3. 공공기관 통제 및 관리 정책	19
가.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19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21
다.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23
라.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26
4.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36
가. 내부지배구조	36
나. 외부지배구조	39
5.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42
가. 법령 현황	42
나.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침	44
다. 공공기관 예·결산 관련 지침	46
라.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에 관한 규정	47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48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총사업비관리지침	49
사.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	50

2부 공공기관 현황

I. 공공기관 주요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56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56
나. 공공기관 현황	61
다. 공공기관 변동 현황	62
라.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64
2.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67
가. 공공기관 수입 · 지출 분류 기준	67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70
다.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77
3. 공공기관 인력현황	82
가.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82
나.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 · 현원 현황	84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 현황	92
라.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97
4. 공공기관 인건비 · 복리후생비 현황	100
가. 공공기관 인건비 · 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100
나. 공공기관 인건비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101
다.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104
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111

차례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현황	115
가. 장애인 근로자 현황	115
나. 체험·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 현황	117
다.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118
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120
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 현황	121

Ⅱ. 공공기관 재무 및 관리현황

1. 공공기관 재무	124
가.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124
나.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125
다. 2020년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129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32
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132
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133
3. 정부출자 공공기관	137
가.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37
나.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141
다.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43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52
가.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152
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155
5.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156
가. 2021년 공공기관 감사(위원회) 현황	156
나. 2020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158

Ⅲ. 공공기관 유형

1. 수지차 보전기관	162
가.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162
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165
다. 2022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 · 보조사업 예산 현황	170
2. 손실보전 공공기관	172
가.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172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 현황	174
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175
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자본잠식 현황	176
3. 연구개발목적기관	177
가.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배경	177
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유형별 현황	180
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평가체계	182
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 효과	190
4. 금융공공기관	193
가. 금융공공기관 개요	193
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197
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현황	200
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206

부록

부록 1.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 · 수시 지정 현황(2022년 3월 기준)	212
부록 2.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2022년 3월 기준)	216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1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공공기관의 이해



1부 공공기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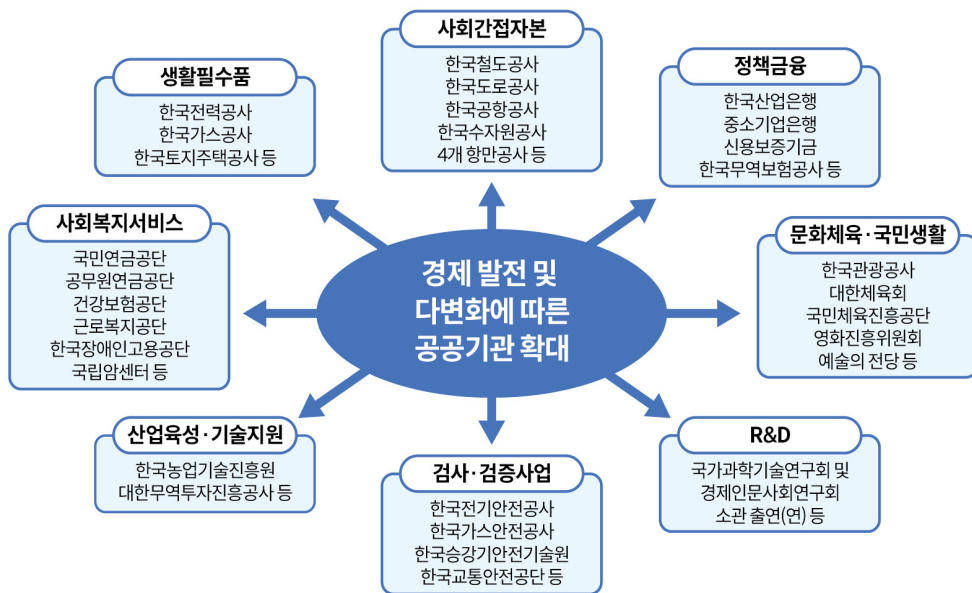
1. 공공기관의 의의

가.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 공공기관은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은 이윤극대화를 단일의 목표로 하는 경영조직과 구별되나,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같은 경우 생산 혹은 제공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경영조직과 공공행정조직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제공하던 사회간접자본, 생활필수품 외에 경제가 발전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확대됨
 - 정부 단일의 차원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기반 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됨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의 공기업은 철도·도로·항만·공항·댐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함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제공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형 공공기관은 특정 산업분야에 정책금융을 제공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금융위기 시에 사적 금융기관(은행, 증권, 투신사, 종금사 등)을 구제하는 역할을 함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암센터 등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건강, 의료, 4대 연금, 산재, 고용 등)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기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승강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운행자동차 검사사업을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검사와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수행하기도 함
 -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등은 국민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기초과학, 항공, 조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함

[공공기관의 주요 공공서비스]



-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¹⁾, 본 보고서 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

- 2020년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345개의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84.9조원으로 2020년 잠정 GDP 1,933.2조원의 약 4.4%로 추계됨
 - 부가가치는 36개 공기업이 40.6조원(GDP 대비 2.1%)으로 가장 컸으며, 96개 준정부기관이 25.2조원(GDP 대비 1.3%), 213개 기타공공기관이 19.1조원(GDP 대비 1.0%)으로 추계됨
 - 부가가치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을 한 결과, 새로 창출한 가치를 의미하며 국민소득계정에서는 국민총생산(GDP)으로 기록함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계는 산출접근법(매출액에서 원재료 등의 주요 생산비와 광고 선전비, 임차료, 교통비 등의 간접생산비를 차감하여 산출)과 비용접근법(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의 본원소득과 고정자산소모를 합하여 산출)을 활용하며, 생산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은 산출접근법,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비용접근법으로 추계
 - * 생산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은 유럽계정체계(ESA 2010)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함

자료 : 명지대학교, 2021, 「공공기관의 GDP비중 추정」, 2021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재정리

나. 공공기관의 유형

-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정부의 출연·출자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직원 수, 총수입액, 자산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함
-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 기타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국회·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6개)	시장형 (15개)	○ 직원 정원 50명 이상 ○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85% 이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 입의 85% 이상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21개)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준정부 기관 (94개)	기금 관리형 (13개)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85% 미만)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 집행형 (81개)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20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연구개발 목적기관 (75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총 350개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2년 1월 지정 기준이며, 2021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기업 유형화 관련 OECD(2018) 기준

- 공기업 유형화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으로 OECD(2018)는 ① 소유권, ② 시장성, ③ 공공성, ④ 기관 규모를 제시하고 있음
- 소유권: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결정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기관 내 의결권, 이사회 임명권, 주식 보유 비율,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함
 - 시장성: 공공기관이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지 여부
 - 공공성: 시장경제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 공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인지 여부
 - 기관규모: 총지출규모, 자산,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

[OECD 공기업 유형화 분류 기준]

기준	내용	세부지표
소유권	-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여부	- 정부의 의결권, 이사회 임명권, 주식 과반수 보유여부, 보조금, 출연금 지급 범위 의사결정 반영 여부
시장성	-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액으로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성	- 시장경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공적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지 여부
기관 규모	- 기관의 운영 및 성과관리의 근간으로 기관규모를 통해 유형화함	- 총지출규모, 자산,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

자료: OECD, 2018,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 재구성

다. 국외의 공공기관

- 국가별로 공공기관을 유형화하는 기준은 각국의 법률, 제도, 문화, 시장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에 따라 각각 다름
- 우리나라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는 「공운법」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구분 기준은 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형을 지칭하는 명칭도 각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있음
- 미국의 공기업은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 제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오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미 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31조제6항 제97호 공기업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인 공기업 및 예산책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음²⁾
- 동법에 따라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과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정부후원기업(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으로 분류 제시되고 있음
 - 공기업은 정부의 투자 및 통제 정도에 따라 정부전액투자기관과 혼합소유기관으로 구분되고 있음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기관유형	세부	특징
공기업 (Government Corporations)	혼합소유기관	•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기업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립하나, 시장지향성을 가지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함
	전액투자기관	
정부후원기업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	•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 • 다만, 특정 부분 모기지, 금융, 학자금 대출 등 신용흐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됨

자료: 정책학회, 2020,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방안」, 재정리

■ 캐나다에서 공기업은 행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공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익성과 경제성이 혼재되어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의 부칙에 근거하여 유형화되고 있으며, 정의 및 소유구조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운영에 대한 공기업의 접근성, 재정의 출처 및 성격을 기준으로 공기업을 유형화하면, 부처형 공기업(Departmental Corporations), 기관형 공기업(Agency Crown Corporations), 면제형 공기업(Exempt Crown Corporations)으로 구분됨
 - 부처형 공기업의 경우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형 공기업은 에너지, SOC와 같이 우리나라 공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고,

2) 미국 사례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고 있음

면제형 공기업은 우리나라 방송공사, 금융위원회와 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관과 유사한 형태임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의 부칙에 근거한 공공기관 유형 및 의미】

구분	특징
부처형 공기업 (Departmental Corporations)	서비스 전달, 연구, 규제 업무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기관형 공기업 (Agency Crown Corporations)	상업적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형 공기업에 비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면제형 공기업 (Exempt Crown Corporations)	「재무행정법」 상 공기업 관련 조항에 대해 예외로 적용되며, 독립적 기관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됨

자료: 정책학회, 2020,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방안」. 재정리

■ 일본의 공공기관은 특수행정법인과 독립행정법인으로 구분되며, 특수행정법인의 경우 「총무성설치법(総務省設置法)」, 독립행정법인은 「독립행정법인통칙법(獨立行政法人通則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특수행정법인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유사한 기관으로 사업의 성격이 민간 기업의 경영형태와 유사할 경우에 한하여 설립법 혹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총무성설치법(総務省設置法)」 제4조 등에 따라 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음
- 독립행정법인은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적인 안정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사업 혹은 업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지위를 부여 받은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총무성설치법」, 「독립행정법인통칙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유형 및 의미】

기관유형	세부	특징
특수행정법인	공단, 공사, 특수은행 등	• 개별법 혹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민간 영역과 유사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익성에 의하여 영리 추구가 불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됨
독립행정법인	중기목표관리법인	•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
	국가연구개발법인	• 일본 경제 및 기타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행정집행법인	•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와 유사한 기능을 위임하고 집행하는 법인

자료: 정책학회, 2020,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방안」.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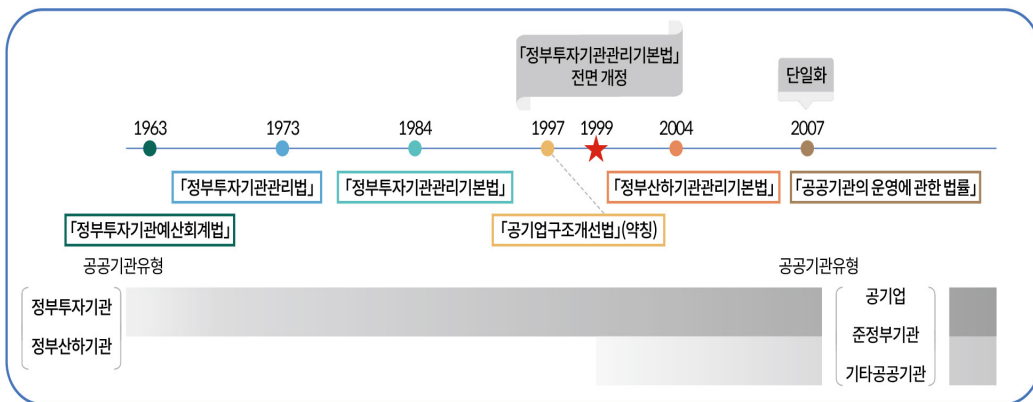
공기업 민영화 관련 국외 사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부채 감축 및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는 1980년대부터 신공공관리론 기조에 따른 행정개혁의 하나로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어 옴
- 1980년대 이후 확산된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부채 감축 및 정부지출 통제의 필요성, 공공서비스의 수준 저하 등에 대한 비판에 따라 정부 규제의 완화를 통한 적정 시장가격 도출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옴
- 영국의 사례
 -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일찍 시도된 영국의 경우 1979년부터 1997년까지 4단계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기 시장 경쟁 체계가 확립된 소규모 분야를 시작으로 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자유화를 도모하고, 철도, 석탄 등 규모가 큰 공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민영화 등의 시도를 통해 약 76개 기관이 민영화되는 등의 성과를 보임
 - 영국은 노동자 및 관계자들의 반대에 따라 점차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발생에 따라 국유화된 은행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가능한 모든 영역의 민영화를 시도하기도 함
 - 하지만, 2017년도 총선을 앞두고 철도요금의 과대 인상, 노동조합의 교섭력 하락 등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며, 민영화된 에너지·상수도 및 보안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의 재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 한편,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함에 따라 재국유화에 대한 논의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문제가 되었던 철도 운영 부분에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쟁을 기반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민영화를 유지하되 정부의 관리범위를 증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일본의 사례
 - 일본 역시, 1980년 대 민간 경제의 활성화 및 공기업 재정 적자 등에 따른 부채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가 시도되기 시작함
 - 일본 공기업 민영화는 국유철도와 같이 경영적자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분할 민영화 및 일본전신전화공사 등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자연독점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옴
 - 한편, 민영화가 수행된 철도 부분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영방침으로 인하여 철도 노선의 폐지 및 요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재국유화를 통한 안정적인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도 함
- 기존에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을 마친 국가들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민영화 진행을 위해서는 적정 가격으로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변천사

- 본 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제정 시기인 2007년 이전과 이후로 시점을 구분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의 흐름에 따라 공공기관 현황 및 운영 부분의 변천사를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관리, 운영되어 오던 이원화된 체계가 일원화된 체계로 개편됨

[공공기관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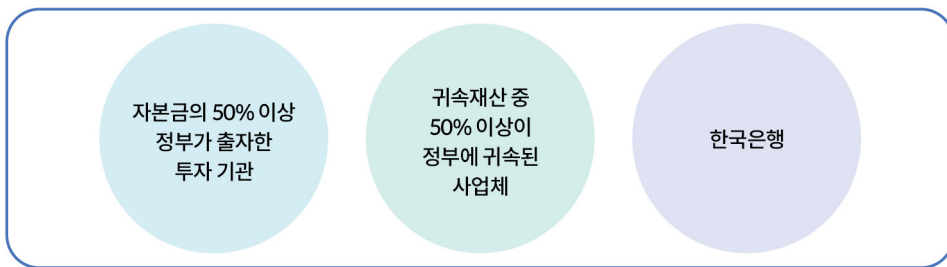


가. 2007년 이전 공공기관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963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1963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제도적인 틀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결산 등과 관련된 부분이 정립됨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던 철도, 통신, 전매 사업과 기타 귀속 사업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인수함에 따라 존재하게 됨
- 1961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공기업에 대한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새로운 공기업 설립하고자 함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은 ①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②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③ 한국은행이라 제시됨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 이후, 1973년 예산 및 회계 부분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됨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토록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23개 기관이 지정됨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투자기관(23개_1975년 기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대한재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준설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국제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토지금고

- 동법에 따라 기본 정책 심의기구인 정부출자관리위원회를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지금의 경영실적 평가와 유사한 감독 기능의 심사·경영분석이 이루어짐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상 심사분석, 경영분석의 의미

구분	내용
심사분석 '제12조'	투자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 및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그 분기가 끝난 4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해야 함
경영분석 '제14조'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투자기관에 대해 경영분석을 실시, 이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을 전제로 경영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라 관리·운영되어 오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에 인하여 기관의 자율 및 책임 경영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1983년 두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³⁾
- 1983년 제정 당시 동법의 적용 범위는 정부가 납입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명시되었으나, 이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내 명시된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총 26개임
- 또한, 동법 제7조(경영실적평가)에 투자기관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경영실적 평가와 유사한 경영실적평가의 근거가 마련됨

■ 1997년도에는 대규모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 법률은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 등을 보장하고자 지배구조 부분에서 「상법」 상 규정을 적용하는 등 관리 및 운영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침
 - 동법 제2조에 따른 대상 기관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임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8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1984년 시행됨

-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 한편, 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
 -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② 사장추천제의 도입, ③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보, ④ 경영공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특히, 1999년 개편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전담 부서인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투자기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가를 전담하던 기구인 정부투자기관경영실적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이원화함
-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의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보조금의 합계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유사하나,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됨
 - 동법은 적용범위, 자율적 운영보장, 이사회, 기관장 선임 및 책무, 경영실적 평가, 기능 및 규제의 주기적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2004년 경영실적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 기관은 87개로 검사·검증, 금융·수익 유형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평가 결과가 제시됨

[2004년 정부산하기관 유형별 현황]

구분	기관명
검사/검증 (11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요업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금융/수익 (11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88관광개발, 별정우체국연합회
문화/국민생활 (13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업진흥 (16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산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계임산업개발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수/교육훈련 (5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노동교육원
연구개발지원 (6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건설/시설관리 (10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부산교통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연/기금운용 (15개)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 기획예산처, 2005, '최초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실시' 보도자료 재구성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동법 적용 예외 기관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예외 기관들은 현재의 기타공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당시 공공기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지금보다 협소했다고 볼 수 있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법률 적용 예외 기관

-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③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 갯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1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6개 등 총 160개가 관리됨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2007년 초 기준)」

(단위: 개)

구분	지정	기관명
정부투자기관	14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산하기관	100	증권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기술신용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4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합계	16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재작성

나. 2007년 이후 공공기관

- 법·제도적으로 일원화되고 표준적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 동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 ①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 ④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⑤ 임원 임명 절차,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구성됨
-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재정지원 여부,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근거로 해당 요건에 따라 정의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 ③ **정부가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④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2007년 법 제정 당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라는 공통 적용 사항이 있었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구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됨
 - 또한,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2020년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요건이 충분하지만 책임경영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요건】

구분		2007년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공통 기준		○ 직원정원: 50인 이상	○ 직원정원: 50인 이상 ○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공기업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이 1/2이상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100 이상인 경우
	준시장형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이상이며,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 1. 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2. 2021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공운법」 제4조제2항은 위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요건】

-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③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한 한국교육방송공사

-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되면서 지정된 공공기관은 298개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50개에 이릅니다
- 공공기관은 지정요건의 충족 등이 검토되어 매년 신규, 해제, 통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300개 내외였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50개에 이릅니다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98	305	297	284	286	286	295	304	316	323	332	338	339	340	350	350

자료: 각 연도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들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에 소속된 기타공공기관들이 주를 이룹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신규로 지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경우 광주, 울산, 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재료연구원 등이 신규로 지정됨
 -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에스알,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신규로 지정됨
- 2022년 1월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개 기관이며, 지정해제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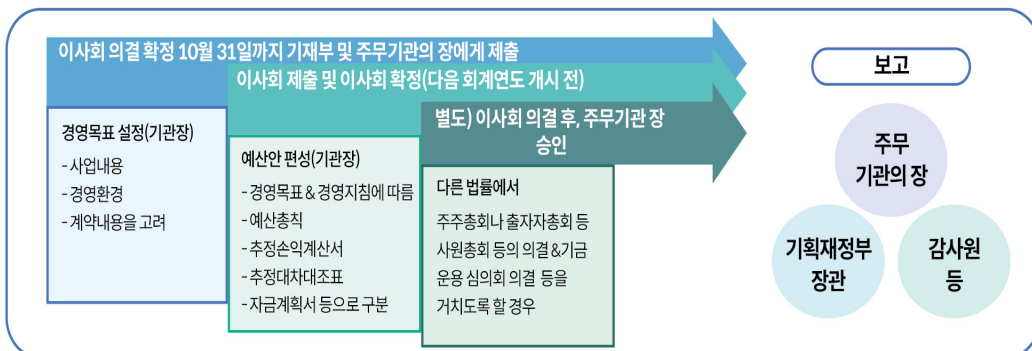
※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수시 지정현황」은 [부록1] 참조

3. 공공기관 통제 및 관리 정책

가.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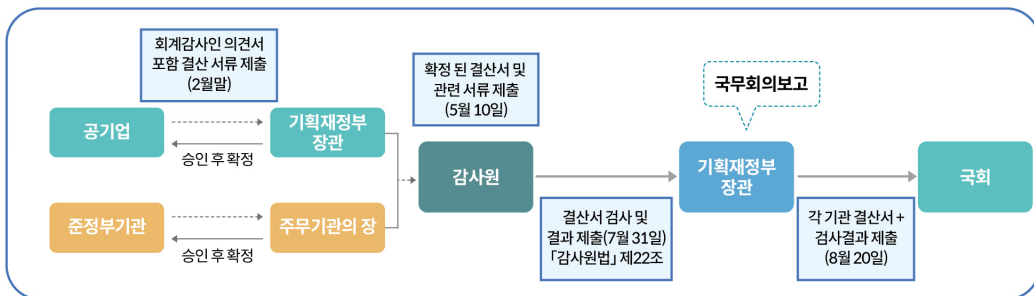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예산은 자체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예산과 차별화되지만, 정부가 시달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편성 및 집행되는 특징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각 연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이들 기관에 시달함
 - 2021년까지는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됨
-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함
 -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확정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2개월 이내에 제출 함

[공공기관 예산 편성 절차]



- 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함
 - 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과정]



- 「국가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공운법」 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회계원칙, 지출, 구분회계, 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사항이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됨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및 대상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행되고 있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공기업 I, 공기업 II),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이며, 준정부기관 중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강소형 유형으로 구분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①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기관장 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③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 함
 - 2017년 12월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별도로 평가되던 기관장 평가가 기관평가에 통합됨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운법」 제48조제7항의6에 근거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해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체계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따라 조정됨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음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 · 인사 · 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을 평가함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 · 활동 · 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p11

■ 2017년 이후,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매년 다양하게 개편 됨

-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함으로써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간 평가체계 및 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조직 및 인적 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를 통합하고, 혁신과 소통 지표를 신설함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는 경영관리 부분에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의 배점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주요사업 부분의 세부지표를 통합함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전년도 대비 2점 상향 조정함(공기업: 22→24점, 준정부기관: 20→22점)
- 2020년도의 경우, 단위 지표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세부평가내용 및 단위지표의 배점이 조정됨
- 2021년도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지표인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하고 배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됨
-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음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확정 및 후속조치

-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평가 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로 각각 산출되며, 평가결과는 기관 유형 별로 6등급(S, A, B, C, D, E)으로 구분되어 제시됨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평가 면제 조치 등에 영향을 미침

- 인사조치 부분으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 상임 이사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할 수 있음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부진기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 개선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다.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1) 공공기관 감사(위원) 제도 및 현황

- 공공기관 자체감사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임·비상임 감사의 선임에 따른 감사제도와 기관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됨
 - 「공운법」 제24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감사를 두며, 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 「공운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을 임원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음
-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해당 기관의 규모에 따라 여러 명의 감사를 둘 수 있음
-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사회 내의 별도 위원회로서 이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사로서의 직책 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직책을 공유함
 - 감사위원회제도는 「공운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함
 - 「공운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제도의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음

(2)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 개요

-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공운법」 제36조에 따라 수행되며,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임
 - 평가 대상은 평가 대상연도에 재직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 감사위원이며, 평가주기는 2018년 이전의 경우 격년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으나, 2018년도부터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 대상연도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임감사·감사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함
- 상임감사·감사위원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수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평가위원장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기초로 평가하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음
- 최종 산정된 평가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
-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는 감사역량과 직무수행성과의 2개 범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 비계량평가지표는 감사역량 범주 내 감사의 전문성,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지표가 포함되며, 직무수행성과 범주의 경우 내부통제기능 강화,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결과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등이 포함됨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단위: 점)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비계량	계량	합계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25	-	25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25	-	25
	소 계	50	-	50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강화	20	-	20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25	25
	기관의 청렴도	-	5	5
	소 계	20	30	50
전체 합계		70	30	1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재구성, p73

(3)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 각 지표별 평가 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되며, 계량과 비계량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6등급(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산출함
-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며, 평가결과 확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
-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는 기관 내 감사 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관평가와 감사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됨

[기관장, 임원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

(단위: %)

구분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S	A	B	C	D, E	S	A	B	C	D, E
공기업	120	96	72	48	0	100	80	60	40	0
	120~0					100~0				
준정부기관	60	48	36	24	0	60	48	36	24	0
	60~0					6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6.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라.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제의 시작은 1963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4) 등의 제정을 통해 점차 내실을 다져옴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체계가 확정되어 갔으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실효성이 강화됨
 - 정부산하기관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강하나, 그 규모가 증가되면서 방만한 조직운영 및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구조조정 및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감
- 다음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발전된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에 대해 세부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각 정부별 관리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며, 크게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및 운영체계의 변화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국민의 정부(1998~2002)]

- 국민의 정부 시기,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리되어옴
 - 동 법에 따라 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는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됨
 - 정부 이사제의 폐지,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제도 및 사장과 경영계약제 도입,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기관장 평가가 함께 수행됨
 - 또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강화, 공공기관 성과급제 도입,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명예퇴직금 제도 개선 등) 축소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한편, 1999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2002년 외부청렴도 조사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수행됨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2002년 이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내부청렴도 및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통계를 종합한 기관별 종합청렴도가 측정되고 있음

■ 국민의 정부는 1998년 7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해 8월에는 공기업 자회사 정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함

-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립되었으며,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함
 -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주) 등 5개 기관이 민영화되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되면서 2002년 기준 8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됨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른 민영화 대상 기관 및 진행 현황]

구분	민영화 완료	민영화 미완료
완전 민영화 대상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국정교과서(주)	-
단계적 민영화 대상	대한송유관공사,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주요 매각 방법	다양화	

자료: 기획예산처, 2002,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방만한 조직 운영 및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산하기관 통·폐합, 인력감축, 민간위탁 등의 슬림화가 추진됨

- 더불어, 각종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 통합,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 사회 환원 비율(50→70%) 확대, 수수료 정비(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수수료 10% 인하)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1999년도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1999년 연구회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처와 연구기관의 소속 관계를 해소하고 연구개발 사업에 경쟁 발주(PBS: Project Base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보상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평가제도 등이 도입됨

[참여정부(2003~2007)]

-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 기조에 따라 운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됨
- 이 시기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 관리제도의 특성은 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 ② 여성·장애인·이공계 인력 채용 및 중소기업·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③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www.alio.go.kr)의 구축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임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는 예산관리기준의 강화 및 직무청렴계약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정부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전면 개정을 통해 편법적인 임금인상 금지, 클린카드 사용 및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 한편,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제정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체계화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근간을 마련함
-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88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기관장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05년 12월에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고 명확하게 공시하고자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⁴⁾이 구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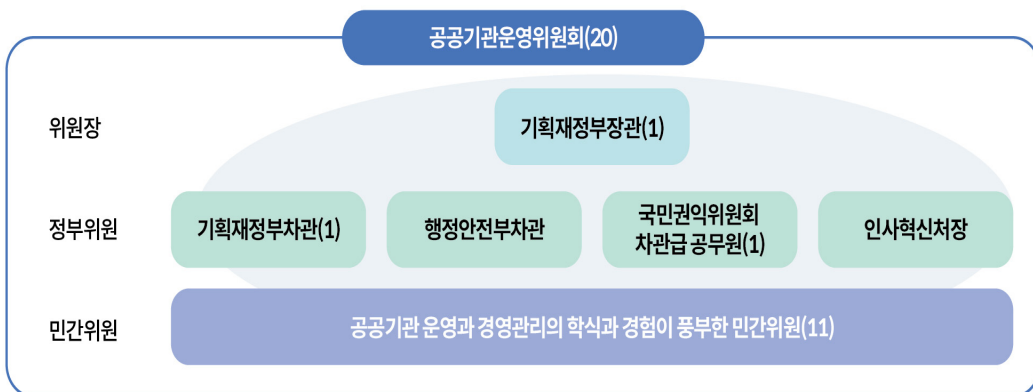
4) 공공기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

- 2007년 6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의 제정을 통해 통합공시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주기, 공시 세부내역 및 공시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화함

■ 2007년 「공운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관련 법률이 일원화됨

- 동법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주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됨
 -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임원 임명의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 제고, 과다·중복된 각종 규제 정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행해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 2007년 이후,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 통합되어 평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됨
- 이 시기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사회,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환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명박 정부(2008~2012)]

-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하여 민영화 및 통폐합 등의 구조 조정을 수반한 관리제도의 개편을 도모함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초기에는 기관 통·폐합(38→17개, 5개) 및 민영화(38개), 기능조정(20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후에는 정원 축소, 예산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등의 자회사 10개, 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 7개, 대한주택보증 등 24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및 지분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지분 일부가 매각됨
 - 기관 통합으로는 유사한 기관이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 7개 분야(① R&D 관리 전담 기관, ② 정보통신 콘텐츠 진흥기관, ③ 환경, ④ 근로·산재, ⑤ 토지·주택, ⑥ 저작권 보호, ⑦ 청소년 지원)의 36개 기관을 16개로 통합하였으며, 기능 이관, 민간 위탁 등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5개 기관이 폐지됨
 -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 발생 및 서비스 효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⁵⁾ 한국방송광고공사⁶⁾에 경쟁이 도입됨
 - 기능조정은 기관의 고유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선진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단위: 개)

구분	계획	실적	주요 내용(예시 등)
민영화	38	29	○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산업은행 등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 지분일부매각
통합	38→17	36→16	○ 환경분야: 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근로·산재: 근로복지공단+한국산재의료원 → 근로복지공단 ○ 토지·주택: 토지공사+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폐지	5	5	○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5) 가스 산업 선진화는 방안 경영 등의 문제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노조의 반대 및 이해당사자의 우려 등에 따라 2012.5.29. 자동 폐기됨

6)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도입에 따라 업무영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을 수행함

구분	계획	실적	주요 내용(예시 등)
경쟁도입	2	2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	20	○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일원화(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공단 등 ○ 4대 보험 징수통합(3):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R&D관리 이관(4):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 비 핵심기능 축소(10):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경영 효율화	137	129	○ 한국감정원 기능 민간이양 및 민간위탁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건설인력 축소 등을 통하여 정원 2만 2천명 감축
출자회사 정리	273	131	○ 131개 출자회사(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매각, 청산, 통·폐합 수행 및 출자회사 관리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공공기관 선진화」, 재정리

- 한편,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실천과제가 수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됨
 -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실천과제의 세부과제로 성과연봉제 확산,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유도, 중소·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확대 등이 마련됨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2011)의 수립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7)이 적용되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수행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통합되었으며, 상임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의 수행을 통해 내부통제인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등을 도모함
- 동 시기에는 국가 R&D분야의 연구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편도 함께 추진됨

7)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 자본시장 통합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재정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03년에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정부는 일반 기업에 이어 공공기관도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된 관리기반 구축과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도입을 결정함.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해외에서 사업 수행 시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재무효과 분석」)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단일 통합 법인의 설립 및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 ② 단일 통합 법인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하에 둬, ③ 새로운 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을 통해 연구 융합의 활성화 및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함

[박근혜 정부(2013~2017)]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부는 2013년 12월 정보 공개 확대, 부채 감축, 복리후생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구분회계제도 등을 도입함⁸⁾
 - 12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에 대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과 더불어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용, 승진 비리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이후,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① 핵심 업무 중심으로의 기능 재편, ② 성과중심의 운영체제 정착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규 중점 과제로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함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고용·복지 및 중소기업,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2015),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이 이루어짐
-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①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② 비핵심 업무 축소, ③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 ④ 지분 매각 및 순차적 상장을 통한 사업 정리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함

8) 구분회계제도란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를 의미함(기획재정부, 2013)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구분	주요 사례
유사·중복기능의 일원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관리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
기관 통·폐합	○ 통합)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 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 ○ 폐지)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
비핵심 업무 축소	○ 감정원은 보상, 담보평가, 이익제기, 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
독과점 민간개방 확대	○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 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 시장의 민간개방 확대

자료: 각 연도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재인 정부(2017~2022)]

- 문재인 정부는 ① 공공성 강화, ②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 국민 신뢰 회복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국민 주주단’을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혁신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주무부처는 각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과제의 추진 실적은 현행 평가지표와 연계되어 활용됨
-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20.1.15.)을 수립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정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2020.7.21.)의 발표를 통해 ① 일자리, ② 안전, ③ 윤리·공정, ④ 사회적 형평성, ⑤ 지역 상생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5대 분야로 선정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목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달성 정도에 따른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점수에 반영됨

-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를 개편함
 - 정부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부분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였으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설치·운영을 통해 컨설팅 등의 현장 지원을 수행함
 - 경영실적 평가의 개편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표 차별화 및 성과협약제 도입,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 2년에 1회 방식의 상임감사 실적평가를 매년 수행하는 등 내부 통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더불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수정을 통해 ① 기관 특성 반영, ② 자율적인 노사 합의, ③ 단계·점진적 도입을 기본으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대하고자 함
- 더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22년 2월 3일에는 「공운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협력과 공존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두 차례의 기획재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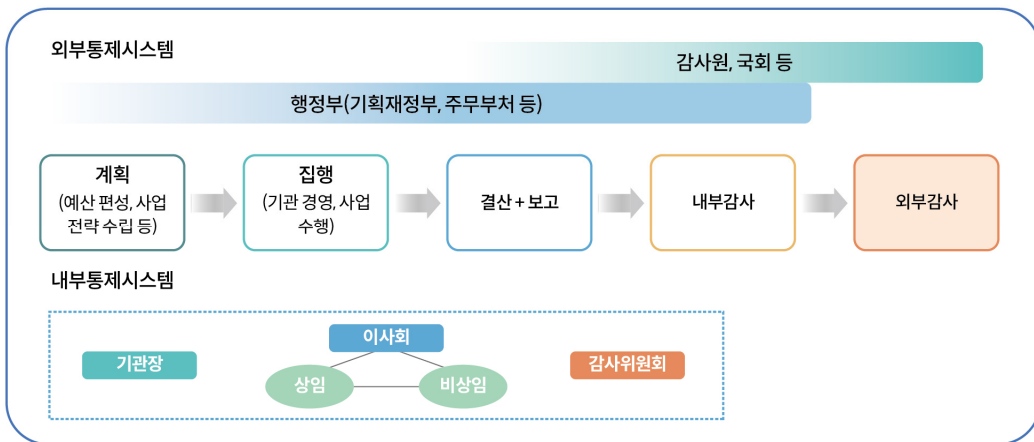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	본회의 처리경과	시행일 (대안)	주요내용(대안)
김경협의원 (2101066)	2020.06.26.	대안반영폐기 (2022.01.11.)	2022.08.0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2102985)	2020.08.14.			
김주영의원 (2105514)	2020.11.19.			

- 그간 공공부문 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2016), 경기도(2019) 등에서 수행 중이었으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외의 경우, 1950년대 노사간 협의를 위한 형태로 독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같은 유럽권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등 다수 국가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수준의 직원 대표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한정짓지 않고, 노동자들을 기업의 중요한 지분을 가진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하도록 권력의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⁹⁾, 자율·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
- 공공기관 내 기관장, 이사회, 감사제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조가 있음
 -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법·제도 그리고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도]



가. 내부지배구조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는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을 기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의 독립성, 임명 과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옴

9) 문성주 외, 2020,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p 119~139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1984)되기 이전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혹은 내부통제 기능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음
 -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기관 내 이사회 기능 및 의결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199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이사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됨
 -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 및 기관장 선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운용되어 옴
 -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인 기관장·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의 제·개정을 통해 체계화됨
 - 2022년 2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됨
-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상임, 비상임)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범위를 제시함
- 공기업 및 기관 규모가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 내용의 특수성이 있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임이사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2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외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을 포함한 정수의 2/3 미만으로 구성
 - 이사회의 정수를 법으로 정하고 제시한 것은 이사회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것으로 기관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임
 - 2018년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관 임원 내 여성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행되어 오고 있음
 -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함
- 「공운법」은 기관의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

유형	구분	임면 절차
공기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기관 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공기업의 기관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근로자 1명 포함, 2022. 8. 4. 시행)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준정부 기관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기관 장 임명
	상임이사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근로자 1명 포함, 2022. 8. 4. 시행)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 한편, 임원추천의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개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됨
 -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 추천 및 기관장 후보와 계약 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의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거쳐야 함
- 임면 절차를 통해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월, 결산, 잉여금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보수 등의 기관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함
 - 내부지배구조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경영실적평가,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내부감사를 수행함
 - 감사(상임 혹은 비상임)는 이사회 내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는 단일 신분으로 이사회 소집 시 의견 진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음
 -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하위 조직으로 의결 권한을 보유하게 됨¹⁰⁾
 - 한편, 「공운법」 제43조의3 및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¹¹⁾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외부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공운법」에서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더불어, 상장공기업이나 그에 준하는 준정부기관은 「상법」,¹²⁾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¹³⁾에 근거하여 임원의 의무, 책임의 범위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준용해야 함

나. 외부지배구조

-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는 행정부, 감사원, 국회, 국민, 언론 등과 같이 공공기관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 행정부는 지침이나 규정의 마련, 성과평가제도 등을 통해 통제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의 감사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관

10)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를 준용해야 함

11)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 제10조제5항 및 제 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자격, 선임,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를 준용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12)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따라야 함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은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해 이를 준용해야 함

의 업무 혹은 사업 수행 결과의 사후조치 등에 영향을 미침

- 국회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국민 혹은 언론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함

■ 행정부의 관리 및 통제 주체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와 개별 공공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주무부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 역할이 다소 차별화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공공기관에 대하여
① 공공기관 지정 및 신설 심사, ② 기능조정, ③ 경영지침 제정, ④ 경영실적 평가, 직무수행실적 평가, ⑤ 임원 해임 혹은 해임 건의, ⑥ 인사 감사권 등의 통제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
- 주무부처의 경우, 소속된 공공기관이 정부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감사원은 특별, 회계, 복무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의 중복을 지양하고자 주무부처에 의한 평가 및 감사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성과감사 혹은 특정감사, 컨설팅감사 등을 수시로 수행함

- 감사원은 내부감사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경우, 감사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 매년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현황을 평가 및 공개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기능조정, 예산 편성, 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은 지적에 따른 기관 조치 행위를 보고해야 함

■ 국민이나 언론에 의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간접적인 통제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전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됨
-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재무, 임원 임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에 있어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자료: 공공기관 경영공시 공개시스템 www.alio.go.kr

OECD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 국가가 공기업을 소유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사회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국가는 현명하고 능동적인 소유주로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함(OECD, 2015)¹⁴⁾
- OECD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① 이사회 임명, ②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③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 지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의 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구분(모델화)함
 - 하지만, 각국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모델은 한가지로 정의될 수 없으며 역사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혼재되어 있기도 함
- OECD(2018)는 중앙화 모델, 듀얼 모델, 이중 트랙 모델, 조정기관 모델, 탈중앙화 모델로 소유권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모델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국가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모델 중 우리나라는 단일기관, 지주회사 또는 부처 하의 중앙화 모델로 중국, 핀란드 등과 같다고 논의됨

5.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가. 법령 현황

- 공공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을 두고 있음
- 「공운법」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공운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객현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범위,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감사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음

14) OECD, 201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 2015 EDITION」

[공공기관 관리 · 운영 및 감사에 관한 법령]

법령		주요 내용
관리 ·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정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경영공시, 정관의 내용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수입액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세부사항, 고객헌장,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자격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범위,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

- 국회는 2020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17128호, 2021. 1. 1. 시행)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2월에도 법률을 개정(법률 18795호, 2022. 8. 4. 시행)하여 공기업 임원 임면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2022년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 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 외 상세한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조항	주요 개정 내용
2022	제25조 제3항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함
	제26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함
2020	제5조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제10조 제6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제29조 제8항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30조 제2항 단서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제34조 제2항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제40조의3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침

- 공공기관에 관한 지침은 2018년 3월 이전에는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32개의 지침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총 15개로 지침을 통폐합하였음

[2018년 공공기관 지침 통합 주요 내용]

구분	지침 통폐합 내용
통합 (20개 → 4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9개 지침 → 경영지침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명예퇴직 개선방안, 국외여행 개선방안 등 7개 지침 → 혁신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2개 지침 → 감사지침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개 지침 → 보수지침
존속(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계약사무규칙 등 11개
폐지(1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영 지침

자료: 기획재정부,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지침 전면 개편', 2018. 3. 8.

- 이 중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총 3개 지침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출자기관 등의 운영, 기능·업무의 외부위탁, 증원의 절차,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최근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주로 복무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에는 인사 및 성폭력 방지 부분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 복무관리 부분에서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퇴직금 외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제22조제3항 신설). 또한,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제26조제7항 신설)

- 인사 부분의 경우 2020년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기존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한시적 인력 채용 시에는 채용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성폭력 방지 부분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최근 주요 신설·삭제 조항 내용

개정	조항	주요 내용
2021	제22조제3항 (신설)	○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퇴직금 외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26조제7항 (신설)	○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2020	제6조제1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내용
	제6조의2 (삭제)	○ 기존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를 폐지함
	제6조의3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제16조제12항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한시적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절차의 간소화 가능 규정
	제32조의2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처리사례 등 기관의 부당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 4.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의 원칙, 보수 기준, 조직 및 경영진단,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기준과 절차 등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감사의

방법과 종류, 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 및 보직관리, 감사 업무의 절차 및 결과의 보고,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침]

구분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출자기관 등의 운영, 기능·업무의 외부위탁, 증원의 절차,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예산 운용의 원칙, 보수 기준, 조직 및 경영진단,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감사의 방법과 종류, 감사 독립의 원칙,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 및 보직관리, 감사 업무의 절차 및 결과의 보고,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다. 공공기관 예·결산 관련 지침

-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에 관한 지침은 2021년까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작성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22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종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한 집행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
- 현재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포함하고 있음

[공공기관 예·결산 관련된 지침]

2022년 변경 전		2022년 변경 후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등의 주요 항목에 대한 집행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공공기관 총인건비, 수당,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사무 등에 관한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처리원칙, 지급금의 지출, 일상경비의 지급, 채권의 대손처리, 대손충당금의 적립, 구분회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내부통제, 회계관계업무의 위임, 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장부의 종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범위, 계약의 원칙, 계약의 방법,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수의계약 등에 대한 계약사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계약의 원칙, 계약의 방법,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의 계약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사무와 관련된 지침]

구분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공기관 회계원칙, 지급금의 지출, 일상경비의 지급, 채권의 대손처리, 대손충당금의 적립, 구분회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내부통제, 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장부의 종류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계약의 원칙, 계약의 방법,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수의계약 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계약의 원칙, 계약의 방법,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 「공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6항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면제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구분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등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의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제40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2020년 8월 26일(2020년 9월부터 시행)에 제정함
-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절차와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일정 수준인 경우 외부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였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한정 - 총사업비 1,000억원 &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 출자로 한정함 - 반면, 재정사업(정부예산) 총사업비관리 대상은 재정 예비타당성사업과 함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을 포함 - 총사업비 500억원 &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해당
타당성 재검토 절차 도입	-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신규 도입하여 공공기관 사업비 관리의 자율과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 -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시 공공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 분석방법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외부기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의무화함

사.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

-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민영화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관장 기본연봉의 조정,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대형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통합공시 매뉴얼, 자료 공시의 시점, 공시의 예외, 공시 책임자의 지정, 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민영화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은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 등을 매각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매각주체, 매각추진의 기본원칙, 매각자문단의 설치, 매각절차, 매각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 분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 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건비·경상운영비·연구사업비 출연금 편성·집행,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매년 작성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2019년 3월 신설된 「공운법」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지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인력확충,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1월 18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은 동법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안전관리등급의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단의 구성, 결과 활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1년 2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은 동법 제15조 및 위 2개의 지침에 근거하여 심사 대상 공공기관, 등급의 결정체계, 심사의 기준과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관련된 평가기준, 평가지표(가중치 포함), 세부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이며, 「경영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본원칙 등을 명시한 지침임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은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감사인의 선정, 독립성의 준수, 회계감사의 절차, 감사원의 결산감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

구분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 기관장 기본연봉의 조정,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대형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통합공시 매뉴얼, 자료 공시의 시점, 공시의 예외, 공시 책임자의 지정, 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등
「민영화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 매각주체, 매각추진의 기본원칙, 매각자문단의 설치, 매각절차, 매각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 기타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경상운영비·연구사업비 출연금 편성·집행,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편성 및 집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인력확충, 안전조치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단의 구성, 결과 활용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경영평가보고서 작성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련된 평가기준, 평가지표(가중치 포함), 세부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감사인의 선정, 독립성의 준수, 회계감사의 절차, 감사원의 결산감사 등에 대하여 규정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공공기관 현황



I

공공기관 주요 현황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라 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2022년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운법」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 실적 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의 적용을 받게 됨
 - 해당 기관의 규모(자산, 수입, 인력 등)와 정부 지원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 등이 매년 이루어짐
- 「공운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이 해당됨
 -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됨
 -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21개 기관이 있음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운법」 제 4장(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의 규정 등 공공기관의 일부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음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6개)	시장형 (15개)	○ 직원 정원 50명 이상 ○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85% 이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 입의 85% 이상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21개)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준정부 기관 (94개)	기금 관리형 (13개)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 관리 또는 기금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85% 미만)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 집행형 (81개)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20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연구개발 목적기관 (75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총 350개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2년 1월 지정 기준이며, 2021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3월 「공운법」(법률 제17128호,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일부 변경됨

- 이전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개정된 법률(법률 제17128호)에서는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법률에 있던 정원과 자체수입액 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위임됨
- 또한 예외 조항인 「공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공공기관 분류 기준 변경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이전 법률	개정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u>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u>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u>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u>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u>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u> 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u>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u>

- 2021년 12월 「공운법」(대통령령 제322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
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일부 변경됨
- 이전 시행령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자체수입액 비율(총수
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렇지 아니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비율 85% 이상인 경
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변경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이전 시행령	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32호, 2021.12.21. 일부개정)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생략)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 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 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분류 현황

- 「공운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공운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3가지로 분류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여 법령상 3가지로 나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연구개발목적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개(경제·인문 분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과학기술 분야),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8개의 총 75개로 분류하고 있음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 현황]

(단위: 개)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2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28
합 계		75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공공기관 현황

- 2022년 3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50개로, 2021년 말 349개 대비 1개 증가하였음
 - 공기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준정부기관이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3개 신규지정, 1개 해제되어 2개가 순증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2021년 말 대비 1개 증가
- 2022년 3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음
 - 공기업(36개): 시장형 15개, 준시장형 21개
 - 준정부기관(94개):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1개
 - 기타공공기관: 220개

[2022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1	2022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0	0	0	0
■ 시장형	15	15	0	0	0	0
■ 준시장형	21	21	0	0	0	0
② 준정부기관	95	94	△1	0	△1	0
■ 기금관리형	13	13	0	0	0	0
■ 위탁집행형	82	81	△1	0	△1	0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0
합 계	349	350	+1	+3	△2	0

주: 2021년 현황은 해산된 기관 현황을 포함한 2021년 말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

다. 공공기관 변동 현황

- 2021년 대비 2022년(3월 기준) 공공기관 지정 숫자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3개 공공기관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었음
 - 신규 지정(3개):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정 해제(2개):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경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 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힘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까지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2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음
- 정부는 「전자증권법」이 시행(2019년 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된 이후 법률상 독점수입 등 예탁결제원에 대한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였다는 입장임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3)	보건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제 (△2)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원	지정 해제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

- 연도별 공공기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07년 24개에서 2022년 36개로 50%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은 78개에서 94개로 16개 증가, 기타공공기관은 196개에서 220개로 24개 증가하였음
- 공기업 유형에서는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2017년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 변경되었음
- 준정부기관 유형에서는 2010년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2019년 창업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되었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에서는 2015년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식재단 등 20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고,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 (주)에스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을 신규 지정하였음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공기업	24	24	24	22	27	28	30	30	30	30	35	35	36	36	36	36	12
준정부기관	78	77	80	79	83	82	87	87	86	90	89	93	93	95	96	94	16
기타공공기관	196	204	193	185	176	176	178	187	200	203	208	210	210	209	218	220	24
합계	298	305	297	286	286	286	295	304	316	323	332	338	339	340	350	350	52

주: 1. 지정 현황은 매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의 수시지정 또는 법인 해산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경우는 표에 제시되지 않음. 따라서 연도말 기준인 경우 세부 현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증감은 2007년 대비 2022년의 증가분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라.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022년 3월 기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47개 기관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기관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에너지·산업 분야 등 41개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31개 기관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순서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분야의 시장형 공기업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지정됨
 - 2021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전기검침·고지서송달·현장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엠씨에스(주)가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됨
 - 2022년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됨
-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부동산 관련 공기업 등이 지정됨
 - 요금수납·과적단속·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2021년 신규 지정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 등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지정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지정됨
-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항만 관리를 수행하는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지정됨

-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경찰청	1	방위사업청	2
고용노동부	12	법무부	3
공정거래위원회	2	보건복지부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산림청	4
관세청	1	산업통상자원부	41
교육부	22	소방청	1
국가보훈처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국무조정실	25	여성가족부	5
국방부	3	외교부	3
국토교통부	28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금융위원회	7	인사혁신처	1
기상청	3	중소벤처기업부	11
기획재정부	4	통일부	2
농림축산식품부	12	특허청	5
농촌진흥청	1	해양수산부	17
문화재청	1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31	환경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	합계	35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은 [부록2] 참조

금융감독원 신규 지정 유보

- 금융감독원은 금융 감독의 중립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여러 금융감독 부실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0~2021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음
- (2020년)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신규 지정을 유보하였음
 - 공공기관 지정의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충족되고 감사원으로부터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적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획재정부는 2020년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②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③ 엄격한 경영평가, ④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의 4가지 유보 조건을 요구함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위직급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5년 내 35%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함
- (2021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엄격한 의무이행을 요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2020년)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0년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
 - 강화된 조건은 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②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 또한 ③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하여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④ 상위직급을 추가 감축하며, ⑤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21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신규 공공기관 지정 유보 내용]

기관	연도	유보 조건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변경
금융 감독원	2020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②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③ 엄격한 경영평가 ④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⑤ 상위직급 감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향후 5년 내 35%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 - 금융감독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함	유보조건 준수 시 공공기관 미지정
	2021	① 계량지표의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 ②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 ③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④ 상위직급 추가 감축 ⑤ 해외사무소 정비 - 2020년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가. 공공기관 수입 · 지출 분류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의 경영공시 항목¹⁾ 중 수입 및 지출 현황(21번)에서 수입 · 지출 및 정부순지원수입을 공시
- 참고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영공시 항목은 2020년 말에 비하여 “17.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18.사회공헌활동” 등이 추가되었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른 기관별 경영공시 항목]

I. 일반현황	II. 기관운영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IV. 대내외 평가
1. 일반현황	2. 임직원 수 3. 임원 현황 4. 신규채용현황 5. 임 · 직원 채용정보 6. 임원연봉 7. 직원 평균보수 8. 기관장 업무추진비 9. 복리후생비 10.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11. 임원 국외출장 내역 12. 노동조합 관련현황 13. 정관 및 내부규정 14. 징계현황 15. 소송 및 법률자문현황 16.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17.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18. 사회공헌활동	19. 요약 재무상태표 20. 요약 손익계산서 21. 수입 · 지출현황 22. 주요사업 23. 투자집행내역 24. 자본금 및 주주현황 25. 장단기 차입금현황 26. 투자 및 출자 현황 27. 경영부담비용추계 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9.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30. 납세정보현황 31. 감사보고서	32. 국회지적사항 3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34. 경영실적 평가결과 35. 경영평가 지적사항 3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8. 이사회회의록 V. 공지사항 39. 경영혁신사례 40. 계약정보 41. 연구보고서 41. 안전관리 현황 42. 기타정보공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2022.3. 기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 16. (생략)

■ 수입은 정부지원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²⁾, 차입금 등으로 구성

- 정부지원수입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짐
- 직접지원은 출연금³⁾, 보조금⁴⁾, 부담금⁵⁾, 이전수입⁶⁾과 부대수입으로 구분
- 간접지원은 사업수입, 위탁수입⁷⁾, 독점수입⁸⁾과 부대수입⁹⁾으로 구분

■ 지출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등으로 구성

-
- 2) 출자금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하는 금액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임
- 3) 출연금은 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액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임.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교부 대상의 제한은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보조금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5)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는 담배 관련 부담금 등이 있음
- 6) 이전수입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전입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보전금, 한국문화예술회원의 복권기금전입금 등이 있음
- 7) 위탁수입은 법령에 해당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으로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운송사업 수입,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하천 또는 댐 유지관리사업 수입, 한국송강기안전공단의 정보관리업무 수입액 등이 있음
- 8) 독점수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으로서,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 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액이 대표적인
- 9) 부대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직접 지원 받은 금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뜻함

[공공기관 수입 · 지출의 유형별 구분]

구분				내용
수입	정부 지원 수입	직접 지원	출연금	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액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수입
			이전수입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
			부대수입	정부의 (직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간접 지원	사업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한 수입
			위탁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
			독점수입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
			부대수입	정부의 (간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출자금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출자받은 수입
차입금			기관운영 또는 투자를 위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기타			정부지원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외의 수입	
지출	인건비			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경상운영비			기관 운영 또는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사업비			기관 사업 수행에 소요된 비용
	차입상환금			외부 조달 자금에 대한 상환 비용
	기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외의 지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1) 공공기관 수입·지출 총괄

■ 370개(2021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350개 및 부설기관 20개 포함)¹⁰⁾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1년 예산 기준 751조 2,591억원으로 2020년 결산 대비 2,198억원이 증가됨

- 유형별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4.5%), 기타공공기관(22.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2%), 시장형 공기업(20.1%), 준시장형 공기업(12.5%) 순으로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의 지출 총계가 전년에 비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14조 4,589억원), 기타공공기관(△5조 5,946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조 6,803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조 4,876억원), 시장형 공기업(△2조 4,764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음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총괄(2016~2021)]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1,534,117	1,597,229	1,651,850	1,588,775	1,532,366	1,507,602 (20.1)	△24,764
	준시장형	765,641	783,087	764,393	771,777	793,068	937,657 (12.5)	144,589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432,724	1,541,387	1,468,829	1,562,830	1,877,011	1,840,208 (24.5)	△36,803
	위탁집행형	1,158,766	1,213,718	1,260,857	1,372,979	1,544,940	1,520,063 (20.2)	△24,876
기타공공기관		1,504,513	1,376,199	1,279,102	1,412,081	1,763,006	1,707,059 (22.7)	△55,946
합 계		6,395,765	6,511,622	6,425,033	6,708,445	7,510,393	7,512,591 (100.0)	2,198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3. 기타공공기관인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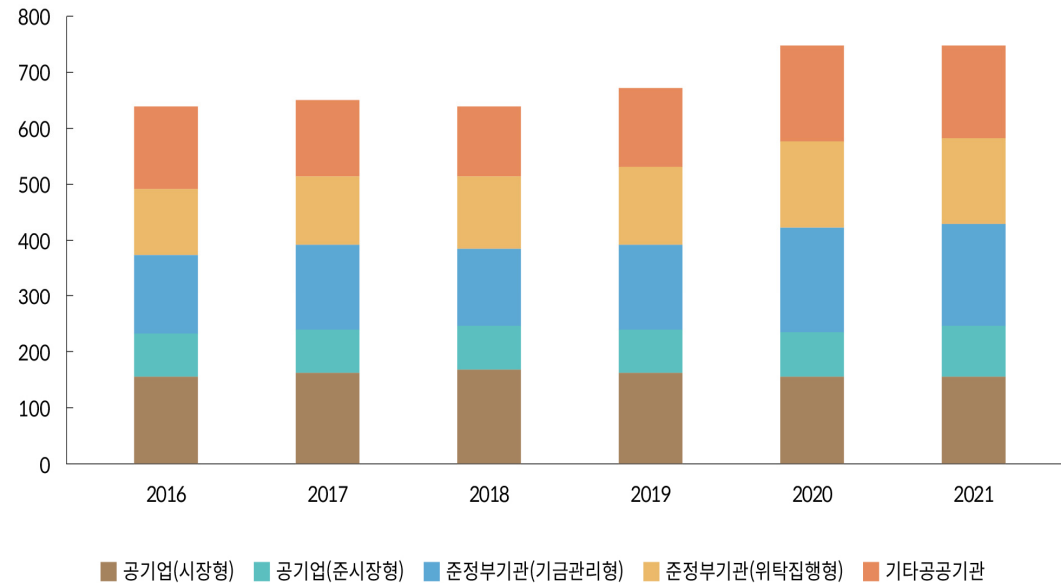
4.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21.9.10. 해산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정확하게는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349개이나, 자료는 4분기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기준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각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함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연도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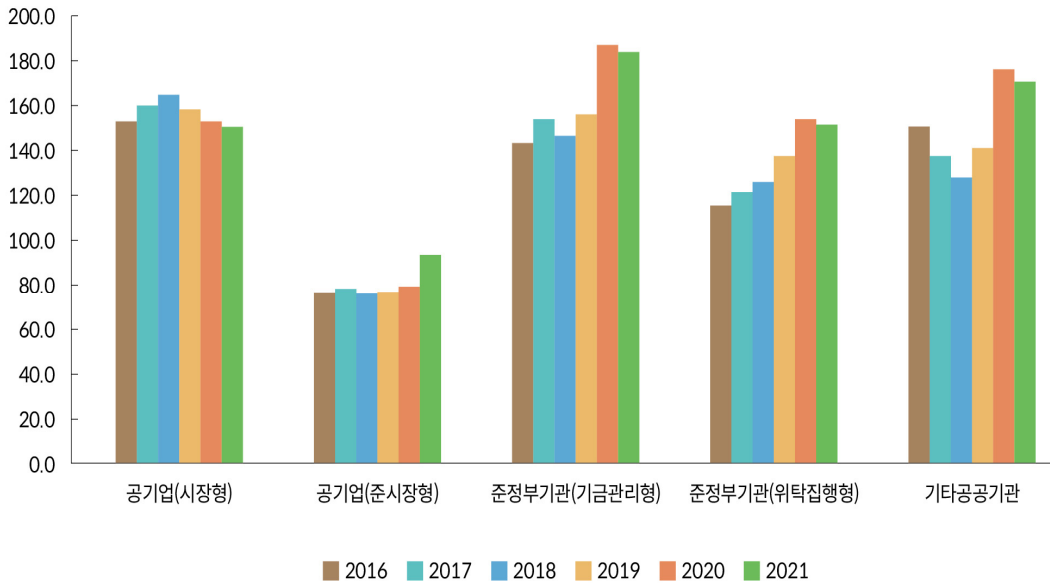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2019년 48조 2,137억원 → 2020년 65조 7,174억원), 국민연금공단(2019년 23조 5,253억원 → 2020년 26조 4,614억원) 등 수입·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69조 637억원 → 2020년 88조 7,572억원), 한국산업은행(2019년 25조 6,557억원 → 2020년 35조 3,867억원), 중소기업은행(2019년 16조 2,461억원 → 2020년 19조 1,593억원) 등 은행형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기관 유형별)]

(단위: 조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유형별 현황

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6개 공공기관¹¹⁾의 총지출은 150조 7,602억원이며, 지출규모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순으로 큼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사업수입과 사업비 지출이 기관 수입·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 중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사업수입 60조 8,359억원과 차입금 5조 9,646억원이 주된 수입이며, 지출에서는 전력구입비 등 사업비가 가장 큰 항목으로 51조 6,925억원임
-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판매, 생산 및 공급시설 건설 등 사업비 지출이 19조 6,687억원, 가스판매 등 사업수입은 19조 1,039억원임

11) 이하의 수입·지출 현황은 2021년 4분기까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나, 2021년 말 해산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유형별 수는 2021년 1월 연초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주요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 ·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34,117	1,597,229	1,651,850	1,588,775	1,532,366	1,507,602
한국전력공사	685,640	680,172	701,086	692,737	652,380	668,006
한국가스공사	263,201	279,782	296,399	291,578	245,443	227,688
한국수력원자력(주)	113,558	113,328	113,534	107,504	125,448	127,449
한국석유공사	82,562	74,072	72,000	58,255	84,242	69,250
한국남부발전(주)	45,374	53,876	63,663	60,867	52,235	61,429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준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20개 공공기관의 총 지출 규모는 93조 7,657억원이며, 지출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순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입의 대부분은 사업수입과 차입금으로, 지출의 대부분은 사업비 지출과 차입금 상환으로 구성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수입 중 사업수입이 22조 2,525억원, 차입금이 16조 4,203억원이고, 지출 중 사업비가 32조 1,294억원, 차입금상환이 4조 8,176억원임
 - 2021년 지출규모는 2020년 대비 8조 841억원 증가한 52조 8,749억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지출총계의 56.4%를 차지
- 한국도로공사의 지출규모는 2020년 대비 7,742억원 증가한 13조 6,077억원으로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지출총계의 14.5%를 차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조 3,022억원 증가한 6조 2,330억원으로, 지출내역은 사업비 3조 5,308억원, 차입상환금 1조 5,414억원, 인건비 7,076억원 등임
- 한국마사회는 수입 중 간접지원으로서 독점수입이 2조 9,995억원, 부대수입이 738억원이며, 지출 중에서는 사업비가 3조 195억원으로 가장 큼

[주요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 ·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765,641	783,087	764,393	771,777	793,068	937,657
한국토지주택공사	378,776	377,155	372,794	371,204	447,907	528,749
한국도로공사	102,273	109,639	102,817	113,396	128,334	136,077
한국철도공사	85,177	95,534	87,539	91,481	78,573	92,352
한국수자원공사	48,339	48,749	49,750	44,591	49,307	62,330
한국마사회	78,544	79,029	76,402	74,752	11,433	30,733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지출 총 규모는 184조 208억 원이며, 지출규모 상위 5개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유계정 외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보유하고 있음. 고유계정의 지출 규모는 50조 5,008억 원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계정은 4조 638억 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은 4,318억 원임
 - 고유계정은 사업수입이 43조 1,390억 원, 사업비 지출이 45조 699억 원으로, 대부분의 수입과 지출은 유동화증권 발행 등 사업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계정에서는 수입 중 기타수입(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이 2조 9,165억 원, 지출 중 기타지출(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이 3조 6,70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은 이전수입(29조 9,126억 원)과 보조금(873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의 대부분은 연금급여사업, 가입자관리사업 등 사업비(29조 1,725억 원)가 차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지출은 2020년 대비 3조 9,605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 예산 기준 지출 규모는 13조 134억 원이며, 연금급여 지급 등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5조 3,349억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이 7조 5,601억 원임

[주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432,724	1,541,387	1,468,829	1,562,830	1,877,011	1,840,208
한국주택금융공사	427,483	406,521	393,242	482,137	657,174	549,965
국민연금공단	177,316	197,675	214,390	235,253	264,614	300,000
예금보험공사	253,310	297,876	236,366	224,269	250,037	242,961
공무원연금공단	192,152	206,308	218,080	209,657	227,480	240,6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104,765	112,739	90,137	93,280	90,529	130,134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8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4개 부설기관의 지출 총계는 152조 63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순으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이라는 기관 특성상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순지원수입과 사업수입이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지출규모가 큰 기관으로, 2021년 예산 기준 지출규모는 90조 2,356억원임. 공단의 사업수입(보험료수입)은 73조 8,834억원이며, 보험급여 지급 등 사업비 지출은 88조 2,93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수입·지출의 대부분을 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부설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으며, 동 기관의 2021년 지출규모는 3,927억원으로 수입 중에서는 기타사업수입이 3,718억원, 지출 중에서는 인건비가 1,913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철도공단 수입은 출연금(5조 8,086억원)과 차입금(2조 1,240억원), 위탁수입(1조 8,73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사업비(7조 1,090억원), 차입금상환(2조 7,667억원) 등임

- 한국연구재단은 지출규모 7조 6,357억원 중 7조 5,809억원을 사업비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수탁사업수입(7조 5,586억원)으로 충당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출로는 농지관리, 생산기반정비, 용수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3조 8,230억원이 가장 큰 항목이며, 수입에서는 이전수입(2조 2,611억원)과 위탁수입(1조 7,624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주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 ·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158,766	1,213,718	1,260,857	1,372,979	1,544,940	1,520,063
국민건강보험공단	681,122	714,709	767,528	864,999	946,569	902,356
국가철도공단	116,383	124,967	108,611	96,202	92,127	101,395
한국장학재단	80,835	81,091	83,103	80,038	85,793	86,117
한국연구재단	45,773	49,651	51,363	58,832	71,614	76,357
한국농어촌공사	39,942	38,420	37,687	38,500	41,601	54,233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공공기관

- 218개 기타공공기관 및 16개 부설기관의 지출 총 규모는 143조 3,751억원으로 지출규모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순이며, 3개의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지출 규모는 작은 편임
-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체 공공기관 중 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크며, 대출금회수 등 사업을 통한 수입이 61조 5,737억원, 차입금이 24조 8,100억원임. 지출은 대출금 집행 등 사업비가 56조 2,041억원, 차입금상환이 30조 9,547억원임
 -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차입금 등과 관련한 수입 · 지출 내역을 총 수입 · 지출에 공시하는 반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총자산 규모에 비하여 두 기관의 수입 · 지출 총액이 적게 집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출 규모는 1조 5,781억원으로 컨테이너선 자금지원 등 정책 사업, 국내 해운사에 대한 보증사업 등 사업비 지출은 8,607억원이며, 수입에서는 사업수입(4,054억원), 차입금(2,9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등 사업수입이 1조 3,318억원으로 수입의 94.5%를 차지하고 경상운영비(6,463억원)와 인건비(5,870억원)가 주된 지출 항목임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04,513	1,376,199	1,279,102	1,412,081	1,763,006	1,707,059
한국수출입은행	837,818	681,406	648,018	690,637	887,572	897,779
한국산업은행	266,971	271,369	216,087	256,557	353,867	277,781
중소기업은행	156,768	166,522	146,783	162,461	191,593	181,037
한국해양진흥공사	0	0	5,840	19,699	14,136	15,781
서울대학교병원	11,717	12,195	12,284	14,068	14,445	14,477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1) 정부순지원수입 총계

- 정부순지원수입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 출연금, 출자금¹²⁾,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음
-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법령상 강제 규정에 따른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로부터의 수입은 제외됨

12) 출자금의 경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현금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등은 제외하여 집계하고 있음

[정부순지원수입의 유형별 구분]

구분	내용
출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수입액
출자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수입액
보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수입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수입액
이전수입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위탁수입	정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
기타수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의 이자, 부대수입 등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초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및 20개 부설기관 전체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021년 예산 기준 100.3조원으로, 2020년 결산 기준 98.8조원에 비하여 1조 4,869억원, 1.5%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2.2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8.7%), 기타공공기관(11.45%), 준시장형 공기업(7.44%), 시장형 공기업(0.14%) 순서임
- 정부 예산의 약 80%가 준정부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공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8% 아래로 낮은 편임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기업	시장형	2,540 (0.37)	1,548 (0.22)	1,309 (0.19)	951 (0.12)	2,060 (0.21)	1,413 (0.14)
	준 시장형	40,295 (5.9)	39,648 (5.65)	37,839 (5.39)	53,477 (6.94)	58,956 (5.97)	74,590 (7.44)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249,625 (36.57)	276,999 (39.45)	284,642 (40.55)	299,297 (38.86)	378,879 (38.35)	388,041 (38.70)
	위탁 집행형	305,991 (44.82)	310,059 (44.16)	299,869 (42.72)	325,192 (42.23)	415,965 (42.11)	423,910 (42.27)
기타공공기관		84,204 (12.33)	73,810 (10.51)	78,226 (11.15)	91,221 (11.84)	132,045 (13.37)	114,819 (11.45)
합 계		682,657 (100.0)	702,067 (100.0)	701,887 (100.0)	770,141 (100.0)	987,906 (100.0)	1,002,7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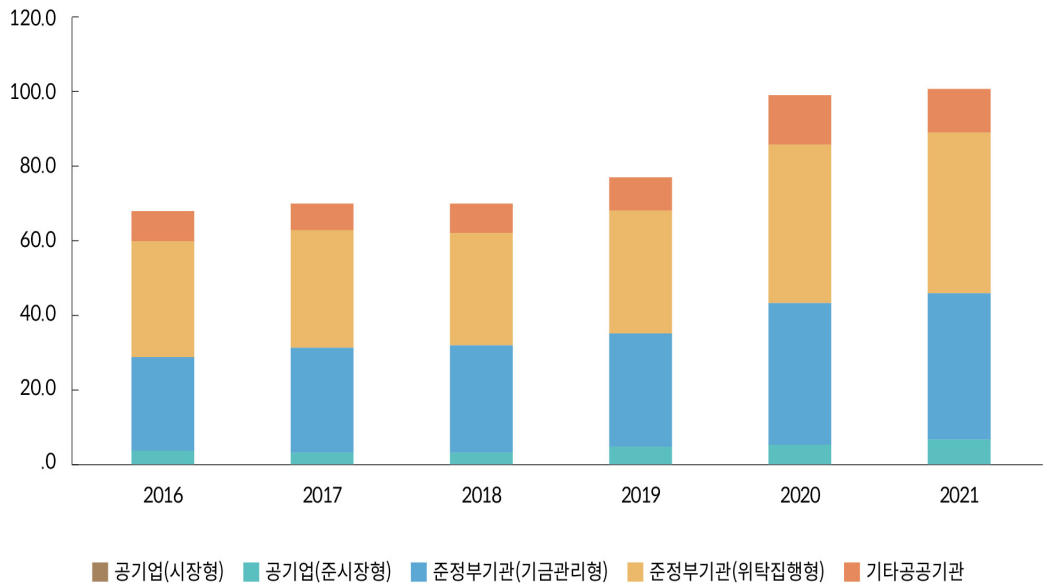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괄호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비중

- 2021년 350개 공공기관 및 20개 부설기관 전체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전년 대비 0.1%p 증가
 - 이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13.3%를 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정부 자원 의존도가 0.1%p 높아졌음을 의미
 - 2021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7.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1.1%), 준시장형 공기업(8.0%), 기타공공기관(6.7%), 시장형 공기업(0.1%) 순서임
 -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사업수입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에의 자원 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의 총수입이 증가하였고, 정부순지원수입도 증가하면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0.6%p 증가하였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총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정부순지원수입은 증가하여 비중이 0.9%p 증가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p 정부순지원수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총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순지원수입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순지원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p 감소함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 기 업	시 장 형	정부순지원수입(A)	2,540	1,548	1,309	951	2,060	1,413
		총수입(B)	1,534,117	1,597,229	1,651,850	1,588,775	1,532,366	1,507,602
		비중(A/B)	0.2	0.1	0.1	0.1	0.1	0.1
	준 시 장 형	정부순지원수입(A)	40,295	39,648	37,839	53,477	58,956	74,590
		총수입(B)	765,641	783,087	764,393	771,777	793,068	937,657
		비중(A/B)	5.3	5.1	5.0	6.9	7.4	8.0
준 정 부	기 금 관 리 형	정부순지원수입(A)	249,625	276,999	284,642	299,297	378,879	388,041
		총수입(B)	1,432,724	1,541,387	1,468,829	1,562,830	1,877,011	1,840,208
		비중(A/B)	17.4	18.0	19.4	19.2	20.2	21.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 관	위탁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05,991	310,059	299,869	325,192	415,965	423,910
		총수입(B)	1,158,766	1,213,718	1,260,857	1,372,979	1,544,940	1,520,063
		비중(A/B)	26.4	25.5	23.8	23.7	26.9	27.9
기타 공공 기관		정부순지원수입(A)	84,204	73,810	78,226	91,221	132,045	114,819
		총수입(B)	1,504,513	1,376,199	1,279,102	1,412,081	1,763,006	1,707,059
		비중(A/B)	5.6	5.4	6.1	6.5	7.5	6.7
합 계		정부순지원수입(A)	682,657	702,067	701,887	770,141	987,906	1,002,775
		총수입(B)	6,395,765	6,511,622	6,425,033	6,708,445	7,510,393	7,512,591
		비중(A/B)	10.7	10.8	10.9	11.5	13.2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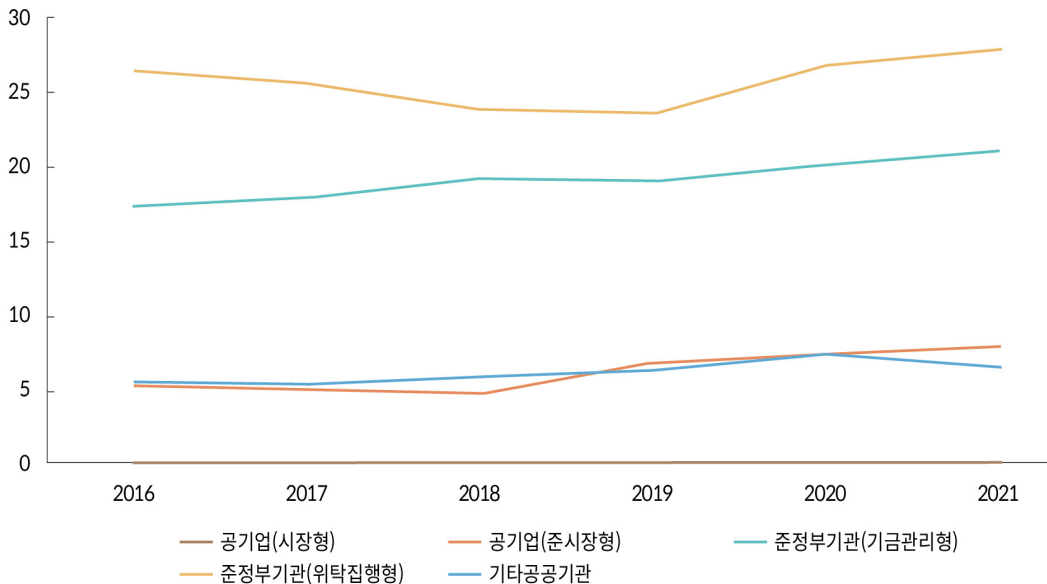
주: 1.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2. 괄호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공기관 인력¹³⁾현황

가.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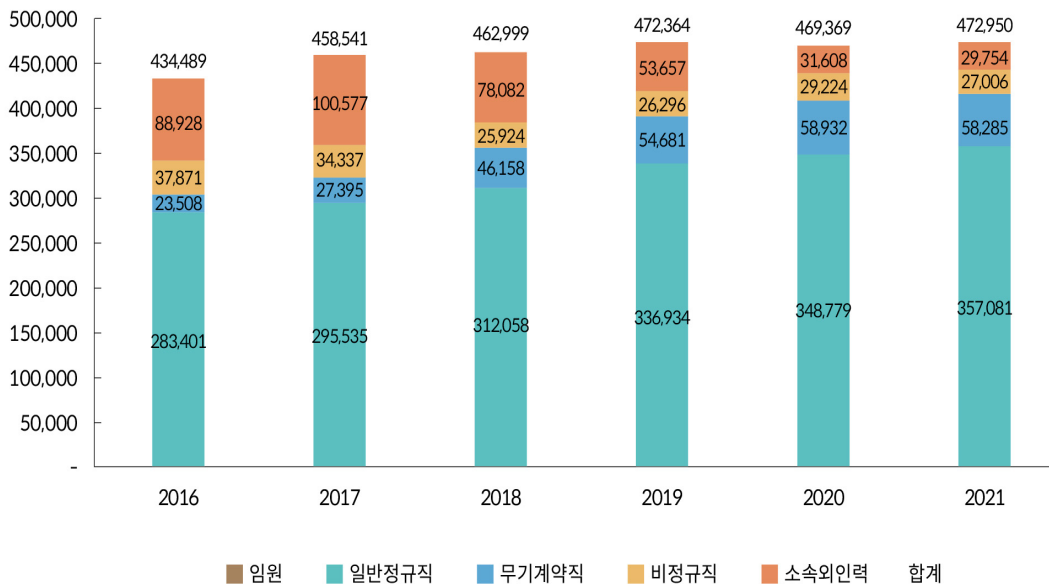
- 2021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¹⁴⁾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직원(현원 기준)은 47만 2,950명으로, 일반정규직 35만 7,081명(75.5%), 무기계약직 5만 8,285명(12.3%), 비정규직 2만 7,006명(5.7%), 소속외인력 2만 9,754명(6.3%)으로 구성됨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전체 공공기관 인력 중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대비 2021년 공공기관 인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16년 43만 4,489명에서 2021년 47만 2,950명으로 8.9% 증가하였으며, 이 중 무기계약직이 2016년 2만 3,508명에서 2021년 5만 8,285명으로 147.9% 증가하였고,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은 각각 28.7%, 66.5% 하락함
 - 일반정규직 비중은 2017년(64.5%)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무기계약직은 2016년(5.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8.7%)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6.2%)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5.7%)다시 하락함

1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2.2.7.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력규모 현황임

14)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의미함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B)	증감(B-A) (증감율)
정 규 직	임원	782 (0.2)	696 (0.2)	777 (0.2)	796 (0.2)	826 (0.2)	824 (0.2)	42 (5.4)
	일반 정규직	283,401 (65.2)	295,535 (64.5)	312,058 (67.4)	336,934 (71.3)	348,779 (74.3)	357,081 (75.5)	73,680 (26.0)
	무기 계약직	23,508 (5.4)	27,395 (6.0)	46,158 (10.0)	54,681 (11.6)	58,932 (12.6)	58,285 (12.3)	34,777 (147.9)
	소 계	307,690 (70.8)	323,626 (70.6)	358,993 (77.5)	392,411 (83.1)	408,537 (87.0)	416,191 (88.0)	108,500 (0.4)
비정규직		37,871 (8.7)	34,337 (7.5)	25,924 (5.6)	26,296 (5.6)	29,224 (6.2)	27,006 (5.7)	△10,865 (△28.7)
소속외인력		88,928 (20.5)	100,577 (21.9)	78,082 (16.9)	53,657 (11.4)	31,608 (6.7)	29,754 (6.3)	△59,174 (△66.5)
합 계		434,489 (100.0)	458,541 (100.0)	462,999 (100.0)	472,364 (100.0)	469,369 (100.0)	472,950 (100.0)	38,461 (8.9)

주: 단위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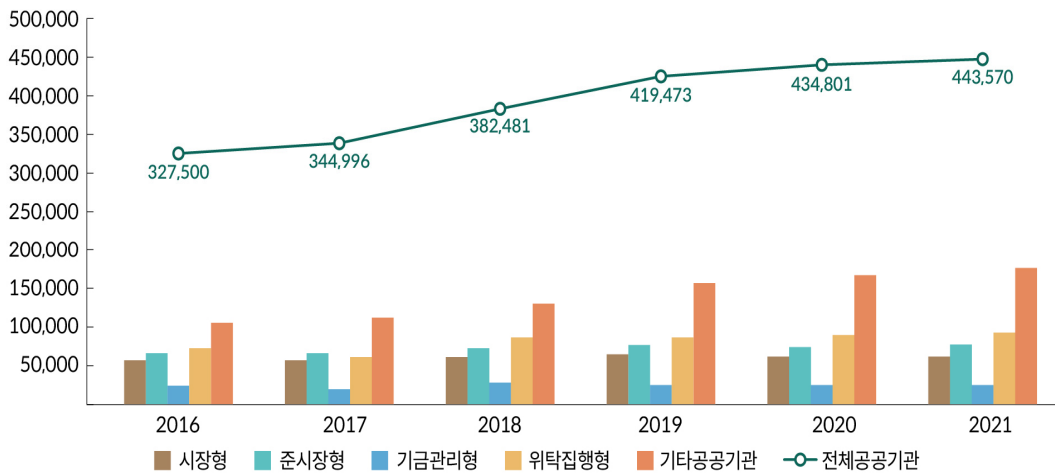
- 20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¹⁵⁾은 44만 3,570명으로 2020년 대비 8,769명(2.0%)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11만 6,070명(35.4%)이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임직원 정원을 살펴보면, 20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기타공공기관이 16만 5,555명(37.3%)으로 가장 많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만 6,545명(21.8%), 준시장형 공기업 8만 3,801명(18.9%)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1만 3,974명(8.4%), 한국산업은행 3,341명(2.0%), 한국수출입은행 1,189명(0.7%) 등 은행과 서울대학교병원 8,278명(5.0%), 부산대학교병원 6,742명(4.1%) 등 국립대학교병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대비 2021년 정규직 정원의 증가가 가장 큰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임
 - 코레일테크(주)가 2016년 59명에서 2021년 5,259명으로 5,200명이 증가하였으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2016년 1명에서 2021년 38명으로 37명 증가, 코레일로지스(주)가 2016년 101명에서 2021년 839명으로 738명 증가함
- 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5만 9,273명) 대비 2021년(6만 6,993명) 7,720명(13.0%)이 증가함
 - 정원 증가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2,091명 증가(2016년 2만 1,449명에서 2021년 2만 3,540명) 했으며,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880명 증가(2016년 1만 1,769명에서 2021년 1만 2,649명), 한국공항공사가 680명 증가(2016년 2,088명에서 2021년 2,768명) 함
- 준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6만 7,084명) 대비 2021년(8만 3,801명) 1만 6,717명(24.9%) 증가함
 -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3,898명 증가(2016년 2만 8,441명에서 2021년 3만 2,339명)했고, 한국도로공사가 3,087명 증가(2016년 6,007명에서 2021년 9,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42명 증가(2016년 6,637명에서 2021년 8,979명)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16년 2만 2,524명 대비 2021년 3만 675명으로 8,151명(36.2%) 증가함

15) 정규직은 상임 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의미함

-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3,968명 증가(2016년 6,099명에서 2021년 1만 67명), 국민연금공단이 1,853명 증가(2016년 5,668명에서 2021년 7,521명)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16년 7만 1,015명 대비 2021년 9만 6,545명으로 2만 5,530명(36.0%) 증가함
-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95명 증가(2016년 1만 3,531명에서 2021년 1만 6,326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520명 증가(2016년 4,906명에서 2021년 7,426명)함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 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B-A) (증감률)
공기업	126,357	132,162	139,389	146,501	149,559	150,794	24,437 (19.3)
시장형	59,273	61,570	63,553	65,259	66,270	66,993	7,720 (13.0)
준시장형	67,084	70,592	75,836	81,242	83,290	83,801	16,717 (24.9)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B-A) (증감률)
준정부기관	93,539	100,535	114,072	120,727	123,679	127,220	33,681 (36.0)
기금관리형	22,524	24,497	28,288	29,367	29,795	30,675	8,151 (36.2)
위탁집행형	71,015	76,038	85,784	91,360	93,884	96,545	25,530 (36.0)
기타공공기관	107,604	112,300	129,019	152,246	161,563	165,555	57,952 (53.9)
전 체	327,500	344,996	382,481	419,473	434,801	443,570	116,070 (35.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 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은 41만 6,191명으로 2020년 대비 7,653명(1.9%) 증가하였으며, 2016년(30만 7,690명) 대비 35.3%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2021년 기준 임직원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이 14만 9,954명(36.0%)으로 가장 많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만 2,194명(22.2%), 준시장형 공기업 7만 9,852명(19.2%)순임

○ 공공기관 임직원 현원은 2016년 30만 7,690명에서 2021년 41만 6,191명으로 35.3% 증가하였으며, 전체 공공기관 현원 증가율보다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52.2%)과 준정부기관(37.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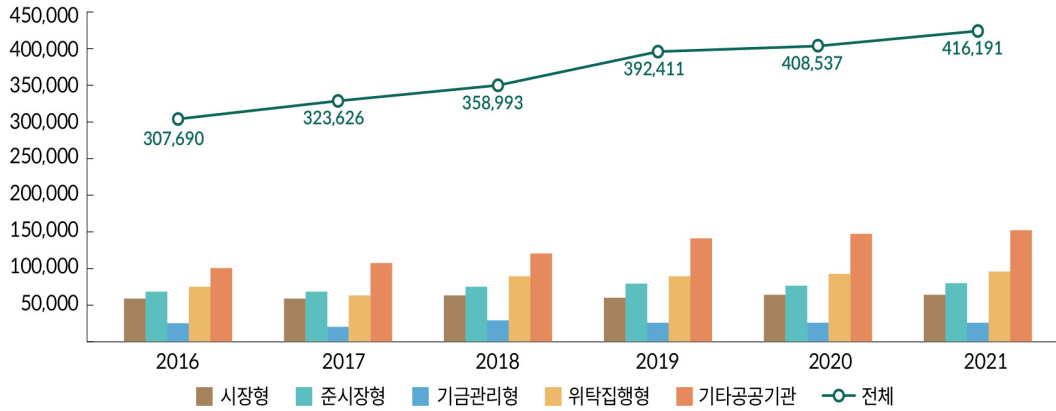
- 기타공공기관 중 2016년 대비 2021년에 일반정규직 현원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2,370명 증가), 부산대학교병원(2,095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1,996명 증가) 등 국립대학교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 외에 중소기업은행도 크게 증가(1,672명)함

- 2016년 대비 2021년 일반정규직 현원이 37.4% 증가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116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1,759명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838명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2021년 일반정규직 현원이 36.7% 증가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2,011명 증가), 국민연금공단(866명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313명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B-A) (증감률)
공기업	120,848	126,555	133,426	140,887	144,029	145,047	24,200 (20.0)
시장형	57,262	59,547	61,096	63,379	64,709	65,195	7,933 (13.9)
준시장형	63,585	67,008	72,329	77,507	79,320	79,852	16,267 (25.6)
준정부기관	88,312	93,945	107,094	114,625	117,339	121,190	32,878 (37.2)
기금관리형	21,212	22,548	26,440	27,819	28,189	28,996	7,784 (36.7)
위탁집행형	67,100	71,397	80,654	86,806	89,150	92,194	25,093 (37.4)
기타공공기관	98,531	103,127	118,473	136,899	147,169	149,954	51,423 (52.2)
전체	307,690	323,626	358,993	392,411	408,537	416,191	108,500 (35.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4만 3,570명인데 비해 현원은 41만 6,191명으로 정원 대비 2만 7,379명이 미충원됨
- 2016~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11만 6,070명이 증가하였으나, 현원은 10만 8,500명 증가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 대비 현원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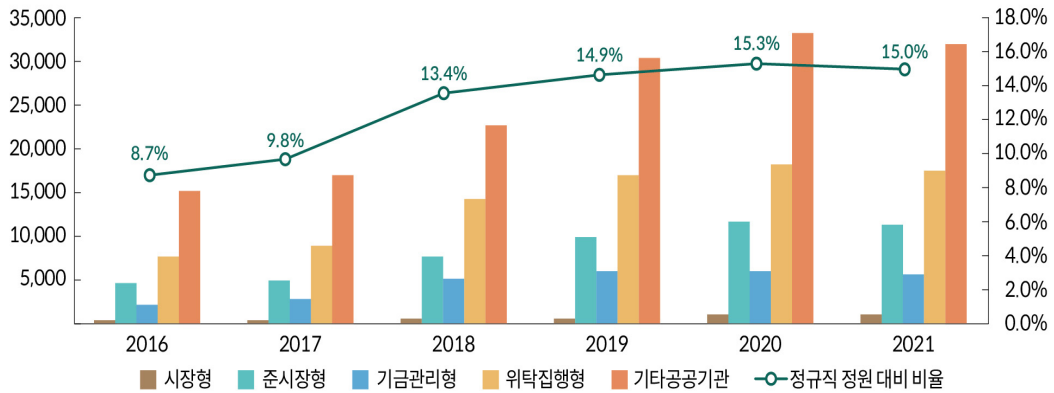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정원	327,500	344,996	382,481	419,473	434,801	443,570	116,070
현원	307,690	323,626	358,993	392,411	408,537	416,191	108,500
차이	△19,809	△21,370	△23,488	△27,063	△26,264	△27,379	△7,57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6만 6,709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6년 2만 8,640명에서 2021년 6만 6,709명으로 3만 8,070명(132.9%)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기업 유형에서 높은 증가 폭을 보임(223.4%)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268명 증가), 한국수력원자력(주)(121명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2,560명 증가), 한국마사회(1,993명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1,776명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 대비 무기계약직 정원 비율은 15.0%이며, 기타공공기관이 19.3%로 가장 높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8.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6% 수준임
-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2016년 8.7%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15.3%까지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5.0%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B-A)
						(B)	정규직 대비비율	
공기업	3,661	5,281	8,557	10,170	11,846	11,841	7.9	8,180 (223.4)
시장형	189	274	327	377	646	645	1.0	456 (241.3)
준시장형	3,472	5,007	8,230	9,793	11,200	11,196	13.4	7,724 (222.5)
준정부기관	9,827	11,980	19,240	21,953	22,507	22,947	18.0	13,120 (133.5)
기금관리형	2,184	2,970	4,913	5,399	5,366	5,400	17.6	3,216 (147.2)
위탁집행형	7,643	9,010	14,327	16,555	17,142	17,548	18.2	9,905 (129.6)
기타공공기관	15,152	16,662	23,289	30,467	32,329	31,920	19.3	16,769 (110.7)
전 체	28,640	33,922	51,087	62,590	66,682	66,709	15.0	38,070 (132.9)
정규직대비비율	8.7	9.8	13.4	14.9	15.3	15.0	-	-

주: 1. 정규직대비비율은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원)정원 대비 무기계약직 정원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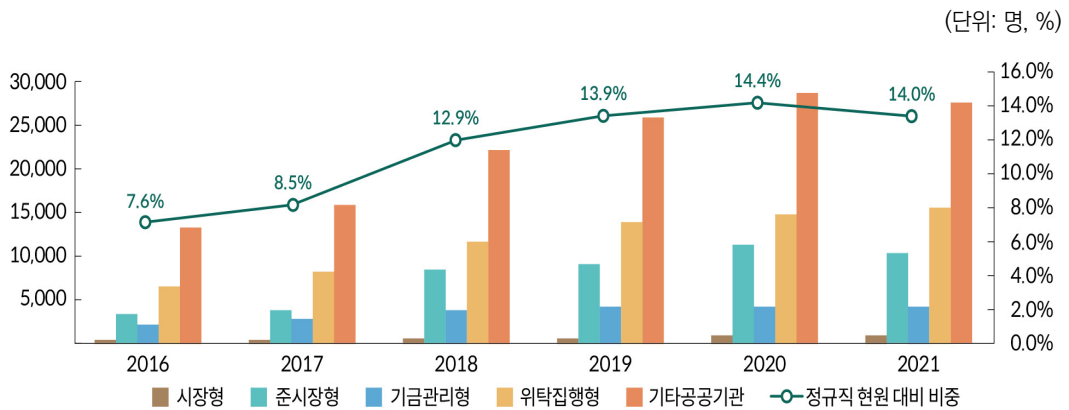
2. ()안은 증감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은 5만 8,285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무기계약직 현원은 2016년 2만 3,508명에서 2021년 5만 8,285명으로, 동 기간 동안 3만 4,778명(147.9%)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기업 유형에서 큰 증가 폭(242.7%)을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231명 증가), 한국수력원자력(주)(79명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2,453명 증가), 한국마사회(1,403명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1,723명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현원 대비 무기계약직 현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4.0%이며, 기타공공기관이 18.2%로 가장 높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3% 수준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 현황]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B-A)
						(B)	정규직 대비비율	
공기업	3,076	4,591	7,968	9,411	10,926	10,544	7.3	7,467 (242.7)
시장형	121	161	265	307	534	506	0.8	385 (318.2)
준시장형	2,955	4,430	7,703	9,104	10,392	10,038	12.6	7,082 (239.6)
준정부기관	7,869	9,165	16,277	19,171	19,758	20,425	16.9	12,556 (159.6)
기금관리형	1,587	1,707	3,887	4,618	4,654	4,714	16.3	3,127 (197.0)
위탁집행형	6,282	7,458	12,389	4,553	5,104	15,712	17.0	9,430 (150.1)
기타공공기관	12,562	13,639	1,913	26,099	28,248	27,316	18.2	14,754 (117.4)
전 체	23,508	27,395	46,158	54,681	58,932	58,285	14.0	34,778 (147.9)
정규직대비비율	7.6	8.5	12.9	13.9	14.4	14.0	-	-

주: 1. 정규직대비비율은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원)현원 대비 무기계약직 정원 비중임

2. ()안은 증감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¹⁶⁾ 실시에 따른 별도정원은 2016년 4,339명에서 2021년 8,825명으로 동 기간 동안 4,486명(103.4%) 증가함

- 2016년 대비 2021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75.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140.3%, 기타공공기관이 134.6% 증가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연금공단(196명 증가), 근로복지공단(69명 증가), 중소기업진흥공단(31명 증가)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923명 증가), 한전KPS(주)(232명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149명 증가)가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려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정년연장법」 개정 이전 일부 공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12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은행(308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77명 증가), 대한적십자사(67명 증가), 한국산업은행(50명 증가)이 크게 증가하였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B-A) (증감률)
공기업	2,075 (47.8)	3,870 (49.5)	4,385 (48.8)	4,650 (50.3)	4,395 (51.2)	4,205 (47.6)	2,130 (102.7)
시장형	910 (21.0)	1,594 (20.4)	1,702 (19.0)	1,646 (17.8)	1,292 (15.0)	1,405 (15.9)	495 (54.4)
준시장형	1,165 (26.8)	2,276 (29.1)	2,683 (29.9)	3,004 (32.5)	3,103 (36.1)	2,800 (31.7)	1,635 (140.3)
준정부기관	1,515 (34.9)	2,802 (35.8)	3,360 (37.4)	3,278 (35.5)	2,844 (33.1)	2,863 (32.4)	1,348 (89.0)
기금관리형	226 (5.2)	483 (6.2)	613 (6.8)	609 (6.6)	631 (7.4)	623 (7.1)	397 (175.7)
위탁집행형	1,289 (29.7)	2,319 (29.7)	2,747 (30.6)	2,669 (28.9)	2,213 (25.8)	2,240 (25.4)	951 (73.8)
기타공공기관	749 (17.3)	1,149 (14.7)	1,236 (13.8)	1,314 (14.2)	1,346 (15.7)	1,757 (19.9)	1,008 (134.6)
전 체	4,339 (100)	7,821 (100)	8,981 (100)	9,242 (100)	8,585 (100)	8,825 (100)	4,486 (103.4)

주: 1.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산하였음

2. ()안은 전체 대비 유형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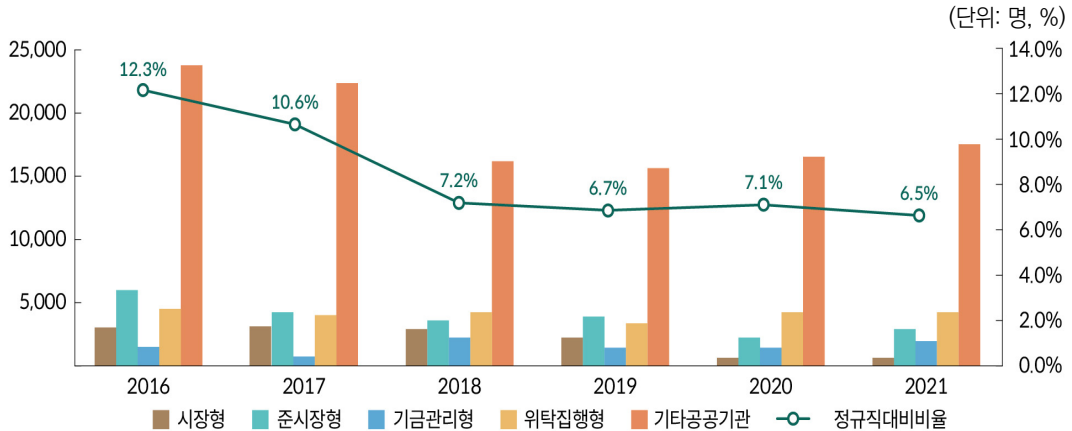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 현황

- 2021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2만 7,006명으로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비율은 2016년 12.3%였으나 2021년 6.5%까지 감소함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의 비정규직이 2016년 대비 2021년에 크게 감소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2016년 2,350명에서 2021년 508명으로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1,842명, 78.4%)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이 2016년 6,049명에서 2021년 2,977명으로 감소(3,072명, 50.8%)함

[공공기관 비정규직(현원) 현황]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B-A)
						(B)	정규직 대비비율	
공기업	8,399	6,544	4,858	5,600	3,242	3,485	2.4	4,914
시장형	2,350	2,209	2,108	1,765	478	508	0.8	1,842
준시장형	6,049	4,335	2,750	3,835	2,765	2,977	3.7	3,072
준정부기관	6,033	5,089	4,970	4,827	9,717	6,009	5.0	24
기금관리형	981	846	1,801	1,397	1,755	1,591	5.5	609
위탁집행형	5,052	4,244	3,169	3,430	7,962	4,418	4.8	634
기타공공기관	23,439	22,704	16,097	15,870	16,265	17,512	11.7	5,927
전 체	37,871	34,337	25,924	26,296	29,224	27,006	6.5	10,865
정규직대비비율	12.3	10.6	7.2	6.7	7.1	6.5	-	-

주: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및 재택/가내 근로자, 일시/간헐 업무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소속 외인력은 제외하였으며, 정규직은 임원,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현원의 합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6~2021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은 2만 8,094명이며, 201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동 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큰 공공기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으로 1만 4,787명(52.6%)이 전환되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84명(22.7%), 준시장형 공기업 4,295명(15.3%) 순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공기업	371	2,023	2,528	351	39	6	5,318 (18.9)
시장형	134	407	103	334	39	6	1,023 (3.6)
준시장형	237	1,616	2,425	17	-	-	4,295 (15.3)
준정부기관	1,894	2,261	3,290	223	141	181	7,990 (28.4)
기금관리형	384	340	827	54	1	-	1,606 (5.7)
위탁집행형	1,510	1,921	2,463	169	140	181	6,384 (22.7)
기타공공기관	1,693	2,092	8,248	2,400	315	39	14,787 (52.6)
전 체	3,958	6,376	14,066	2,974	495	226	28,094 (100.0)

주: ()안은 전체 전환실적 대비 유형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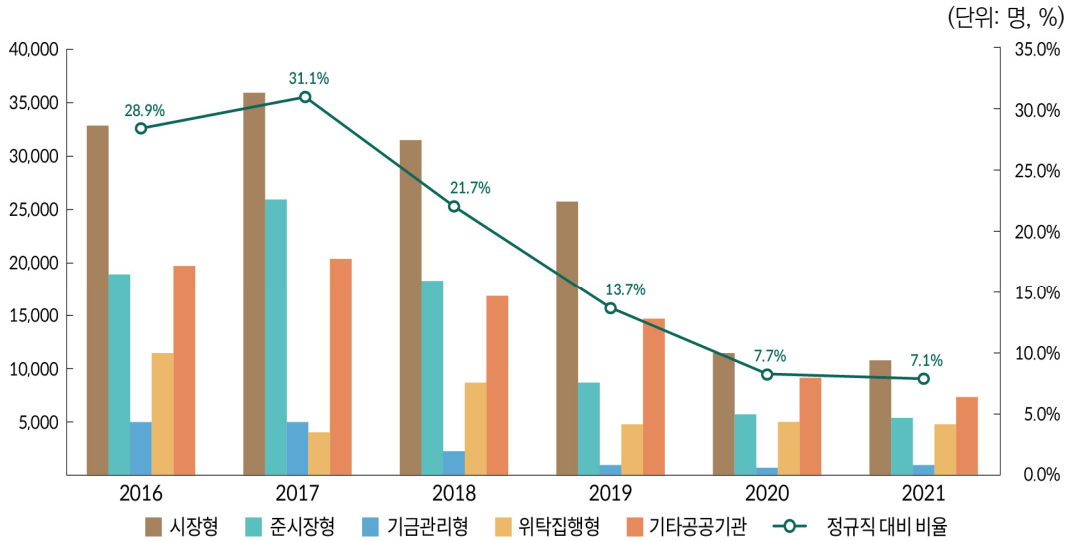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현재 2만 9,754명임

-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현원) 대비 비율은 2021년 7.1%로 2017년 31.1%에서 감소하는 추세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2021년도 소속외인력의 정규직(현원)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17.4%로 가장 높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6.4%, 기타공공기관이 5.3% 수준임

- 2016년 대비 2021년에 소속외인력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공기관 유형은 총 3만 5,836명이 감소한 공기업이며, 동 기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이 2만 2,203명, 준시장형 공기업이 1만 3,633명 감소함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황]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B-A)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52,302	62,692	50,576	33,918	16,601	16,467	11.3	△35,836
시장형	33,587	36,596	32,174	26,027	11,502	11,385	17.4	△22,203
준시장형	18,715	26,096	18,402	7,891	5,099	5,082	6.4	△13,633
준정부기관	16,773	17,253	10,295	5,251	5,573	5,264	4.3	△11,509
기금관리형	4,790	4,657	2,388	801	842	799	2.8	△3,991
위탁집행형	11,983	12,596	7,907	4,450	4,731	4,465	4.8	△7,518
기타공공기관	19,853	20,632	17,211	14,488	9,435	8,024	5.3	△11,829
전 체	88,928	100,577	78,082	53,657	31,608	29,754	7.1	△59,174
정규직대비비율	28.9	31.1	21.7	13.7	7.7	7.1	-	-

주: 소속외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을 포함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2016~2021년 동안 총 7만 9,495명임

- 동 기간 동안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가장 큰 공공기관 유형은 공기업 (64.9%)으로, 시장형 공기업은 3만 770명 전환하였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2만 861명 전환하는 등 총 5만 1,631명이 전환함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공기업	-	1,521	11,342	23,537	14,072	1,159	51,631 (64.9)
시장형	-	1,421	4,638	13,971	9,740	1,000	30,770 (38.7)
준시장형	-	100	6,704	9,566	4,332	159	20,861 (26.2)
준정부기관	-	1,094	7,423	4,261	449	181	13,408 (16.9)
기금관리형	-	716	2,318	1,699	39	32	4,804 (6.0)
위탁집행형	-	378	5,105	2,562	410	149	8,604 (10.8)
기타공공기관	13	818	3,937	4,410	3,788	1,491	14,457 (18.2)
전 체	13	3,433	22,702	32,208	18,308	2,831	79,495 (100.0)

주: 1. 소속외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을 포함하였음

2. ()안은 전체 전환실적 대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¹⁷⁾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6년 2만 1,123명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만 7,034명 수준임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6년 2만 1,123명에서 2021년 2만 7,034명으로 5,911명(28.0%) 증가하였으나 2020년 대비 2021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3,693명 감소(12.0%)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016년 1,112명에서 2021년 1,812명으로 701명(63.0%) 증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이 2016년 2,326명에서 2021년 3,374명으로 1,048명(45.0%) 증가함
- 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 3,660명에서 2021년 2,639명으로 1,021명 감소(27.9%)함

[공공기관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공기업	5,987	6,806	9,074	11,283	7,684	6,013	27
시장형	3,660	3,665	4,206	4,303	3,231	2,639	△1,021
준시장형	2,326	3,141	4,868	6,980	4,453	3,374	1,048
준정부기관	6,148	6,953	9,926	9,250	7,451	8,430	2,283
기금관리형	1,112	1,790	2,672	1,651	1,474	1,812	701
위탁집행형	5,036	5,164	7,254	7,598	5,977	6,618	1,582
기타공공기관	8,989	8,946	14,887	20,795	15,592	12,591	3,602
전 체	21,123	22,706	33,887	41,327	30,727	27,034	5,9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정규직은 상임 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며, 상임 임원 및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살펴봄

- 2021년 공공기관 전체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6,481명으로, 1,726명을 신규채용한 2016년에 비해 4,745명(275.4%) 증가
 - 2018년 8,694명의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2020년 대비 2021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준시장형 공기업이 288명 감소(41.8%), 기타공공기관이 888명 감소(22.6%)를 나타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기업	87	77	1,361	915	713	436
시장형	11	4	9	7	25	35
준시장형	76	73	1,352	908	689	401
준정부기관	745	586	2,992	2,678	2,702	3,008
기금관리형	329	98	371	400	407	528
위탁집행형	416	489	2,621	2,278	2,295	2,480
기타공공기관	894	962	4,341	4,868	3,925	3,037
전 체	1,726	1,625	8,694	8,461	7,340	6,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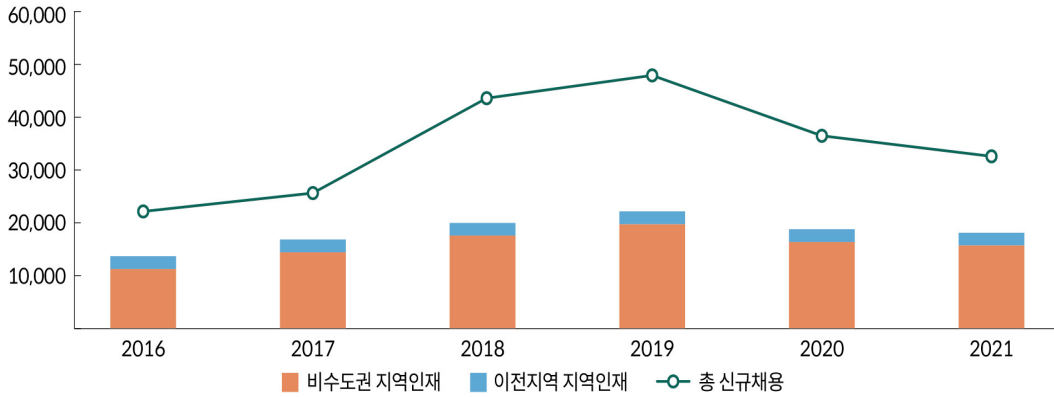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정규직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 신규채용¹⁸⁾은 2016년 1만 2,412명 이후 2019년 2만 1,762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1년에는 1만 8,472명에 이름
 -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총 신규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1%로 201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공공기관 정규직 지역인재 신규채용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함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및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가 있음

[공공기관 정규직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신규채용	22,849 (100.0)	24,331 (100.0)	42,581 (100.0)	49,789 (100.0)	38,067 (100.0)	33,515 (100.0)
지역인재 신규채용	12,412 (54.3)	13,594 (55.9)	20,591 (48.4)	21,762 (43.7)	18,556 (48.7)	18,472 (55.1)
비수도권 지역인재	11,285 (49.4)	12,135 (49.9)	18,654 (43.8)	19,685 (39.5)	16,513 (43.4)	16,228 (48.4)
이전지역 지역인재	1,128 (4.9)	1,459 (6.0)	1,937 (4.5)	2,078 (4.2)	2,044 (5.3)	2,244 (6.7)

주: 1. 총 신규채용은 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의 합임

2. ()안은 총 신규채용 대비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공기관 인건비 · 복리후생비 현황

가. 공공기관 인건비 · 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 공공기관 인건비

-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¹⁹⁾에 따르면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총인건비 기준으로 관리함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1년 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함

■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 「202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됨
 - 급여성 복리후생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부분

■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있었던 공공기관은 총 77개 공공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9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개, 기타공공기관 20개 기관임

19)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나 2022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됨

나. 공공기관 인건비·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규정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됨
 - 공공기관은 총인건비²⁰⁾ 규정에서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2.4% 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1.9% 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0.9%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 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1.9% 이내에서 증액 편성
-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개인별·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차등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며,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등급의 10% 이상, 최저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서 복리후

20)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의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함

생비를 편성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복리후생비는 ①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며, ②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함. 또한 ③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일반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편성

[복리후생비 주요항목별 준수사항]

항목	주요 내용
교육비 · 학자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함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함
주택자금 · 융자금	○ 주택자금 등의 대출이자율, 대출한도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 지원은 예외로 함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
경조사비 · 상품권등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해서는 안됨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

자료: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한 인건비·복리후생비 특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특례 규정을 명시
- 차등인상을 규정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규정에서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2.4% 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1.9% 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0.9%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을 적용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인건비 등)은 차등인상을 산정시 제외
-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복리후생제도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복리후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식년을 통한 유급휴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특례 현황]

구분	규정	세부내용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해외 우수 연구인력 주거지원제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 국제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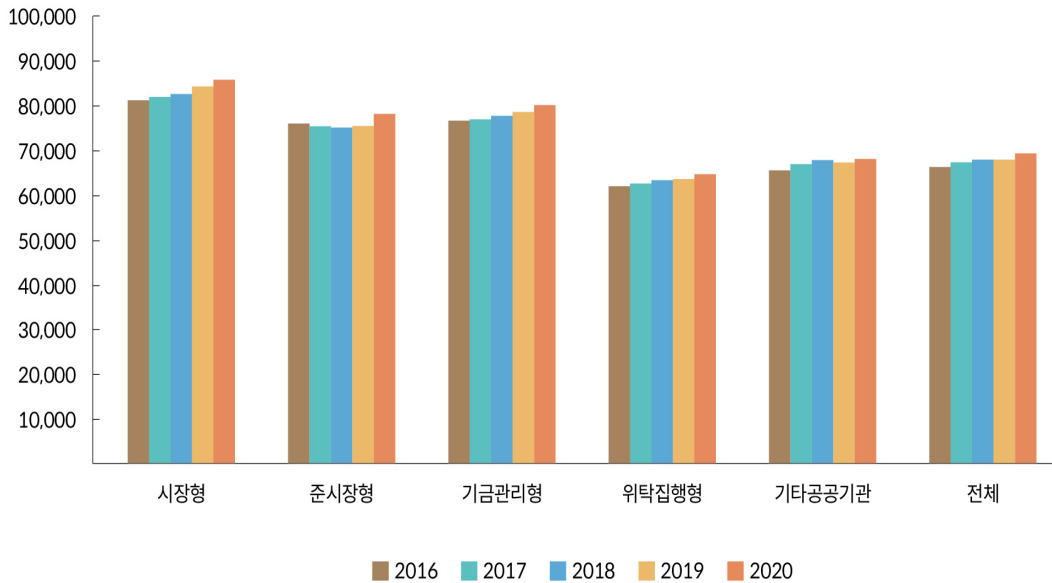
(1) 공공기관 일반정규직²¹⁾ 평균보수 현황

-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 현황을 조사함
-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는 2016년 6,650만원에서 2020년 6,932만원으로 282만원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2020년 동안 매년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평균 8,582만원임
 - 2020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주) 9,582만원, 한국남부발전(주) 9,389만원, 한국남동발전(주) 9,249만원 등으로 나타남
 - 동 기간 동안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20년 기준 평균 6,482만원 수준임
 - 2020년 기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5,382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5,926만원, 도로교통공단 6,357만원, 한국전력거래소 8,793만원 등으로 나타남
- 2016~2020년 동안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증가율(2016년 대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이며, 2016년 대비 2020년에 5.6% 상승
- 공공기관 유형별로 직원 평균보수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6년 대비 2020년에 2.7% 증가하였으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 격차는 2016년 515만원에서 2020년 768만원으로 확대됨

21) 정규직을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나, 여기서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정규직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함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78,387	78,308	78,523	79,478	81,555	3,168	4.0
시장형	81,249	81,910	82,632	84,300	85,823	4,574	5.6
준시장형	76,097	75,427	75,236	75,620	78,142	2,045	2.7
준정부기관	64,172	64,519	65,235	65,633	66,814	2,642	4.1
기금관리형	76,703	76,973	77,739	78,649	80,133	3,431	4.5
위탁집행형	62,255	62,657	63,366	63,688	64,823	2,568	4.1
기타공공기관	65,579	67,082	67,815	67,457	68,053	2,474	3.8
전체	66,502	67,499	68,170	68,146	69,319	2,817	4.2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의 평균보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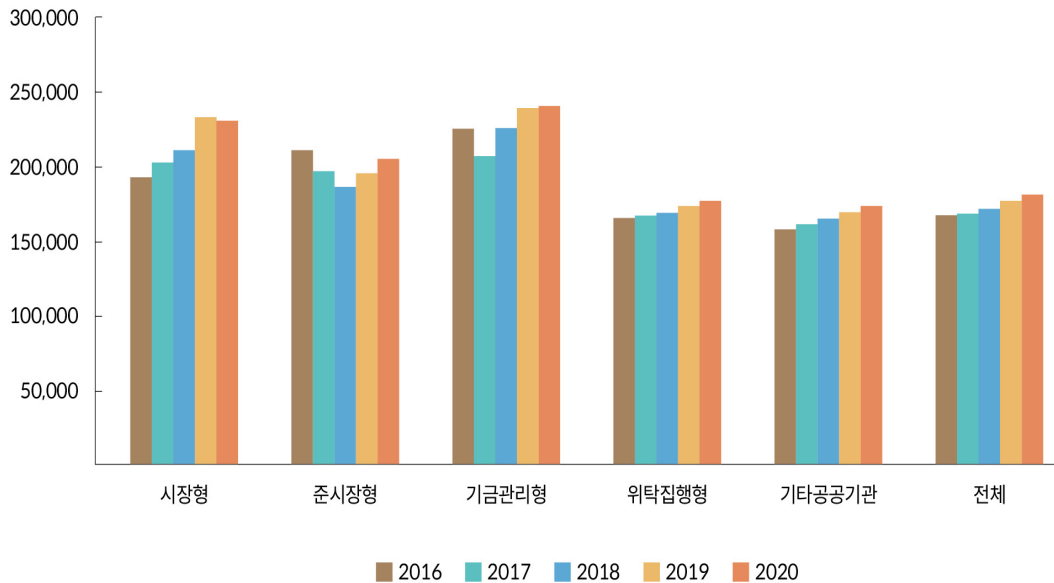
(2) 공공기관 임원 평균연봉 현황

-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기관장, 이사, 감사)의 평균연봉²²⁾ 현황을 조사함
- 2016~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1억 6,666만원에서 2020년 1억 8,023만원으로 1,357만원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2016~2020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연봉 수준을 보이며, 2016년도 2억 2,442만원, 2020년도 기준 2억 3,945만원임
 - 2020년 기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억 841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 9,772만원, 예금보험공사 2억 9,46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1억 9,172만원에서 2020년 2억 2,952만원으로 3,780만원이 증가(19.7%)하여, 타 유형의 공공기관에 비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냄
 - 2020년 기준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 2억 7,183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2억 6,771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 6,506만원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2억 999만원에서 2020년 2억 432만원으로 567만원이 감소(Δ 2.7%)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2) 연봉은 기본급, 성과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합계를 의미함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201,871	198,607	196,266	210,903	215,120	13,249	6.6
시장형	191,720	201,934	209,860	232,153	229,519	37,799	19.7
준시장형	209,992	195,946	185,391	194,965	204,321	△5,672	△2.7
준정부기관	172,948	171,730	175,680	181,448	184,852	11,904	6.9
기금관리형	224,421	205,759	225,002	238,109	239,448	15,027	6.7
위탁집행형	164,687	166,335	167,955	172,574	176,301	11,614	7.1
기타공공기관	157,274	160,389	164,199	168,629	172,380	15,105	9.6
전체	166,661	167,800	170,895	176,236	180,226	13,565	8.1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의 평균연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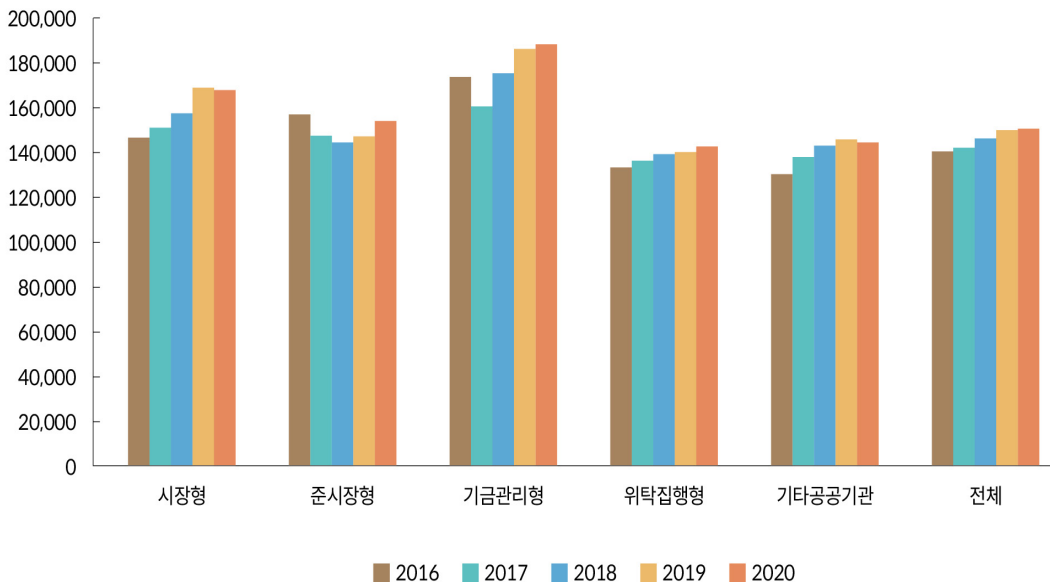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 2016~2020년 동안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은 2016년 1억 4,035만원에서 2020년 1억 5,090만원으로 1,054만원(7.5%) 증가함

- 동 기간 동안 이사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16년 1억 7,404만원, 2020년 기준 1억 8,82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16년도 대비 2020년도 이사 평균연봉은 신용보증기금(17.0%), 중소기업진흥공단(16.3%), 국민연금공단(16.1%)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 평균연봉은 2016년 1억 5,698만원에서 2020년 1억 5,377만원으로 320만원이 감소(△2.0%)하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사 평균연봉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준시장형 공기업 중 2016년도 대비 2020년도 이사 평균연봉의 증감률은 한국마사회 23.4% 감소, 한국철도공사 22.4% 감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8.0%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152,327	148,945	150,143	156,783	160,164	7,837	5.1
시장형	146,515	151,086	157,654	168,856	168,153	21,638	14.8
준시장형	156,976	147,232	144,134	147,125	153,773	△3,203	△2.0
준정부기관	141,904	141,465	146,666	149,489	151,686	9,783	6.9
기금관리형	174,044	160,709	175,696	185,879	188,261	14,217	8.2
위탁집행형	133,199	136,253	138,964	140,028	142,542	9,344	7.0
기타공공기관	130,434	137,798	142,868	146,218	144,481	14,047	10.8
전 체	140,353	141,993	146,140	149,977	150,897	10,544	7.5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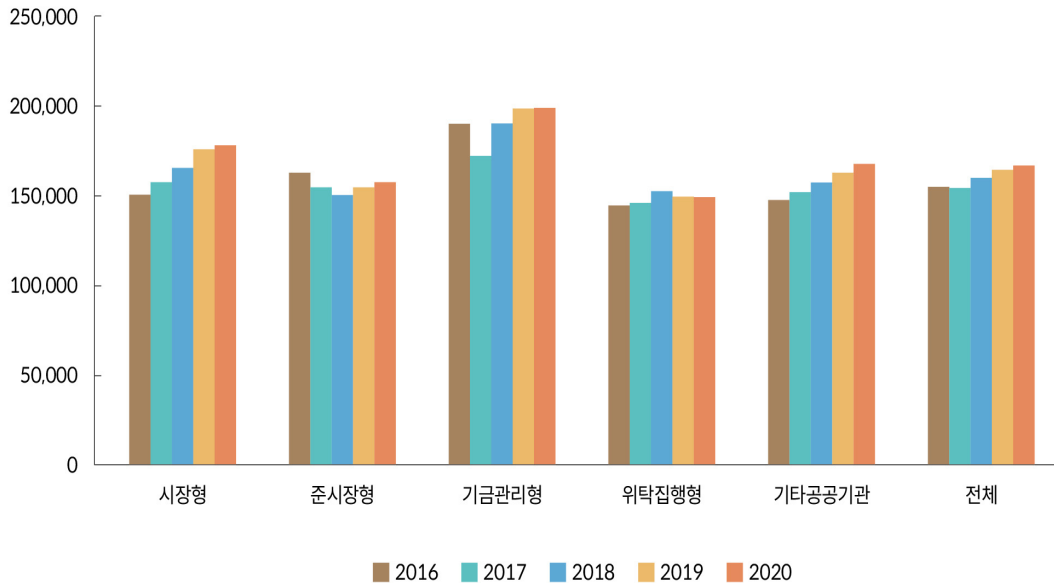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 2016~2020년 동안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은 2016년 1억 5,130만원에서 2020년 1억 6,302만원으로 1,172만원(7.7%) 증가함
 - 동 기간 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16년도 1억 8,553만원, 2020년도 기준 1억 9,43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기간 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16년도 1억 4,122만원, 2020년도 기준 1억 4,5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2020년 동안 감사 평균연봉의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016년 1억 4,679만원에서 2020년 1억 7,346만원으로 2,667만원이 증가(18.2%)함
 - 시장형 공기업의 2016년도 대비 2020년도 감사 평균연봉 증가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80.8%, 한국가스공사 58.2%, 한국석유공사 60.9%, 한국광물자원공사²³⁾ 5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3) 2021년 9월 10일 해산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감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154,010	152,083	152,880	159,493	161,978	7,968	5.2
시장형	146,790	153,490	161,213	171,281	173,463	26,673	18.2
준시장형	159,107	151,089	146,997	151,172	153,872	△5,236	△3.3
준정부기관	157,334	151,893	162,295	163,398	62,857	5,524	3.5
기금관리형	185,525	168,170	185,737	193,962	194,306	8,781	4.7
위탁집행형	141,224	142,591	148,900	145,934	145,704	4,479	3.2
기타공공기관	144,177	148,578	153,653	159,147	163,905	19,728	13.7
전체	151,299	150,667	156,229	160,621	163,017	11,718	7.7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1) 공공기관 예산상 복리후생비 현황

- 공공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는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2016년 5,759억원에서 2020년 6,443억원으로 683억원 증가함
- 공기업의 경우 2016년도 2,246억원에서 2020년 2,253억원으로 7억원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은 2016년 1,673억원에서 2020년도 1,783억원으로 110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 1,841억원에서 2020년 2,406억원으로 565억원 증가함

[공공기관 예산상 복리후생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2,246 (39.0)	2,236 (38.2)	2,368 (38.3)	2,399 (37.1)	2,253 (35.0)	7	0.3
시장형	1,116 (19.4)	1,132 (19.3)	1,172 (19.0)	1,155 (17.9)	1,078 (16.7)	△38	△3.4
준시장형	1,130 (19.6)	1,104 (18.9)	1,196 (19.4)	1,244 (19.2)	1,175 (18.2)	45	4.0
준정부기관	1,673 (29.0)	1,655 (28.3)	1,734 (28.1)	1,814 (28.0)	1,783 (27.7)	110	6.6
기금관리형	429 (7.5)	440 (7.5)	476 (7.7)	505 (7.8)	484 (7.5)	54	12.6
위탁집행형	1,244 (21.6)	1,216 (20.8)	1,258 (20.4)	1,309 (20.2)	1,299 (20.2)	56	4.5
기타공공기관	1,841 (32.0)	1,964 (33.5)	2,079 (33.6)	2,257 (34.9)	2,406 (37.3)	565	30.7
전 체	5,759 (100.0)	5,855 (100.0)	6,181 (100.0)	6,469 (100.0)	6,443 (100.0)	683	11.9

주: 1. 임원 및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상 복리후생비

2. ()안은 비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 규모가 2016년 1,841억원에서 2020년 2,406억원으로 565억원이 증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크게 증가함
- 2016년 대비 2020년 복리후생비가 가장 적게 증가한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복리후생비가 2016년 1,116억원에서 2020년 1,07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4% 감소함

(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도별 출연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2016년 2,932억원에서 2020년 1,718억원으로 1,2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경우 2016년 2,389억원에서 2020년 912억원으로 1,476억원 감소하였음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6년 2,157억원에서 2020년 227억원으로 1,931억원이 감소($\Delta 89.5\%$)하였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 231억원에서 2020년 685억원으로 454억원 증가(196.5%)
- 준정부기관은 2016년 11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51억원 증가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 425억원에서 2020년 636억원으로 211억원 증가함
 - 은행형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대부분을 차지(2020년 기준 79.3%)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의 출연액 규모의 증가(29.4%)는 2016년 및 201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 이후 출연한 것에 기인함
-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누계액이 큰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145억원), 중소기업은행(2,186억원), 한국수자원공사(442억원), 한전KPS(주)(349억원), 한국도로공사(301억원), 한국산업은행(301억원) 순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2,389	2,638	1,698	1,124	912	△1,476	△61.8
시장형	2,157	2,363	973	183	227	△1,931	△89.5
준시장형	231	275	725	941	685	454	196.5
준정부기관	118	91	125	203	170	51	43.5
기금관리형	45	33	42	139	125	80	178.2
위탁집행형	73	58	83	65	45	△29	△38.9
기타공공기관	425	441	508	874	636	211	49.6
전 체	2,932	3,170	2,331	2,202	1,718	△1,214	△41.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바탕으로 재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임
- 가장 크게 규모가 확대된 준시장형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6년 231억원에서 2020년 685억원으로 454억원 증가함
 - 2020년 기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72억원을 출연하여 가장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0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6년 45억원에서 2020년 125억으로 178.2% 증가함

[주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규모]

(단위: 백만원)

기관 유형	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근5년간 누적출연액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101,275	108,567	43,399	-	-	253,240
	한국수력원자력(주)	40,000	40,000	17,430	-	5,480	102,910
	한국동서발전(주)	18,286	12,424	6,535	-	826	38,070
	한국남동발전(주)	15,579	13,847	4,180	727	767	35,100
	한국공항공사	7,056	7,500	7,100	4,800	4,017	30,473
	인천국제공항공사	4,926	12,200	3,100	4,500	5,500	30,226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	-	40,000	47,384	27,161	114,545
	한국도로공사	2,906	6,389	4,938	5,352	10,490	30,075
	한국수자원공사	6,900	6,500	6,758	14,594	9,416	44,168
	한전KPS(주)	7,200	4,300	6,907	8,300	8,150	34,857
	한국마사회	-	-	4,000	4,000	3,000	11,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4,500	3,219	3,114	2,859	13,692
	한전KDN	2,022	2,506	3,216	3,712	2,555	14,011
	주택도시보증공사	1,540	-	-	2,200	2,400	6,14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826	851	1,551	991	1,714	6,933
	한국주택금융공사	1,501	1,503	1,500	2,500	3,500	10,504
	한국자산관리공사	1,686	1,474	1,716	2,311	2,151	9,338
	한국무역보험공사	-	-	-	3,500	3,360	6,860
기타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	-	6,122	12,000	12,000	30,122
	중소기업은행	38,984	39,600	39,850	61,720	38,461	218,615
	한국수출입은행	-	-	2,000	9,000	-	11,000
	코레일유통(주)	420	580	474	559	404	2,437
	한국투자공사	450	530	860	900	1,600	4,34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현황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하여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²⁴⁾로, 공공기관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임
-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 장애인 고용, 산업안전, 체험형 인턴, 채용형 인턴 등의 신규채용, 온누리상품권 및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공부분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들 활동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음

가. 장애인 근로자 현황

- 공공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
- 2021년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현원은 6,929명으로 2017년 도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현원이 2,295명인 약 33.1%의 비율로 타 유형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1년 장애인 근로자 현원은 781명으로 전년대비 약 2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도 기준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974명이 재직 중이며,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0명으로 나타남

24) 정도진 외, 201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 및 측정사례연구」, 회계저널.

[2017~202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장애인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기관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형 공기업(15)	1,621	1,686	1,794	1,855	1,859(26.8)
준시장형 공기업(20)	1,837	1,927	1,948	1,963	1,994(28.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647	736	805	808	781(1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1,855	1,961	2,157	2,187	2,295(33.1)
전체(129)	5,960	6,310	6,704	6,813	6,929(100.0)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장애인 근로자 실 현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 2021년도 기준 장애인 근로자(휴직자 포함)의 평균 재직기간은 15.1년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연수가 17.0년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평균 근무연수는 14.3년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021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

(단위: 년)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15)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	전체 (125)
평균재직기간	14.5	17.0	14.4	14.3	15.1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장애인 근로자 실 현원을 기준으로 함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지 않은 기관 4개를 제외하여 77개 기관임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나. 체험·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 현황

■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인 체험·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채용한 체험형 청년인턴은 총 16,914명으로 2020년 대비 3,554명이 증가함
 - 체험형 청년인턴 신규 채용 비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6,622.7명 약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장형 공기업이 4,603명으로 약 27.2%의 비율을 차지함
-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신규 채용한 채용형 청년인턴은 총 3,993명으로 지난해 대비 449.6명이 증가함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1년 채용형 인턴의 채용 인원이 지난해 대비 243.9명이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약 34.8%로 기관 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17~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체험·채용형 청년인턴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유형	2017	2018	2019	2020(a)	2021(b)	b-a
체 험 형	시장형 공기업(15)	1,850.0	3,116.0	3,214.5	3,508.0	4,603.0	1,095.0
	준시장형 공기업(20)	1,291.0	3,699.0	3,694.8	3,039.0	3,694.5	655.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946.0	1,413.0	1,642.0	1,554.0	1,993.5	439.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3,402.0	4,409.6	5,039.6	5,258.5	6,622.7	1,364.2
	전체(129)	7,489.0	12,638.0	13,590.9	13,360.0	16,914.0	3,554.0
채 용 형	시장형 공기업(15)	1,556.0	1,185.0	846.0	742.0	872.0	130.0
	준시장형 공기업(20)	2,375.5	1,810.5	1,562.8	1,634.4	1,390.5	△243.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525.0	1,075.0	343.0	242.0	556.0	314.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1,632.5	2,034.5	1,753.3	925.0	1,174.5	249.5
	전체(129)	6,089.0	6,105.0	4,505.0	3,543.4	3,993.0	449.6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다.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 2020년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이 수립(2020.1.15.)됨에 따라,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공공부문의 안전경영 책임이 강화되면서 공공부문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2021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도 함
- 공공기관은 2019년부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는 직영, 하청, 건설발주 기관에서 일어난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업재해 발생자(수)는 2018년 최고 93명에서 2021년 57명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도 기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인원 57명 중 약 40명이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발생하여 해당 유형에서 약 70.2% 비율로 나타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산업재해(사고·사망) 발생이 최근 5년간 0명으로 나타남

[2017~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산업재해(사고·사망) 현황]

(단위: 명)

기관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형 공기업(15)	15	19	6	11	7
준시장형 공기업(20)	33	58	74	47	4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0	0	0	0	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20	16	11	17	10
전체(129)	68	93	91	75	57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산업재해는 사고·사망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용한 최신통계로 작성됨

3.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7년도 외부(하청, 건설발주)는 미집계 된 현황임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사고·사망)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 마사회로 164명이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6명으로 나타남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산업재해(사고·사망) 최다 발생 기관('17~'21년 누적)]

구분	기관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36명)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164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18명), 국가철도공단(18명)

주: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7년도 외부(하청, 건설발주)는 미집계 된 현황임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의미하며, 2021년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상자는 전체 142명임
 - 2021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3명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 전체 142명 중 약 3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시장형 공기업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총 548명으로 5년간 발생한 전체 부상자 1,500명 대비 36.5%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은 강원랜드(2017, 2019), 한국지역난방공사(20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17) 등 3개 기관임²⁵⁾

[2017~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안전사고(부상자) 현황]

(단위: 명)

기관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형 공기업(15)	121	223	138	33	33
준시장형 공기업(20)	79	85	63	25	2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150	136	109	44	4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37	49	42	24	37
전체(129)	387	493	352	126	142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산업재해는 사고·사망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용한 최신통계로 작성됨

3.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7년도 외부(하청, 건설발주)는 미집계 된 현황임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25) 발생연도별로 사망자 1명으로 총 4명이 사망함

- 최근 5년 동안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약 343명, 다음으로는 강원랜드에서 291명으로 나타남

[공기업 · 준정부기관 유형별 안전사고(부상자) 최다 발생 기관('17~'21년 누적)]

구분	기관
시장형 공기업	강원랜드(291명)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163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343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9명)

자료: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공공기관이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입액은 2017년 409억 2,880억원 이후 증가 추세임
 - 2020년도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권장되면서 상품권 구입액이 848억 5,47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180억 3,000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약 102억 2,200만원 감소한 금액임

[2017~202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단위: 백만원, %)

기관유형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b-a	(b-a)/b
시장형 공기업(15)	13,841	14,433	15,583	30,493	16,391	△14,102	△86.0
준시장형 공기업(20)	12,517	13,059	14,979	28,252	18,030	△10,222	△56.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4,453	4,225	5,266	8,146	7,282	△864	△1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10,118	9,519	11,975	17,964	16,362	△1,602	△9.8
전체(129)	40,929	41,236	47,803	84,855	58,065	△26,790	△46.1

주: 1.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연례적 데이터 제공의 통일성을 위하여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 2021년의 경우 가 결산 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2020년도 구매액 대비 2021년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이 급감한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전년대비 급감한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년도 구매 금액이 304억 9,300만원이었던데 반해 2021년도 163억 9,100만원으로 약 141억 200만원이 감소함

[2019년 대비 2020년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급감한 10개 기관]

(단위: 개)

기관유형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2)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 KPS(주),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 현황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이전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 증가이며,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전면 개편(2017년 12월)하여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이상 확대함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계량지표	① 비정규직 ·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0.5) ②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1.5)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2점
	비계량지표 정의	일자리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배점	공기업: 4점, 준정부기관: 3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지표	장애인 의무고용(0.3~0.5), 국가유공자 우선채용(0.3~0.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2~0.4)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1점
	비계량지표 정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배점	공기업: 3점, 준정부기관: 2점
안전 및 환경	계량지표	없음
	배점	없음
	비계량지표 정의	①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②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5점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지표	중소기업생산품(0.4~0.8), 기술개발생산품(0.2~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5), 여성기업 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4~0.8), 국가유공자활용사촌생산품(0.2~0.4), 재정조기집행(0.3~0.5)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3점
	비계량지표 정의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등과의 상생 ·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2점
윤리경영	계량지표	없음
	배점	없음
	비계량지표 정의	경영활동 시 경제적 · 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
	배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5점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 pp17-22.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II

공공기관 재무 및 관리현황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공공기관 재무

가.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함
-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0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함
-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음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2월 말까지 제출, 3월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0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31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8월 20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 공공기관의 2020년 말 자산은 902조 3,786억원, 부채는 544조 8,045억원,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자산은 41조 5,593억원, 부채는 17조 9,045억원, 당기순이익은 4조 4,820억원 증가함¹⁾
-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52.3%를 나타내어 2019년 대비 5.5%p 감소함
-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 1,461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으로 2019년 대비 4조 4,820억원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 감 (C=B-A)	증감률 (C/A)
자산	7,995,243	8,099,020	8,281,966	8,608,193	9,023,786	415,593	4.8
부채	5,003,456	4,951,461	5,033,886	5,269,000	5,448,045	179,045	3.4
(부채비율)	(167.2)	(157.3)	(155.0)	(157.8)	(152.3)	(△5.5)	-
당기순이익	156,612	72,541	6,920	8,269	53,088	44,820	542.0

주: 공공기관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은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부채비율 대신 BIS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함

1) 기획재정부가 2021년 4월 발표한 공시자료에서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의 2020 회계연도 재무정보를 대상으로 함

- 2020년 말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는 684조 1,013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75조 8,858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조 2,792억원 증가한 3조 6,074억원임
-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으므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따른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18~2020)]

(단위: 억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2018	2019 (c)	2020 (d)	증감 (d-c)
한국산업은행	2,258,227	2,337,626	2,640,070	302,444	7,060	2,791	19,613	16,822
한국수출입은행	768,328	791,185	836,205	45,020	6,859	4,347	981	△3,366
중소기업은행	2,684,153	2,953,344	3,364,738	411,394	17,643	16,143	15,479	△663
합 계	5,710,708	6,082,155	6,841,013	758,858	31,561	23,281	36,074	12,792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9년 대비 41조 5,593억원(4.8%) 증가한 902조 3,786억원이며,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함
-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자산 증가는 설비투자 자산 증가(4조원) 및 일시적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유동금융자산 증가(1.2조원) 등에 기인함
- 준시장형 공기업의 자산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8.8조원)의 임대주택 증가, 택지개발 사업용 토지 증가 등과 한국도로공사(3.4조원)의 고속도로 투자비 증가, 한국철도공사(2.7조원)의 철도부지 등에 대한 토지재평가이익의 증가 등에 기인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운영을 위한 정부출연금 등 증가(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장기대여금 등 증가(3.9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유가증권 증가 등(2.5조원)에 기인함

- 기타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현대상선(주) 지원을 위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투자(0.36조원) 및 관련 자산 평가이익(3.3조원) 증가에 기인함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5,629,846	5,690,008	5,792,849	6,001,223	6,157,483	156,260	2.6
시장형	2,772,753	2,779,705	2,830,192	2,961,678	2,963,264	1,587	0.1
준시장형	2,857,093	2,910,303	2,962,657	3,039,545	3,194,219	154,674	5.1
준정부기관	2,031,552	2,070,970	2,096,239	2,184,450	2,358,748	174,298	8.0
기금관리형	1,109,241	1,130,737	1,159,574	1,254,433	1,403,761	149,328	11.9
위탁집행형	922,312	940,234	936,665	930,016	954,987	24,970	2.7
기타공공기관	333,845	338,042	392,878	422,521	507,555	85,035	20.1
전 체	7,995,243	8,099,020	8,281,966	8,608,193	9,023,786	415,593	4.8

주: 공공기관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대비 17조 9,045억원(3.4%) 증가한 544조 8,045억원임

- 2019년 대비 2020년의 시장형 공기업 부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3.8조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도로공사(1.7조원), 한국철도공사(1.7조원) 등에서 사업목적용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차입 확대에 기인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부채 증가(3.2조원)는 융자사업 확대에 의한 공채 순증가 등에 의함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채 증가는 자금마련 목적 사채 발행(1조원) 및 HMM 영구채 평가이익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가(1.8조원)에 따른 것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2020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3,629,932	3,640,568	3,711,644	3,880,982	3,978,508	97,527	2.5
시장형	1,697,227	1,721,842	1,804,005	1,962,290	1,990,710	28,420	1.4
준시장형	1,932,705	1,918,725	1,907,639	1,918,691	1,987,799	69,107	3.6
준정부기관	1,236,368	1,180,897	1,182,054	1,223,100	1,257,127	34,027	2.8
기금관리형	670,939	608,641	578,378	577,713	601,935	24,223	4.2
위탁집행형	565,429	572,256	603,677	645,387	655,191	9,805	1.5
기타공공기관	137,157	129,996	140,188	164,919	212,410	47,491	28.8
전 체	5,003,456	4,951,461	5,033,886	5,269,000	5,448,045	179,045	3.4

주: 공공기관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으로 2019년 8,269억원 대비 4조 4,820원(542.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증가(2019년 △3.6조원 대비 +5.2조원 증가한 1.6조원)에 기인함
 - 2020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3.3조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2.8조원),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한국전력공사(연결 기준 2.1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1.9조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1.6조원)임
 - 반면,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2.4조원), (구)한국광물자원공사(1.35조원),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1.3조원)에서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2020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90,442	41,954	20,049	12,334	△5,896	△18,229	△147.8
시장형	62,595	10,035	△10,952	△16,588	△25,476	△8,887	53.6
준시장형	27,848	31,919	31,001	28,922	19,580	△9,342	△32.3
준정부기관	64,986	28,645	△13,266	△4,711	31,125	35,836	△760.7
기금관리형	30,613	23,798	26,597	24,759	16,079	△8,680	△35.1
위탁집행형	34,373	4,847	△39,863	△29,471	15,046	44,516	△151.1
기타공공기관	1,184	1,942	137	646	27,859	27,213	4,210.0
전 체	156,612	72,541	6,920	8,269	53,088	44,820	542.0

주: 공공기관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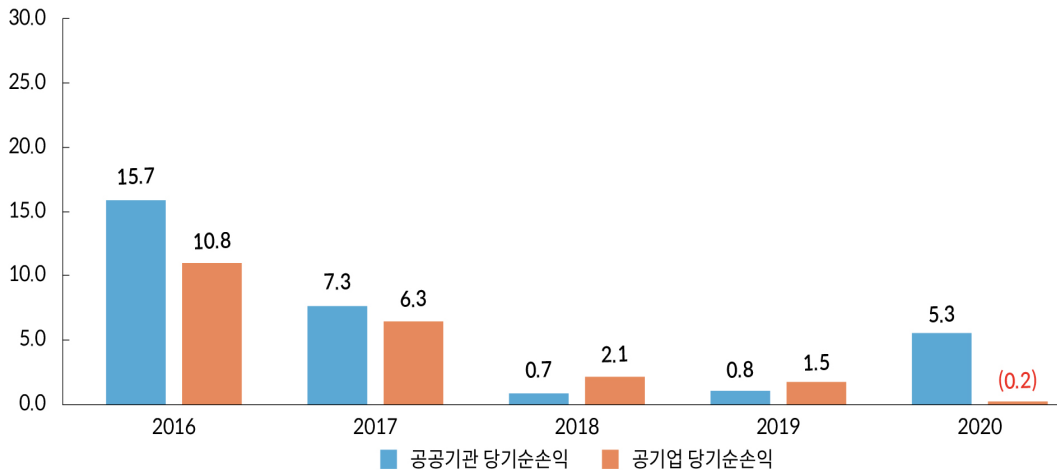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2020년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

- 2020년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인데 반해 36개 공기업군은 1,7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²⁾하였음
- 2020년 공기업 36개 중 18개의 기관이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석유공사(2조 4,392억원), (구)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 1조 2,380억원)는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초과함

[2016~2020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당기순손익 비교]

(단위: 조원)



주: 공공기관 재무정보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개 기관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자본잠식 수준이 확대되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2020년에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2.4조원)이며, 2021년 9월에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자체수입 창출 및 채무 상환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36개 공기업군 내 모회사 및 연결 대상 자회사가 있는 경우 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은 각 기관의 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단순 합산하였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 표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상이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본잠식 기관의 부채 및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순손익					부채	
	2018 (a)	2019 (b)	2020 (c)	증감 (b-a)	증감 (c-b)	2020	2019 대비 증감
한국석유공사	△11,595	△1,548	△24,392	10,048	△22,844	186,449	5,140
(구)한국광물자원공사	△6,861	△5,638	△13,543	1,223	△7,905	67,535	3,402
대한석탄공사	△823	△1,221	△1,147	△397	74	21,058	1,244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4개의 공공기관은 2019년 총 6,033억원의 정부 배당 및 기금 납입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1년에는 이를 미실시함
- 각 기관의 매출은 이용객 수와 연동되어 있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4개 기관 모두 2020년 당기순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2021년 정부 배당 등을 실시하지 못함

[2016~2020년 배당 등 정부수입]

(단위: 억원)

기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국제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9,650	11,164	11,181	8,660	△4,268
	배당액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3,473	4,725	3,755	3,994	-
한국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1,902	1,898	1,260	190	△1,481
	배당액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318	328	166	195	-
		일반회계	341	351	178	208	-
		합계	659	679	344	403	-
한국마사회	당기순이익		230,012	222,689	182,757	144,900	△436,828
	기금납입	축산발전기금	1,596	1,655	1,273	938	-
강원랜드	당기순이익		4,550	4,371	2,973	3,356	△2,788
	배당액	한국광해관리공단	768	768	698	698	-
배당 합계			6,496	7,827	6,070	6,033	-

주: 배당은 당해연도의 당기순이익 발생액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지급됨

자료: 각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별도)의 2020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1조 9,515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부채는 2019년 대비 1조 4,213억원 증가하였으나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비율은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의 2020년 영업수익은 2019년 대비 9,437억원 감소하였으나, 전력 구입비, 해외사업비용 등의 영업비용이 더 크게 감소(6조 5,772억원 감소)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5조 6,334억원, 당기순손익이 4조 5,465억원 증가함
-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에서 2020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이는 SMP 단가, REC 정산 단가 등이 전년 대비 하락하여 발전자회사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감소폭이 적어 2020년 발전자회사의 원가율이 상승한 것에 기인함
 -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20년의 부채비율은 253%로 가장 높고 2019년 대비 부채비율 증가분도 12.2%p로 높은 수준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당기순손익					부채		부채비율	
	2018 (a)	2019 (b)	2020 (c)	증감 (c-a)	증감 (c-b)	2020	2019 대비 증감	2020	2019 대비 증감
한국전력공사(연결)	△11,745	△22,635	20,925	32,670	43,560	1,324,753	37,671	(188)	(0.6)
한국전력공사(별도)	△10,952	△25,950	19,515	30,467	45,465	597,720	14,213	(112)	(△1.3)
한국수력원자력(주)	△1,020	2,465	6,179	7,199	3,714	360,784	20,016	(138)	(4.9)
한국중부발전(주)	△188	△58	△27	130	31	96,265	3,710	(253)	(12.2)
한국동서발전(주)	△81	1,415	△442	△361	△1,857	50,583	△525	(107)	(0.2)
한국서부발전(주)	△348	△466	△859	△511	△393	66,016	△427	(177)	(3.8)
한국남부발전(주)	951	△342	△74	△1,025	268	67,283	△1,949	(157)	(△2.5)
한국남동발전(주)	297	326	△1,448	△1,745	△1,774	66,048	2,057	(135)	(8.5)

주: 1. 한국전력공사(연결)은 한국전력공사(별도) 및 그 자회사를 합한 후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2.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현황은 각 회사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2012년부터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총 40개임
- 2010년대 초반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³⁾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⁵⁾에 따른 것으로, 2021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공기업과 16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40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함

3)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현황

요건	개수	공공기관
자산 2조원 이상	총 38개	- 공기업: 2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 준정부기관: 1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손실보전	총 2개	대한석탄공사(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1. 8.

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0개 기관의 2020년 말 부채는 512.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544.8조원의 94.0%로 대부분을 차지⁶⁾하며, 이들 기관의 총 부채비율⁷⁾은 161.1%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152.4%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⁸⁾등에 힘입어 2013년 이후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됨
- 40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2016~2020년간의 당기순이익 또한 0.4~14.9조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6) 기획재정부는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무결산 결과는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현황 집계 시 제외하고 있음

7)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3.12.11.

- 전체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6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증가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C)	2020 (D)	증감 (D-C)
전체 공공기관(347개) ¹⁾	부채규모(A)	500.3	495.1	503.4	526.9	544.8	17.9
	부채비율	167.2	157.3	155.0	157.8	152.4	△5.4
	당기순이익	15.7	7.3	0.7	0.8	5.3	4.5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40개)	부채규모(B)	476.3	472.8	479.6	499.8	512.1	12.3
	부채비율	176.7	166.7	165.9	167.9	161.1	△6.8
	당기순이익	14.9	6.6	0.4	0.6	2.9	2.3
비중(B/A)		95.3	95.5	95.3	94.9	94.0	-

주: 1)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2021년 8월 현재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BIS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2021. 8.

- 40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2021~2025년 중장기 재무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 자산 전망치는 2021년 추정치 대비 154.0조원 증가하고, 부채는 동 기간 동안 89.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년도 2020~2024년 계획과 비교했을 때, 2021~2025년 계획상 부채규모가 증가하였는데 부동산 대책 등 신규정책 소요 반영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반해 전체 부채비율은 실적 개선으로 인해 낮아진 바 있음
- 자본은 상기 기간 동안 64.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5년의 부채비율은 당기순이익 회복 전망에 따라 2021년 대비 4.9%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의 당기순이익은 0.7조원으로 2020년(2.9조원) 대비 2.2조원 감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년 유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

[2021~2025년 40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실적) (A)	2021 (B)	증감 (B-A)	2022	2023	2024	2025 (C)	증감 (C-B)
자산	830.0	877.8	47.8	924.7	962.7	995.1	1,031.8	154.0
부채	512.1	549.6	37.5	585.3	606.9	623.4	638.9	89.3
(부채비율)	(161.1)	(167.5)	(6.4)	(172.5)	(170.6)	(167.7)	(162.6)	(△4.9)
자본	317.9	328.2	10.3	339.4	355.8	371.7	392.9	64.7
당기순이익	2.9	0.7	△2.2	3.0	6.7	7.8	10.3	2.5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2021. 8.

- 2021~2025년 동안 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증가분(89.3조원)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SOC분야(66.8조원 증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21~2025년 동안 51.9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투입에 기인함
 - 에너지분야 기관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부채규모는 16.4조원 증가하나, 당기순이익이 6.4조원 증가 및 부채비율이 6.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2021~2025년 분야별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실적)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전체 (40개)	부채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부채비율	161.1	167.5	172.5	170.6	167.7	162.6	△4.9
SOC (10개)	부채	222.3	240.4	267.0	286.7	295.5	307.2	66.8
	부채비율	173.3	177.6	186.5	190.6	186.4	183.3	5.7
에너지 (12개)	부채	192.4	205.3	210.3	210.1	217.4	221.7	16.4
	부채비율	259.6	297.7	302.0	287.3	294.4	291.5	△6.2
금융 (13개)	부채	85.2	90.7	94.1	95.9	97.0	96.8	6.1
	부채비율	82.0	80.7	82.1	80.1	76.8	71.4	△9.3
기타 (5개)	부채	12.2	13.2	13.9	14.2	13.5	13.2	0.0
	부채비율	105.1	115.8	116.0	113.6	103.8	96.6	△19.2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2021. 8.

■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에너지분야 전체의 2021년 대비 2025년의 부채비율은 5.7% 증가할 예정임

- 에너지분야에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들 중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중부발전은 2021~2025년 간 지속적으로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소(△34.8%p)시킬 예정임
 - 한국서부발전은 2022년부터, 한국남부발전은 2024년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소 건설, 신재생 및 해외사업 투자 증가에 기인함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에너지 분야 기관별 부채비율]

(단위: %, %p)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에너지 분야	한국전력공사	135.4	144.9	146.3	156.4	159.9	24.5
	한국수력원자력	142.3	145.6	145.6	145.3	142.2	△0.1
	한국중부발전	275.6	268.2	259.0	247.6	240.8	△34.8
	한국서부발전	193.1	214.9	223.2	224.5	227.0	33.9
	한국동서발전	115.6	126.3	134.7	142.5	151.3	35.7
	한국남부발전	179.1	185.9	193.8	208.4	222.3	43.2
	한국남동발전	154.3	169.9	170.2	181.9	185.5	31.2
	한국가스공사	369.2	309.6	295.4	285.0	267.6	△101.6
	한국석유공사 ¹⁾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255.7	285.4	228.3	223.7	215.6	△40.1
	한국광물자원공사 ¹⁾	-	-	-	-	-	-
	대한석탄공사 ¹⁾	-	-	-	-	-	-
에너지 분야 전체		177.6	186.5	190.6	186.4	183.3	5.7

주: 1. 40개 기관 전체 수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1) 자본잠식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작성

3. 정부출자 공공기관

가.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1년 12월 기준 10개 부처 34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0개임
- 준정부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임
-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88관광개발주식회사 등 8개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20)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준정부기관(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기타공공기관 (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합 계			34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정부가 출자 중인 비공공기관은 서울신문사(정부지분율 30.5%), 대한송유관공사(9.8%), 공항철도주식회사(40.0%), 한국방송공사(100%), 한국교육방송공사(100%) 등 5개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35조 5,284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3조 9,285억원), 한국산업은행(21조 8,866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7,727억원), 한국석유공사(10조 6,234억원)의 순임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억원)

순위	공공기관명	정부출자액	순위	공공기관명	정부출자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355,284	6	한국수자원공사	91,957
2	한국도로공사	339,285	7	한국수출입은행	87,628
3	한국산업은행	218,866	8	인천국제공항공사	36,178
4	한국철도공사	107,727	9	부산항만공사	28,790
5	한국석유공사	106,234	10	중소기업은행	23,722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정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에 89조 6,99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3조 4,607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169억원 등 10개 부처 소관 34개 공공기관에 157조 6,180억원을 출자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35조 5,284억원), 한국도로공사(33조 9,285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7,727억원) 등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을 차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10조 6,234억원)가,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음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이 21조 8,866억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8조 7,628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음
-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4,718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9조 1,957억원의 정부출자를 받고 있음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토교통부 (9)	한국토지주택공사	399,994	355,284	88.8
	한국도로공사	386,561	339,285	87.8
	한국철도공사	107,727	107,727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36,178	36,178	100.0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주택도시보증공사	34,442	19,913	70.3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새만금개발공사	13,970	13,970	100.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936	2,050	52.1
	소 계	1,006,476	896,992	89.1
산업통상자원부 (7)	한국석유공사	106,234	106,234	100.0
	한국광해광업공단	20,000	19,973	99.9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대한석탄공사	601	601	1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 계	164,678	134,607	81.7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해양수산부 (5)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한국해양진흥공사	29,493	15,800	53.6
	소 계	103,073	76,169	73.9
금융위원회 (4)	한국산업은행	218,866	218,866	100.0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한국주택금융공사	20,616	14,166	68.7
	한국자산관리공사	16,119	12,407	77.0
	소 계	297,715	269,161	90.4
기획재정부 (3)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한국수출입은행	127,483	87,628	68.7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 계	128,549	88,694	69.0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농어촌공사	14,718	14,718	1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683	100.0
	소 계	15,401	15,401	100.0
문화체육관광부(1)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환경부(1)	한국수자원공사	98,041	91,957	93.8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전체 합계 (34)		1,817,277	1,576,180	86.7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주식 등 소각으로 인해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금액 비율과 정부 지분율 간 일부 차이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 2021년 말 기준으로 3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57조 6,180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117조 422억원으로 74.3%를 차지함
- 은행형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36조 3,055억원(23.0%)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으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출자액이 4조 2,704억원으로 2.7%에 해당함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출자금액은 전년 대비 8조 6,586억원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전년 대비 3조 6,725억원 증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1조 6,981억원 증가하였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은 1조 1,209억원 증가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단위: 억원, %, %p)

유형별	납입자본금(a)			정부출자금액(b)			비중(b/a)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2020	2021	증감
공기업	1,260,076	1,327,386 (73.0)	67,310	1,107,733	1,170,422 (74.3)	62,689	87.9	88.2	0.3
준정부기관	45,691	53,011 (2.9)	7,320	35,384	42,704 (2.7)	7,320	77.4	80.6	3.1
기타 공공기관	418,060	436,881 (24.0)	18,821	346,477	363,055 (23.0)	16,578	82.9	83.1	0.2
합 계	1,723,827	1,817,277	93,450	1,489,594	1,576,180	86,586	86.4	86.7	0.3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괄호 안은 전체 금액 대비 공공기관 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18.2~100%로 다양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곳은 13개, 50~99%를 출자하고 있는 곳은 17개, 5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는 곳은 4개 기관임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단위: 개, %)

정부지분율	공공기관명	개수
100%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투자공사	13
50~99%	한국광해광업공단(99.9%), 한국공항공사(95.6%), 한국수자원공사(93.8%), 한국도로공사(87.8%), 한국토지주택공사(88.8%), 부산항만공사(87.3%), 울산항만공사(87.3%), 인천항만공사(80.7%), 여수광양항만공사(71.2%), 주택도시보증공사(70.3%), 한국수출입은행(68.7%), 한국주택금융공사(68.7%), 한국자산관리공사(77.0%), 중소기업은행(59.5%), 한국관광공사(55.2%), 한국해양진흥공사(53.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52.1%)	17
50% 미만	한국부동산원(49.4%), 한국지역난방공사(34.5%), 한국가스공사(26.2%), 한국전력공사(18.2%)	4
합 계		34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한국거래소 상장 현황

-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
 - 한국전력공사는 1989년 8월 10일, 한국가스공사는 1999년 12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 1월 29일, 중소기업은행은 2003년 12월 24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
 - 2021년 12월 30일 종가는 한국전력공사가 22,100원, 한국가스공사가 39,100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8,750원, 중소기업은행이 10,300원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4개 기관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한국거래소 상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단위: 원)

공공기관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한국거래소 상장일자	2021.12.30. 종가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1989. 8. 10.	22,100
		한국가스공사	1999. 12. 15.	39,100
		한국지역난방공사	2010. 1. 29.	38,750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2003. 12. 24.	10,300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다.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 기관별 정부배당액 현황

- 최근 5년 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액은 총 7조 6,258억원이며,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부터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은 1조 4,343억원이며, 전년 대비 310억원 증가
- 배당액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순으로 정부배당액이 많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5년 동안 정부배당액은 2조 1,535억원으로 34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동안 1조 5,947억원을 정부에 배당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에 각각 3,994억원과 404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지 못함
 - 34개 정부 출자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은 경영악화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결손 등으로 2020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함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정부배당 현황(기관별)]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3,764	4,681	3,325	3,920	5,845	21,535
인천국제공항공사	3,473	4,725	3,755	3,994	0	15,947
중소기업은행	1,608	2,067	1,872	1,662	2,208	9,417
한국산업은행	0	1,471	1,449	1,120	2,096	6,136
주택도시보증공사	1,352	1,025	1,229	707	616	4,929
한국전력공사	2,313	923	0	0	1,421	4,657
한국주택금융공사	584	572	565	0	425	2,146
한국공항공사	660	679	344	404	0	2,087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한국수출입은행	0	395	415	724	277	1,811
한국투자공사	176	267	262	367	580	1,652
한국도로공사	316	388	260	334	120	1,418
부산항만공사	339	221	143	201	238	1,142
한국자산관리공사	205	91	145	139	142	722
한국농어촌공사	386	94	0	165	9	654
울산항만공사	94	115	95	107	77	488
한국가스공사	0	0	328	92	0	420
인천항만공사	33	50	56	21	213	373
한국지역난방공사	152	113	0	0	39	304
한국조폐공사	23	41	37	39	0	140
무역투자진흥공사	10	0	43	11	25	89
한국부동산원	27	19	18	13	10	8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23	29	13	2	80
한국관광공사	0	23	0	0	0	23
88관광개발(주)	0	0	0.5	0	0.2	1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0	0	0	0	0	0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0	0	0	0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0	0	0
한국해양진흥공사	-	-	설립	0	0	0
새만금개발공사	-	-	설립	0	0	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설립	0	0	0
합 계	15,528	17,983	14,371	14,033	14,343	76,258

주: 1. 상기 연도는 해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수령은 익년도에 발생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6~2020년 간의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부처별 정부배당액 현황

- 국토교통부 소관 출자기관의 정부배당액은 최근 5년 간 4조 6,003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정부배당액의 60.3%를 차지
-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의 5년간 누적 배당액은 1조 8,421억원으로 전체 배당액의 24.2%를 차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정부배당 현황(부처별)]

(단위: 억원, %)

부처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금액	비중
국토교통부	9,592	11,517	8,931	9,372	6,591	46,003	60.3
금융위원회	2,397	4,201	4,031	2,921	4,871	18,421	24.2
산업통상자원부	2,475	1,036	371	103	1,485	5,470	7.2
기획재정부	199	703	714	1,130	857	3,603	4.7
해양수산부	466	386	294	329	528	2,003	2.6
농림축산식품부	399	117	29	178	11	734	1.0
문화체육관광부	0	23	0	0	0	23	0.03
국가보훈처	0	0	1	0	0	1	0.001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0	0	0.0
환경부	0	0	0	0	0	0	0.0
총 합계	15,528	17,983	14,371	14,033	14,343	76,258	100.0

주: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수령은 익년도에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정부출자 공공기관 배당성향

■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2020년 평균 배당성향은 39.73%로 전년에 비해 6.05%p 상승

-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
- 2020년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공사가 60%로 전체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으며, 울산항만공사(59.90%), 부산항만공사(59.80%) 순으로 높음
 - 한국투자공사의 배당성향은 점차 낮아져 2016~2017년까지는 80%, 2018년에 70%를 배당하였고 2019년이후에는 60%를 배당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조폐공사는 2016~2019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나타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되어 배당 미 실시

[정부출자 공공기관 배당성향]

(단위: %)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투자공사	80.00	80.00	70.00	60.00	60.00
울산항만공사	34.50	38.09	37.82	41.01	59.90
부산항만공사	31.75	32.32	26.18	38.50	59.80
88관광개발(주)	30.37	31.91	34.82	-	59.65
한국도로공사	27.56	33.36	25.24	38.99	44.47
한국산업은행	-	33.83	5.77	25.12	43.00
한국부동산원	39.24	43.35	42.06	42.16	40.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50	-	46.32	20.00	4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50	38.66	35.75	40.67	40.00
한국전력공사	29.82	33.66	-	-	40.00
한국지역난방공사	34.73	46.73	-	-	40.00
한국자산관리공사	32.97	37.57	34.90	38.93	39.97
한국수출입은행	-	34.49	10.49	36.16	39.80
한국주택금융공사	32.25	32.19	27.03	0.00	33.46
인천항만공사	28.25	30.25	35.07	20.79	30.00
중소기업은행	30.76	30.89	24.34	22.88	29.52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주택도시보증공사	34.19	21.58	28.41	21.81	24.99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	20.00	18.76	20.00	20.00
한국농어촌공사	22.71	34.00	-	38.95	10.30
인천국제공항공사	35.99	42.32	33.59	46.12	-
한국공항공사	34.71	35.77	27.76	39.97	-
한국조폐공사	37.75	45.36	45.60	40.75	-
한국가스공사	-	-	39.04	40.80	-
한국관광공사	-	45.21	-	-	-
대한석탄공사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한국석유공사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	설립	-	-
새만금개발공사	-	-	설립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설립	-	-
평 균	34.23	37.34	32.45	33.68	39.73

주: 1. 평균 배당성향은 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을 실시한 기관의 산술평균임

2.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3년 5개 기관에서 2017년 2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는 15개 기관 수준임

-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확대정책에 따라 2014년에는 11개 기관, 2017년에는 20개 기관이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2018년에는 11개 기관, 2019년에는 13개 기관으로 그 수가 줄어들다가 2020년에는 15개 기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배당성향 30% 이상인 정부출자 공공기관]

(단위: 개)

연도	개수	정부출자 공공기관
2013	5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4	11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5	10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2016	15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17	20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수출입은행
2018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투자공사
2019	13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0	15	한국투자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부동산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항만공사

주: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수령은 익년도에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투자공사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한 고유계정 금융자산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 위탁수수료를 받는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또한 증가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의 수수료 수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금융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수료 수익	1,650	2,006	2,098	2,640	3,218
당기순이익	220	333	374	611	967
이익잉여금	922	988	1,100	1,344	1,731
금융자산(고유계정)	1,903	2,049	2,163	2,280	2,691

주: 상기 이익잉여금은 각 연도별 배당금 차감 후의 이익잉여금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과다한 고유자산 적립 필요성이 낮음. 따라서 적정 규모 이상의 고유자산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 등 고유계정 금융자산의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pp 56~61.

(4) 최근 5년 간 배당 미 실시 기관

- 2018년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제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최근 5년 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액은 총 34조 545억원임
-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9조 1,957억원, 한국석유공사에 10조 6,234억원 등 이들 기관에 총 34조 545억원 출자

[최근 5년 간 미배당 기관 및 정부출자액]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정부출자액	배당액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한석탄공사	601	0	0	0	0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91,957	0	0	0	0	0
한국석유공사	106,234	0	0	0	0	0
한국광해광업공단	19,973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107,727	0	0	0	0	0
여수광양항만공사	11,053	0	0	0	0	0
합 계	340,545	0	0	0	0	0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6~2020년간의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7개 기관은 2020년 말 현재 경영 악화에 따른 결손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20년 말 기준 결손금은 13조 1,002억원으로 2016년 대비 4조 9,281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손금은 2조 4,407억원, 한국철도공사의 결손금은 2조 1,250억원 증가
-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손금은 2016년 1조 803억원에서 2020년 2,512억원으로 8,291억원 감소하였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결손금도 2016년 1,634억원에서 2020년 1,254억원으로 380억원 감소하였음

[최근 5년 간 배당 미 실시 기관의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공공기관명	이익잉여금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대한석탄공사	△12,666	△15,474	△14,253	△15,474	△12,663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0	△118	△105	△240	△85	△35
한국수자원공사	△10,803	△9,170	△7,221	△6,063	△2,512	8,291
한국석유공사	△81,721	△81,721	△86,274	△93,933	△131,002	△49,281
한국광물자원공사 (현, 한국광해광업공단)	△26,990	△28,604	△32,305	△34,992	△51,397	△24,407
한국철도공사	△84,761	△9,299	△94,330	△95,603	△106,011	△21,250
여수광양항만공사	△1,634	△1,536	△1,452	△1,364	△1,254	380
합 계	△218,625	△145,922	△235,940	△247,669	△304,924	△86,299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6~2020년간의 이월결손금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현황임

자료: 각 기관 연도별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미배당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1~2016년 동안 총 7조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장부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 6.3조원을 비용(손상차손)으로 인식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의 손상차손 인식 결과, 2014년에 3.5조원이던 이익잉여금이 2015년에 음(-)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잉여금 및 연도별 배당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익잉여금	32,815	35,130	△23,849	△10,803	△9,170	△7,221	△6,063	△2,512
배당액	649	790	0	0	0	0	0	0

주: 배당액은 정부배당과 정부외배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가.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됨
 - 2020년도 평가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6개의 공기업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95개 준정부기관임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18년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 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함
 - LH의 부동산투기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가점을 부여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유도함
 -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제의 도입 노력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 2019년도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체 5개 기관이었으나, 2020년도 18개 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른 기관으로 직무급제가 확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020년도 공기업(36개)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과 달리 한국마사회 1개 기관이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음
 - 평가 대상 36개 공기업 중 종합 등급 우수(A)는 6개(16.7%), 양호(B) 16개(44.4%), 보통(C) 10개(27.8%), 미흡(D) 3개(8.3%), 아주미흡(E) 1개(2.8%) 기관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16~'20)]

(단위: 개)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2016	30	0	6	16	10	3	1
2017	35	0	5	13	11	4	2
2018	35	0	6	15	9	4	1
2019	36	0	6	14	13	3	0
2020	36	0	6	16	10	3	1

자료: 각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재구성하여 재작성

- 2020년도 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95개)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의 경우 양호 이상의 기관의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평가 대상 95개 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 중 종합 등급 우수(A)는 17개(17.9%), 양호(B) 33개(34.7%), 보통(C) 30개(31.6%), 미흡(D) 14개(14.7%), 아주미흡(E) 1개(1.1%) 기관임

[준정부기관·강소형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16~'20)]

(단위: 개)

기관 유형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위탁집행 · 기금관리	2016	32	0	3	16	9	3	1
	2017	48	0	8	18	16	3	3
	2018	50	0	9	17	18	6	0
	2019	50	0	10	21	12	6	1
	2020	54	0	11	18	18	6	1
강소형 기관	2016	57	0	9	17	24	5	2
	2017	40	0	4	14	17	2	3
	2018	43	0	5	19	13	6	0
	2019	43	0	5	16	15	7	0
	2020	41	0	6	15	12	8	0
전 체	2016	89	0	12	33	33	8	3
	2017	88	0	12	32	33	5	6
	2018	93	0	14	36	31	12	0
	2019	93	0	15	37	27	13	1
	2020	95	0	17	33	30	14	1

주: 2020년도의 경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2021.6.25.)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
 자료: 각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재구성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호등급 이상(A, B)은 공기업이 61.6%로 타 유형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미흡등급 이하(D, E) 기관은 타 유형 대비 강소형 기관(19.5%)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음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류 발생

- 2021년 6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된 이후,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등급 및 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됨
- 평가단, 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집계 처리 과정에 대한 오류를 재점검한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 및 단순 입력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총 24개 기관에 대한 등급이 조정됨
- 그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되고,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이 수정되면서,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이 함께 수정됨

[평가 결과 재 산정에 따른 종합등급 수정 기관 및 후속조치 변경 내역]

기관명(유형)		종합등급		후속조치 변경 내용
		당초	수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B	C	-
	국민건강보험공단	A	B	-
	한국가스안전공사	D	C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 제외
	한국산업인력공단	D	C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 제외
	한국연구재단	B	A	-
강소형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C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C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	C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 제외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 제외
	한국과학창의재단	C	D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E	D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2021. 6. 25.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중간보고서 이의제기 시 제한적 범위에서의 의견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사전 오류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힘
- 해당 사고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힘

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기관장 해임이 건의되었으며, 실적부진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이 건의됨

[실적부진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E등급(1)	우체국물류지원단
2년 연속 D등급(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주: 1.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송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라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됨
 2.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4개 기관 유형은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1.6.18.을 바탕으로 재구성

- 실적부진 기관: 기관평가 결과 미흡이하(D, E)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5명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실적 부진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 기관]

(단위: 개)

유형	기관명
공기업(1)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3)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소형(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1.6.18.을 바탕으로 재구성

- 중대재해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 기관]

(단위: 개)

유형	기관명
공기업(7)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1)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1.6.18.을 바탕으로 재구성

5.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가. 2021년 공공기관 감사(위원회) 현황

- 2021년도 전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감사·감사위원회제도 운영 여부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라 15개 기관 모두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 특성에 따라 8개 기관이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감사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13개 기관(상임 11, 비상임 2)으로 나타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모두 감사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관리형의 경우 전체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체 81개 기관 중 상임감사를 선임한 기관은 22개 기관임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감사위원회제도 운영 현황]

(단위: 개)

유형	감사위원회	감사제도		전체
		상임	비상임	
시장형 공기업	15	0	0	15
준시장형 공기업	8	11	2	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0	12	1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0	22	59	81
합 계	23	45	62	130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공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회제도 채택 여부(비상임 감사기관 제외), 「항만법」에 따른 3개 항만공사, 6개월 미만 감사, 감사인 부재 등의 기관을 제외하면 2021년도 기준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63개 기관임

[2021년 감사·감사위원회 직무수행실적 평가 대상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감사위원회	13	10	0	0	23
상임감사	0	6	12	22	40
합 계	13	16	12	22	63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더불어 상임감사 혹은 감사위원이 평가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종래 2년에 1회였던 감사평가를 1년에 1회로 변경하여, 감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평가를 실시함
- 2022년도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실적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은 55개 기관으로 나타남

[2019~2021년 연속 감사·감사위원회 직무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 현황]

(단위: 개)

시장형 공기업(15)	준시장형 공기업(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전체(130)
12	15	10	18	55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2021년도 12월 기준 평가대상인 63개 기관 감사인의 평균 재임기간은 20.3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대상 중 연임된 감사인은 총 19명으로 나타남
-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감사인이 평균 27.9개월로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9명이 연임으로 감사인의 연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운법」 제28조에 의해 감사·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2021년도 12월 기준 평가대상 감사인 재임 기간 현황]

(단위: 개월, 개)

기관유형	평균	최솟값	최댓값	연임여부	평가대상 기관(수)
시장형 공기업	27.9	6	42	9	13
준시장형 공기업	16.3	6	37	4	1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2	6	38	3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8.9	6	41	3	22
합 계	20.3	6	42	19	63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나. 2020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2020년 평가대상 59개 기관에 대한 상임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이며, 탁월(S) 및 아주 미흡(E)으로 평가 받은 기관은 없음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급별 분포('19~'20)]

(단위: 개, %)

	유형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0	공기업	29	-	5(17.2)	15(51.7)	6(20.7)	3(10.3)	-
	준정부기관	30	-	2(6.7)	12(40.0)	15(50.0)	1(3.3)	-
	합 계	59	-	7(11.9)	27(45.8)	21(35.6)	4(6.8)	-
'19	공기업	31	-	7(22.6)	17(54.8)	5(16.1)	2(6.5)	-
	준정부기관	31	-	4(12.9)	12(38.7)	11(35.5)	4(12.9)	-
	합 계	62	-	11(17.7)	29(46.8)	16(25.8)	6(9.7)	-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재구성

- 2020년도 감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인 4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 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 나머지 1개 기관의 경우, 평가 결과 발표 시점에 기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제외됨

[2020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결과 미흡(D) 기관]

(단위: 개)

기관 유형	기관명
공기업(3)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1)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재구성

2021년도 평가 대상 감사인의 임기만료

- 2021년도 평가대상인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2022년 6월에 공개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감사인의 임기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음
- 평가 대상인 63개 기관의 감사인 중 2021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은 총 24명(38.1%)이며, 임기를 유지하는 감사인은 39명(61.9%)임
 - 단, 연임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임

[2020년도 평가 대상 감사인 평가결과 발표 시 임기유지 여부]

(단위: 개, %)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임기만료	8(61.5)	3(18.8)	4(33.3)	9(40.9)	24(38.1)
임기유지	5(38.5)	13(81.2)	8(66.7)	13(59.1)	39(61.9)
합계	13(100.0)	16(100.0)	12(100.0)	22(100.0)	63(100.0)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감사인에 대한 직무실적 평가는 내부통제를 내실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 윤리성의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해당 감사인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감사이사의 여성 비율

- 공공기관의 감사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차이는 상주하는 감사인과 비상주 감사인으로 역할의 차이는 없음

[공공기관 감사이사(상임·비상임)의 여성 비율 현황('17~'21)]

(단위: 명, %)

유형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형 공기업	여성 상임감사	0(0.0)	0(0.0)	0(0.0)	0(0.0)	1(7.7)
	상임감사 현원	11	12	13	13	13
	여성 비상임감사	2(6.1)	6(18.2)	10(31.3)	11(34.4)	11(34.4)
	비상임감사 현원	33	33	32	32	32
준시장형 공기업	여성 상임감사	0(0.0)	0(0.0)	0(0.0)	0(0.0)	2(10.5)
	상임감사 현원	16	17	16	17	19
	여성 비상임감사	0(0.0)	1(5.9)	4(22.2)	4(22.2)	5(29.4)
	비상임감사 현원	17	17	18	18	1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성 상임감사	0(0.0)	2(16.7)	2(16.7)	1(9.1)	0(0.0)
	상임감사 현원	12	12	12	11	12
	여성 비상임감사	0(0.0)	0(0.0)	0(0.0)	0(0.0)	1(100.0)
	비상임감사 현원	1	1	1	1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여성 상임감사	2(9.5)	1(5.3)	2(9.5)	2(9.1)	0(0.0)
	상임감사 현원	21	19	21	22	22
	여성 비상임감사	5(8.5)	10(16.1)	10(16.7)	14(23.3)	13(22.0)
	비상임감사 현원	59	62	60	60	59
전체	여성 상임감사	2(3.3)	3(5.0)	4(6.5)	3(4.8)	3(4.5)
	상임감사 현원	60	60	62	63	66
	여성 비상임감사	7(6.4)	17(15.0)	24(21.6)	29(26.1)	30(27.5)
	비상임감사 현원	110	113	111	111	109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도 12월 기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인인 총 66명으로 이 중 3명이 여성으로 약 4.5%의 비율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전체 상임감사 19명 중에 여성은 2명으로 1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장형 공기업의 전체 13명 중 1명이 여성 상임감사로 7.7%를 차지함
- 2021년도 12월 기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감사인인 총 109명으로 이중 30명 약 2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도 기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감사는 전체 1명 중 1명이 여성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이 32명의 비상임감사 중 11명의 감사가 여성으로 34.4%를 나타내고 있음



공공기관 유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수지차 보전기관

가.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한다)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한 후 나머지 지출금액을 정부로부터 출연 혹은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매년 심의를 통해 수지차 지정기준에 벗어난 기관을 제외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규로 지정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제외 기준]

구분	내용
지정기준	① 기관의 자체수입이 존재하는 공공기관 ② 출연·보조의 법적근거가 있는 공공기관 ③ 매년 인건비·경상경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공공기관 ④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지정제외 기준	① 자체수입이 없는 공공기관 ② 사업의 수입만 있는 기관 ③ 자체수입 규모나 비중이 적은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 요건 및 정부예산 지원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자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경 대상 공공기관에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체수입 산정, 결산잉여금 처분, 인건비, 경상비 등의 편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작성지침을 제공함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요약)]

구분	내용
공통사항	○ 기관은 예산 요구서 작성 시 기관의 전체 수입,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지차 미대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입, 지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지차 보전 출연금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 초과액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편성함
자체수입	○ 기관의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결산잉여금 등을 세부 내역까지 면밀하게 추계하여 수입항목에 반영 ○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기관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은 차년도 수입으로 반영
결산잉여금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차년도 수입(전기이월금)에 반영 ○ 결산잉여금의 임의처분 기관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금액만큼 수지차 보전액이 감액 조정됨
인건비 및 경상비	○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증가 최소화 ○ 인건비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 ○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기관별 필수 소요만 별도로 검토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 「수지차보전기관 2022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특별한 노력 등으로 기관의 자체수입 (요구액 기준)¹⁾이 전년도 예산액(국회 확정액 기준) 대비 증가한 경우 인센티브로 수입증가분의 50%를 지급받게 됨
- 기관은 실행예산 편성 시 인건비, 경비, 사업비 이외의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결산 결과 당초 계획한 수입목표를 달성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기관운영 적립금에 적립해야 함

1) 결산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기관임의보유금 중 수입계상분, 출연·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을 의미함

- 2021년 12월 말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 중 제도개선 등의 특별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음

[기관운영 적립금의 용도]

-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연도 중 지출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출 소요
- 기관 청사 확보를 위한 건설비, 부지매입비,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취득 소요 등 자본적 지출 및 경상비
- 인건비, 신규 사업에의 사용은 금지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1, 「수지차보전기관 2022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별 주요 자체수입(예시)

□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자체수입원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자체수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입장료, 교육수수료, 숙소사용료, 연구개발수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술사업화, 종자종묘, 분석검정수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인증조사, 컨설팅, 교육수입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검사수입, 기술컨설팅수입, 연구수입, 교육수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선박검사수수료, 기술수탁수입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기타공공기관	인증사업수입 등

주: 위 표에서 밑줄의 경우 근거법률에 의한 독점 수입임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립공원공단 등 39개 출연기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28개 보조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67개 기관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함
 - 2021년 대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항공안전기술원 3개의 공공기관과 한국물기술인증원 1개의 비공공기관이 추가로 지정됨
 - 수지차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은 62개이며, 나머지 5개 기관은 비공공기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이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28개, 기타공공기관 33개 등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총 62개 기관임
 -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5개 기관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물기술인증원²⁾임

[공공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소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출연	39	38	0	21	17	1
보조	28	24	1	7	16	4
합계	67	62	1	28	33	5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유형기준에 따라 구분됨

자료: 기획재정부

-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62개 공공기관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각각 6개임

2)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2년 신규로 추가된 기관임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고용노동부(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정거래위원회(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보훈처(1)	독립기념관
국방부(1)	전쟁기념사업회
국토교통부(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농촌진흥청(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9)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6)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림청(1)	한국임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5)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라북도물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여성가족부(1)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양수산부(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부(6)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정부가 2016년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 및 제외기준을 재정립한 이래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해제된 경우로는 9개 기관이 있음
 - 2016년 수지차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자체수입이 없거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임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경우 특정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제외 현황('16~'22)]

기관명	기관유형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제외 사유	제외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6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비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자격증 발급 수수료 3,000만원 외 자체수입 없음	201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기타공공기관	사업외 수입만 있음	2016
한국어촌어향협회	기타공공기관	자체수입 없음	2016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 예산 중 특정사업 예산만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제외됨	2016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법적 수익사업 부재 및 부처 내 공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함	2021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됨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동되었으며, 향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유지될지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임³⁾

3)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구분에서는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설(2021.9)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따라 2021년 9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음
 -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해 파산 위기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실질적인 파산을 막고 자원개발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통합 지원하고자 2021년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제정하였으며, 그해 9월 기관이 설립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예산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기 수행하던 정부 출연, 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구성된 고유계정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출연사업비율이 높은 해외자산계정으로 구분되어 편성됨
- 이때, 고유계정의 경우, 자체사업 수입이 계상됨에 따라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관 전체의 예산구조가 출연, 보조, 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예산 감축이라는 수지차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 2022년 수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
고유계정	정부지원사업	242,325
	자체사업	123,969
	자원개발사업	106,664
해외자산계정	자체사업	1,660,565
	해외자원개발사업	741,318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6년 이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지정된 기관은 2016년 15개 기관, 2018년도 1개 기관이며, 2022년도 4개 기관으로 총 20개 기관임
 - 신규지정된 20개 기관 중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19개 기관이며, 비공공기관은 한국물기술인증원 1개 기관임

[공공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지정 현황('16~'22)]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지정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사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기타공공기관	2016	입장료, 수탁사업수입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6	석연탄 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2016	입장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2016	이전부터 수지차 방식으로 예산지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2016	자체상품·위탁상품 판매 등 자체수입 존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16	이전부터 수지차 방식으로 예산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6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6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6	인증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공공기관	2016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6	인증조사 및 컨설팅 수입 존재
한국장기기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6	뇌사관리수입, 검사수입 존재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6	인체조직이식재분배 수입 존재
예술의 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2016	예술, 식음료, 주차 등 자체수입 존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2016	결산잉여금 관리 필요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	분석/검정 수수료 등 자체수입 존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2022	입장료, 교육수수료 등 자체수입 발생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2022	교육비 등 자체수입 발생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기타공공기관	2022	인증사업수입, 수탁연구사업수입 등 자체수입 발생

주: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017년 3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일부 조직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분리됨

다. 2022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 예산 현황

- 수지차 보전기관의 출연·보조 세부사업의 2022년도 총 예산은 2조 9,181억 700만원으로 2021년 예산 2조 9,418억 3,600만원 대비 237억 2,900만원 감소함
- 2022년 출연예산은 전년 대비 567억 9,100만원 감소한 2조 1,166억 5,300만원이며,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330억 6,200만원 증가한 8,014억 5,400만원임

[2022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2020결산	2021예산(A)	2022예산(B)	증감(B-A)
출연	38	2,025,234	2,173,444	2,116,653	△56,791
보조	24	704,471	768,392	801,454	33,062
합계	62	2,729,705	2,941,836	2,918,107	△23,729

주: 신설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연, 보조금의 경우 구 광해관리공단의 예·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분석」, p106.

-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출연·보조 예산이 가장 높게 편성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2,988억 7,000만원(보조)이 편성되었으며, 수지차 보전기관 중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예산 편성이 상위인 10개 기관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2 예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보조	298,87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221,895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218,642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177,964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140,41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137,938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95,161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2 예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77,567
국립생태원	환경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76,909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출연	73,852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지차 보전기관 운영 개선 방안

□ 자체수입 예·결산 규모의 합리적 산정 필요

- 일부 기관의 경우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결산 대비 예산이 과다 산정되고 있는 바, 기관 운영 및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수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전당, 한국잡월드, 전쟁기념사업회, 국립생태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7.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I」, pp 125~127.

□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중 자체 사업 수입이 없거나 혹은 비중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 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지차 지정요건에 해당하나 지정되지 않은 비수지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수입 재원이 사업의 수입인 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 **자체수입비중이 5%이하인 기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7.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pp 111~122.

□ 예산편성 시 수지차 방식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 필요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받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항공박물관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10.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pp 126~130.

□ 신규 기관의 수지차 예산 편성 지정 시 자체수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필요

- 기획재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적정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10.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pp 131~135.

2. 손실보전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임
-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2021년 12월 말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구)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등 15개 기관임
- 법률에서 이익적립금을 초과하는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을 강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임
- 법률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6개 기관임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내용]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 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은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 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29조 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주: 1)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설립되었으며, 2021년 1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나.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 현황

-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2020년 말 부채는 874조 9,863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86조 3,525억원 증가
 - 중소기업은행(+41조 1,394억원), 한국산업은행(+30조 2,444억원), 한국수출입은행(+4조 5,02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3조 1,65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 651억원) 등 대부분의 기관⁴⁾에서 2020년 부채가 2019년 대비 증가함
 - 2020년 말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은 결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20년도 이익잉여금은 2019년 대비 감소함
 -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손실보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경영실적 개선 등을 통해 기관들이 스스로 보전하지 않는 한 결국 장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손익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부채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			당기순이익 (재정운영결과)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a)	(b)	(b-a)	(c)	(d)	(d-c)	(e)	(f)	(f-e)
기술보증기금	12,784	14,207	1,423	△87,109	△82,410	4,699	△1,078	△184	8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44	1,369	125	119	206	87	54	63	9
대한석탄공사	19,813	21,058	1,244	△15,320	△12,144	3,176	△1,221	△1,147	74
신용보증기금	30,425	40,942	10,517	△104,355	△75,678	28,678	45	△3,385	△3,4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3,328	194,986	31,658	5,130	12,078	6,948	△2,414	△2,665	△251
주택도시보증공사	18,683	18,721	37	29,823	31,897	2,074	3,836	2,918	△918
(구)한국광물자원공사	64,133	67,535	3,402	△40,763	△53,802	△13,039	△5,638	△13,543	△7,905
한국무역보험공사	21,480	25,052	3,571	815	5,451	4,636	2,987	△1,155	△4,142

4) 15개 기관 중 한국장학재단(△4,321억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가 증가함

기관명		부채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			당기순이익 (재정운영결과)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a)	(b)	(b-a)	(c)	(d)	(d-c)	(e)	(f)	(f-e)
이 회 계	한국장학재단	111,959	107,638	△4,321	7,764	7,797	33	△263	33	296
	한국주택금융공사	72,837	81,244	8,407	65,387	64,099	△1,288	5,525	△1,651	△7,176
	한국토지주택공사	1,266,800	1,297,451	30,651	164,026	192,109	28,083	22,447	33,029	10,582
	한국해양진흥공사	20,695	38,648	17,953	△4,058	21,990	26,048	△1,674	26,045	27,719
	소계(A)	1,804,182	1,908,850	104,667	21,459	111,593	90,135	22,607	38,358	15,752
	중소기업은행	2,953,344	3,364,738	411,394	153,469	161,586	8,117	16,143	15,479	△663
	한국산업은행	2,337,626	2,640,070	302,444	106,588	123,471	16,883	2,791	19,613	16,822
	한국수출입은행	791,185	836,205	45,020	14,786	14,720	△66	4,347	981	△3,366
	소계(B)	6,082,155	6,841,013	758,858	274,843	299,777	24,934	23,281	36,074	12,792
	합 계 (A+B)	7,886,338	8,749,863	863,525	296,302	411,370	115,069	45,888	74,432	28,544

주: 1. 기금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되는데, 재정운영결과가 (+)임은 기금에 해당금액만큼의 최종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의 수치는 발생 비용에 비해 관련 부담금 등의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상기 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와 부호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재무정보와의 기준일치를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 부채를 제외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으로 작성함

3.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총량 증대로 대위변제준비비가 늘어 재정운영결과 손실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공공기관 알리오 통합공시 기준)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 2020년 말 현재 (구)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최근 3년(2018~2020)간 출연, 출자, 보조금 등의 지원 금액은 총 4조 4,791억원임
- 최근 3년 동안 정부는 (구)한국광물자원공사에 593억원, 대한석탄공사에 853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술보증기금에 6,513억원, 신용보증기금에 3조 6,832억원을 지원하였음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지원액(2018~2020)]

(단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정부 지원 유형	2018	2019	2020	합계 (2018~2020)
(구)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출자, 보조	272	148	174	593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출자	266	271	316	853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출연	600	1,030	4,883	6,513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출연	1,597	1,610	33,626	36,832
합 계			2,735	3,059	38,999	44,791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자본잠식⁵⁾ 현황

-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와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20년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자본잠식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구)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은 각각 1조 1,942억원, 3조 7,328억원으로 총 4조 9,270억원임
- 두 기관의 총 자본잠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조 7,530억원에서 2020년 4조 9,270억원으로 3조 1,740억원 증가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완전자본잠식인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대한석탄공사	△9,121	△9,585	△10,151	△11,109	△11,942	△2,821
(구)한국광물자원공사	△8,409	△12,823	△19,643	△24,792	△37,328	△28,920
합 계	△17,530	△22,408	△29,794	△35,901	△49,270	△31,74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 하며, 자본잠식이 지속되면서 자본총계가 음(-)(자산<부채)이 되는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 함. 상기에서는 완전자본잠식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음

3. 연구개발목적기관

가.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배경

- 2018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라 함) 제5조의 개정⁶⁾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⁶⁾
- 이에 따라 2019년 1월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중 총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여 지정한 이래,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총 75개 기관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신규 지정되어 전년대비 1개 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 현황]

(단위: 개)

구분	주요 기관	기관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2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 연구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28
합 계		75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연구기관의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분류·지정체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됨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기존 공공기관 분류·지정체계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정·운영되고 있음
- 한편,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기존 공공기관 분류·지정체계 내에서 별도의 분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음
- 이에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별도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사를 거쳐 기존의 기타공공기관 분류·지정체계 내에서 별도의 세부분류·지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됨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경과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예산집행·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예컨대, 출연연 연구비는 2002년부터 10년간 89.1%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의 인적 구성원 제한으로 인해 인력은 38.4% 증가에 그쳐 예산과 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함
 - 민영화나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 경영 선진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무리하게 기관 통폐합이 추진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함
- 이에 따라 2016년 국회에서 3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발 의 자	발의연월일	회부연월일
이상민의원 등 10인	2016. 6. 28.	2016. 6. 29.
오세정의원 등 12인	2016. 6. 30.	2016. 7. 1.
신용현의원 등 11인	2016. 7. 8.	2016. 7. 11.

자료: 국회의정자료시스템

- 이상민·오세정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등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다만 지정 제외 대상에서 오세정 의원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신용현 의원안은 기존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에 연구목적기관을 신설하되, 과학기술분야 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내용임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주 요 내 용	
공공기관 지정 제외기관	〈신설〉	[이상민의원안] - 과학기술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오세정의원안] - 과학기술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기관 - 기초과학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의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신용현의원안]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연구목적기관 - 연구목적기관 지정대상 - 과학기술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 정부출연기관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연구목적기관은 기능조정이나 경영혁신관련 조치시 기관성격·업무특성을 고려	

자료: 국회의정보자료시스템

-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세부분류를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하여 상정·의결함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	본회의 처리경과	시행일 (대안)	주요내용(대안)
이상민의원 (2000522)	2016.06.28	임기만료폐기	-	-
오세정의원 (2000573)	2016.06.30	임기만료폐기	-	-
신용현의원 (2000778)	2016.07.08.	대안반영폐기 (2018.02.28.)	2018.09.28	기존 기타공공기관의 분류를 유지하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세부분류를 별도 신설하고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등

- 대안을 마련한 이유는 첫째,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정부의 출연이나 수탁사업비 등 국가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영 합리화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기존 기타공공기관의 분류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각종 규제와 지침의 적용을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국민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국가R&D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차별화할 필요성은 인정함

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유형별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7)에 따라 2022년도 1월 현재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총 75개 기관으로,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총 25개 기관이 해당됨
 - 둘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으로, 총 22개 기관이 해당됨
 - 셋째,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⁸⁾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으로 현재 부처 직할 연구원 등 28개 기관이 해당됨

[2022년도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안)
통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산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과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국방)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방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방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
한국행정연구원		(재)APEC기후센터(기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수)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환경)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기상)

주: 1. ()는 소관 주무부처의 약칭임(방사: 방위사업청, 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 굵은 글씨는 전년도 대비 신규 지정된 기관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75개 기관의 2021년 정부출연금 전체 규모는 전년 예산 3조 6,646억 2,900만원 대비 3,520억 5,800만원 증액된 4조 166억 8,700만원으로 나타남⁹⁾

- 항목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의 출연금이 2조 278억 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처직할 연구기관 등 기타에 속하는 기관의 출연금이 1조 4,881억 2,000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은 5,007억원임

9)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대부분 기관고유사업의 정부출연금 외에 국가R&D 관련 정부수탁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경우 출연금 대비 정부수탁사업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지원 예산은 출연금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455,577	462,594	500,70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1,880,814	1,898,560	2,027,867
부처직할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	1,220,512	1,303,475	1,488,120
합 계	3,556,903	3,664,629	4,016,687

주: 1.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연금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외함

2. 2019년과 2020년은 결산 기준, 2021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각 기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평가체계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실적 평가¹⁰⁾를 실시하지 않지만 기관 유형에 따라 별도의 근거 법률에 따른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소관 법률 및 기관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¹¹⁾,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9조에 따라 연구회가 소속 출연연에 대하여 매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는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승인하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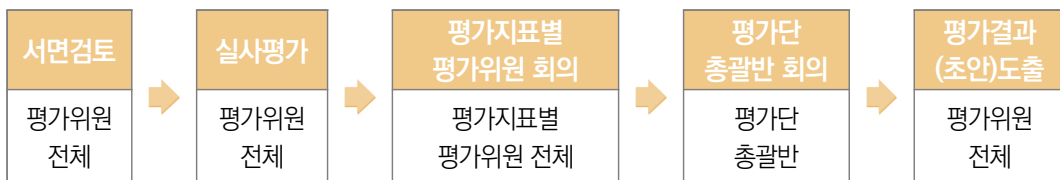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 절차는 ①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②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⑤ 평가결과의 확정 및 제출, ⑥ 평가결과의 활용, ⑦ 평가결과의 환류의 단계로 진행됨

- ①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 연구기관에 제시함
 - 다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 제3조제2항)
 - 평가편람에는 평가 연도의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방향,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점부여기준, 평가자료 양식,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
- ②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편람과 해당 연도 평가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소관 연구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연구기관은 「실적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기관장에게 「실적보고서」를 보고하여 확정하고, 해당 평가항목(평가지표)의 평가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함
- ③ 평가 실시: 소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단이 이사회에서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내용을 서면검토한 후, 서면검토의 확인절차인 실사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지표(평가요소)별 평점을 부여함
- ④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평가의견서, 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단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초안)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초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수정안)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후 연구기관 평가단이 평가결과(안)을 확정하게 됨

[평가결과(초안) 도출 과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⑤ 평가결과의 확정 및 제출: 연구기관 평가단에서 확정된 연구기관 평가결과(안)은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전문위원회와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확정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확정된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⑥ 평가결과의 활용: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간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 등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점을 활용

[연구기관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S	A	B	C	D
평가등급 부여기준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연구기관 평가등급은 1,000점 만점으로 집계된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⑦ 평가결과의 환류: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조치가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 설명회, 우수사례 발표회 및 평가담당자에 대한 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연구기관 평가단 및 평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년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활용함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1개 출연연(4개 부설기관)과 별도의 설립근거에 따른 부처 직할 10개 출연연¹²⁾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개별 법률에 따른 기관평가 근거가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함¹³⁾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1개 출연연 및 4개 부설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¹⁴⁾에 따라 연구회가

12)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연구기관 평가를 통합 실시하는 10개 부처직할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임

13)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지정된 25개 기타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같이 통합적으로 연구기관평가를 실시하는 10개 출연연 외에 나머지 15개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로 분류할 수 없는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관평가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기관들로 주무부처별로 개별적인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소관 출연연 및 부설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연구회 소관 출연연(부설기관 포함) 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¹⁵⁾에 따른 10개 부처직할 출연연¹⁶⁾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¹⁷⁾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¹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에 있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및 과학기술분야 부처직할 출연연에 대해서 기관평가를 통합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출연연은 단일한 평가체계에 따라 기관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6)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0개 부처직할 출연연에 대해서만 다름

17)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②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기관평가체계 일원화 현황]

구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부처직할 출연연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1개 출연연 및 4개 부설기관(녹색기술센터, 국가보안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치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기관 평가 일원화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체계는 2019년 이후부터 연구사업 평가(6년) 및 기관운영 평가(3년, 연구지원부문)로 이원화하여 시행
- 기존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는 신임 기관장 취임 후 임기 내 달성 목표를 명시한 연구성과계획서를 확정하고, 기관의 중간컨설팅을 거쳐 임기 말 종합평가(총 3회 차수별 실시)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해 왔음¹⁹⁾

19) 기존의 임무중심형 평가는 2020년 3차 종합평가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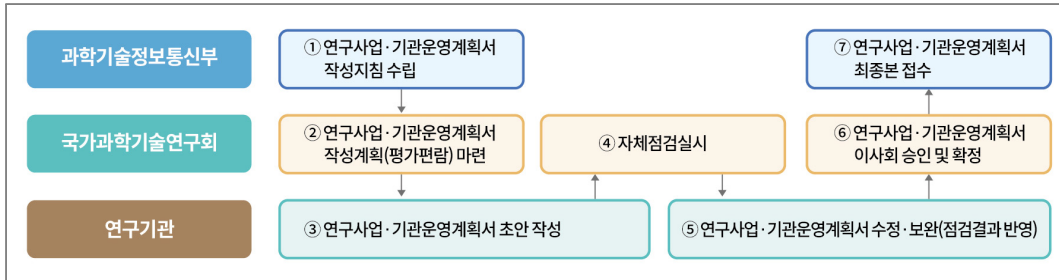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평가제도의 주요 개편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연구부문	평가 방법	○ 종합평가(연구+연구지원)	○ 연구/연구지원 평가 분리
	대상	○ 기관장 퇴임 예정 기관	○ 기관장 임기와 무관
	주기	○ 기관장 임기(3년)와 연계	○ 6년
	절차	○ 연구성과계획 수립 (취임 6개월 이내) → 중간컨설팅(임기 중, 기관자율) → 종합평가(임기만료 6개월 이내)	○ 연구사업계획 수립 (직전평가 종료 직후 6개월 내) → 중간컨설팅(기관자율) → 연구사업평가 (계획기간 만료 전 6개월간)
연구지원부문	내용	○ 연구사업 단위와 별개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수립 ○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평가+ 우수성과 정성평가	○ 연구사업(내역사업)단위로 전략목표-성과목표-추진계획 수립 ○ 달성도 정량평가 폐지 / 연구과정, 연구성과, 영향력에 대한 정성 평가
	대상	○ 기관장 퇴임 예정 기관	〈좌 동〉
	주기	○ 기관장 임기(3년)와 연계	〈좌 동〉
	절차	○ 연구성과계획 수립 (취임 6개월 이내) →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 종합평가(임기만료 6개월 이내)	○ 기관운영계획 수립 (취임 6개월 이내) → 중간컨설팅(임기중, 기관자율) → 기관운영평가(임기만료 6개월 이내)
연구지원부문	내용	○ 공통지표 달성도 및 정성평가(60%) - 연구환경조성, 효율적 기관운영, 성과 관리에 대해 기관자율로 지표 설정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정성평가(40%) - 현안대응 중심 평가	○ 공통영역 평가(30%) - 외부평가 결과 활용 ○ 기관운영 정성평가(70%) - (자율영역) 기관 자율적으로 목표 수립 -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연구성과) 현 안대응 노력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중 심 평가(별도목표 미수립)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19년 이후 신규 기관평가제도는 ① 연구사업·기관운영계획 수립, ② 중간컨설팅, ③ 연구사업·기관운영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 연구사업·기관운영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평가편람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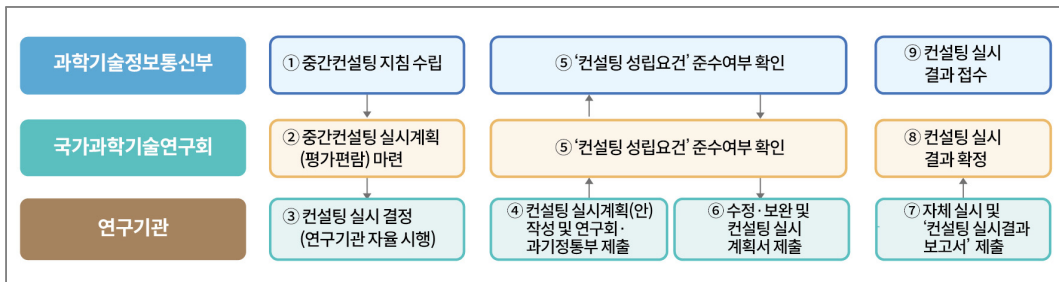
[연구사업·기관운영계획 수립 절차]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중간컨설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침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평가편람을 마련한 후 각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함

[중간컨설팅 절차]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연구사업·기관운영평가: 연구사업평가는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와 전략에 따라 6년 단위의 연구부문 전략·성과목표별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3년)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함

[연구사업·기관운영평가 절차]

구분	항목	방법	활용
연구사업	전략목표·성과목표	연구수행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 영향력을 구분하여 정성평가	예산·사업·인력 조정 등에 연계
기관운영	(공통영역) 외부평가항목 단위 점수 및 등급에 따른 정량지표	외부평가결과 환산(점수)	기관 임무·기능조정, 기관장 연임 및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등과 연계
	(자율영역) 성과목표별 질적우수성, 과정의 적정성, R&R 이행 기여도	성과목표별 정성평가(S~D)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연구성과) 정책·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성과 등의 우수성	정성평가(S~D)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지정 효과

- 현행 「공운법」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하여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각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²⁰⁾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운영이 허용되며, 경영혁신 진단 시에도 연구실적 등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음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 시에도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조사항목과 달리 기관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직원 채용 시에도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제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운영 및 주거지원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음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6조 조직 및 경영진단	○ (원칙)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 기능 · 인력 등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적극적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조직 ·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함 ○ (예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인 조직 · 인력 운영을 허용할 수 있음
제10조 경영혁신 진단	○ (원칙)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공공서비스 품질 수준,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 경영혁신을 진단해야 함 ○ (예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경영혁신 진단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 때 주무부처의 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제19조 고객만족도 조사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제22조 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	○ (원칙) 공공기관은 직원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채용 면접에 활용할 수 없음 ○ (예외)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제24조 비정규직 관리	○ (원칙) 공공기관은 상시 ·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여야 함 ○ (예외)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는 연수 목적의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을 주무부처(기관)와 협의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제46조 기타 복리후생 제도	○ (원칙)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야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예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을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 ·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처(기관)와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성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효과의 기관 적용 사례 (예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일부 출연연은 내부규정을 통해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학생연구원 등에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내부규정인 「연수직 운영지침」과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통해 박사후 연구원, 인턴, 학생연구원, 현장실습생의 선발 및 근로계약 관련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로 운영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비정규직 관련 내부규정]

구 분	적용대상	주요 내용
연수직 운영지침	박사후 연구원, 인턴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연수기간은 박사후연구원의 지원자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제기반 테뉴어” 방식으로 운영하고, 근로기간은 연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3년에서 참여연구과제 기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박사후연구원 자격기준 내 시작된 마지막 참여과제 종료시점까지 박사후 연구원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학생 연구원 운영규정	학생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및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과정 소속자 및 동 기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계약직 형태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수직 운영지침」,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해외석학 등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해외 유치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통상적인 지원범위를 넘는 예외적인 주거비 지원 등을 허용하고 있음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치과학자 지원지침 관련 주요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유치 과학자	해외 유치과학자	○ 연구단, 사업단 등 소속 및 직급에 따라 교통비 지원 ○ 여비규칙 중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이전비 지원 ○ 사택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주거비 지원 ○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학비 지원

주. 동 지침은 국내 유치과학자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항목에서는 해외 유치과학자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유치과학자 지원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4. 금융공공기관

가. 금융공공기관 개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요 금융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8개 기관임²¹⁾
- 정책금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우대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이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공공기관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음²²⁾
- 2022년 1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은 아래의 18개 기관임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2018~2020년 평균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 하는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금융 성격인 기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모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성 기금의 경우에는 그 주요 목적이 해당 연금을 유지하여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책금융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그 밖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경우에도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관련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 미만으로 제외하였음. 감사원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2014.10.7.)에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이상 12개의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구분한 바 있음

22) 성승제,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와 금융공공기관】

분류		주무부처	금융공공기관
공기업	준시장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8개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업무²³⁾를 기준으로 은행형, 보증·보험형, 융자형, 자산관리형 등으로 구분 가능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음
-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있음
- 융자형 금융공공기관에는 채권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부 출연 수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음
- 자산관리형 금융공공기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포함됨

23) 2018~2020년 평균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금융 업무에 사용하는 기관을 선정하였음

[각 유형별 금융공공기관 주요 현황]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은행형 (3)	한국 수출입 은행	1976년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 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해외건설·플랜트 등 주요 수출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투자자금·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한국 산업은행	1954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 금의 공급·관리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 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자원의 개발, 기 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은행	1961년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 자금대출·어음할인, 예금·적 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
보증· 보험형 (9)	기술보증 기금	1989년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 금융통 지원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 권관리, 유동화회사보증(P-CBO), 기술혁 신지원, 기업 경영지도
	신용보증 기금	1976년	채무 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 금융통 지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신용보험, 보증연계투자, 창업 기업지원신용정보 종합관리, 기업 경영지 도
	주택도시 보증공사	2015년 ¹⁾	주택건설 보증 등 주택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보 증, 주택관련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한국주택 금융공사	2004년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및 주택금융신용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주택금융 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유동화증권 발행, 보증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보증 공급
	한국무역 보험공사	1992년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 (「무역보험법」 제37조)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예금보험 공사	1996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법」 제3조)	예금보험기금 조성, 부실금융기관 정리, 보험금 지급, 공적 지원자금 회수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2000년	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개인 부담 채무 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수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신용보 증·신용조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 육연수, 개인 부담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설립 근거 법률)	주요 업무
	서민금융 진흥원	2016년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 용층, 청년·대학생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한국해양 진흥공사	2018년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 성 확보 지원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운 경쟁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 산에 대한 투자 및 차입자금에 대한 채무 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융자형 (2)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1979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글로벌화 및 마 케팅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2014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업무의 위탁 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자산 관리형 (4)	한국자산 관리공사	1962년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한국 투자공사	2005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산 운용업무의 효율적 수행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	위탁기관에서 받은 자산의 관리·운용
	한국 벤처투자	2005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 한 투자 촉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 조의9)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 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육성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2018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 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 자, 출자 및 금융자문 등

주: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주택도시보증법」 제정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재설립됨

1. 최근 10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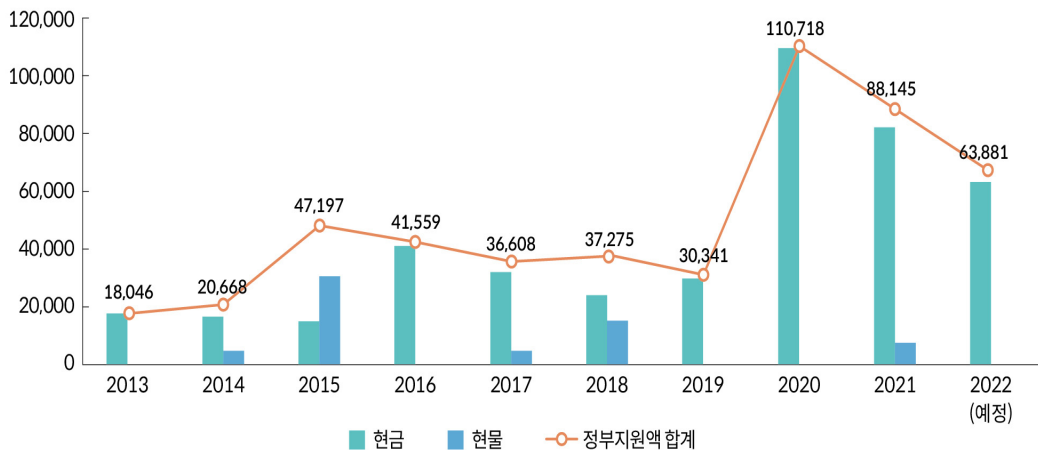
자료: 각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목적으로 18개 금융 공공기관에 총 11조 718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과거 10년간 연간 지원액 중 가장 큰 금액임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금융공공기관에 2020년 11조 718억원, 2021년 8조 8,1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6조 3,88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인 2020~2022년의 최근 3년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액 합계 26조 2,744억원은 2013~2022년의 10년간 총 지원액 49조 4,438억원의 53.1%를 차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 지원 현황 (2013~2022)]

(단위: 억원)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의 경우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으로, 2020년 2조 7,528억원, 2021년 14조 280억원, 2022년 12조 2,600억원(예산기준)임) 관련 정부지원 예산은 제외하였음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는 2013~2022년의 10년간 18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49조 4,438억원을 지원(현금지원 43조 4,138억원(87.8%), 현물지원 6조 300억원(12.2%))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3~2022년의 10년 간의 정부 지원액은 12조 7,494억원이며, 이는 전체 지원액 49조 4,438억원의 2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6년과 2017년에는 주로 조선업 구조조정 및 대외경제 악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위해 지원되었음

- 소상공인에 대한 용자사업 등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2013~2022년간의 정부 지원액은 8조 8,194억원²⁴⁾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1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 신용보증기금에는 경기보강 목적의 금융지원을 위해 2.9조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어 지원됨
- 한국산업은행에는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우량 회사채, CP매입 기구, 증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위해 2020년 총 2조 1,026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상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2,296억원 및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1조 1,208억원의 예산이 지원됨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세부 현황 (2013~2022)]

(단위: 개,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정)	합계	
													금액	(비중)
은행형 (3)	한국 수출입 은행	현금	1,000	1,300	1,300	10,200	0	0	562	5,783	2,700	250	23,095	(4.7)
		현물	0	3,800	10,000	0	2,500	0	0	0	0	0	16,300	(3.3)
		소계	1,000	5,100	11,300	10,200	2,500	0	562	5,783	2,700	250	39,395	(8.0)
	한국산업 은행	현금	100	200	550	3,077	1,450	1,700	5,550	21,026	11,208	7,300	52,162	(10.5)
		현물	0	0	20,000	0	2,500	0	0	0	0	0	22,500	(4.6)
		소계	100	200	20,550	3,077	3,950	1,700	5,550	21,026	11,208	7,300	74,662	(15.1)
보증 · 보험형 (9)	중소기업 은행	현금	762	98	400	400	0	0	2,250	12,688	491	0	17,089	(3.5)
		기술보증 기금	600	500	400	800	508	600	1,030	4,883	3,500	1,770	14,591	(3.0)
	신용보증 기금	현금	700	1,000	1,300	2,100	1,841	1,417	1,510	33,266	4,406	2,100	49,639	(10.0)

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액 8조 8,194억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으로, 2020년 2조 7,528억원, 2021년 14조 280억원, 2022년 12조 2,600억원(예산기준)임)은 제외한 것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정)	합계		
													금액	(비중)	
	주택도시 보증공사	현금	0	0	0	0	0	700	0	0	3,900	0	4,600	(0.9)	
		한국주택 금융공사	현금	2,200	0	500	0	0	900	900	0	500	500	5,500	(1.1)
			현물	0	0	1,500	0	0	0	0	0	0	0	1,500	(0.3)
			소계	2,200	0	2,000	0	0	900	900	0	500	500	7,000	(1.4)
	한국무역 보험공사	현금	2,500	1,400	1,450	3,900	700	800	1,350	5,731	3,500	912	22,243	(4.5)	
	예금보험 공사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현금	825	548	600	600	536	356	469	2,123	2,369	1,644	10,069	(2.0)	
	서민금융 진흥원	현금	-	-	-	1,750	1,750	1,750	1,750	1,233	2,670	2,391	13,294	(2.7)	
	한국해양 진흥공사	현금	-	-	-	-	-	1,300	700	0	300	300	2,600	(0.5)	
		현물	-	-	-	-	-	13,500	0	0	0	0	13,500	(2.7)	
		소계	-	-	-	-	-	14,800	700	0	300	300	16,100	(3.3)	
융자형 (2)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현금	9,359	9,991	6,409	15,461	21,436	10,726	8,815	14,734	17,998	12,566	127,494	(25.8)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현금	-	1,832	2,788	3,271	3,388	3,526	5,006	7,551	27,184	33,648	88,194	(17.8)	
자산 관리형 (3)	한국자산 관리공사	현금	0	0	0	0	0	0	0	900	119	0	1,019	(0.2)	
		현물	0	0	0	0	0	0	0	0	6,500	0	6,500	(1.3)	
		소계	0	0	0	0	0	0	0	900	6,619	0	7,519	(1.5)	
	한국투자 공사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한국벤처 투자	현금	0	0	0	0	0	0	0	0	0	0	0	(0.0)	
	한국해외 인프라도시 개발지원 공사	현금	-	-	-	-	-	0	450	800	800	500	2,550	(0.5)	
합계		현금	18,046	16,868	15,697	41,559	31,608	23,775	30,341	110,718	81,645	63,881	434,138	(87.8)	
		현물	0	3,800	31,500	0	5,000	13,500	0	0	6,500	0	60,300	(12.2)	
		계	18,046	20,668	47,197	41,559	36,608	37,275	30,341	110,718	88,145	63,881	494,438	(100.0)	

주: 1. 2022년 정부지원 금액은 2022년 예산 기준임

2. 상기 정부 예산을 통한 정부 현금 지원액은 출자금, 출연금 등을 포함한 것임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보조금 성격이 강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관련 정부지원 예산은 제외하였음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 승인 없는 정부의 현물출자

-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 2013~2022년간의 정부 현물출자금액 6조 300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이며, 해당 현물출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주식 등 정부 보유 주식으로 이루어짐

[2013~2022년간 현물출자 받은 금융공공기관의 정부 현물출자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합계
출자금액 (a)	39,395	74,662	7,000	16,100	7,519	144,676
현물출자 (b)	16,300	22,500	1,500	13,500	6,500	60,300
(비중 (b/a))	(41.4)	(30.1)	(21.4)	(83.9)	(86.4)	(41.7)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정부의 현물출자 시에는 별도의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²⁵⁾
- 정부는 금융위기,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긴급하게 자본확충 필요 시 예산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물출자를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물출자는 1) 출자의 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외에 현금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출자와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낮으며, 2) 한 번 출자하면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는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출자한 이후에도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3) 또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 규모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임
-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현금출자와 같이 출자의 필요성과 규모를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현황

- 18개 금융공공기관의 2020년 말 자산총액은 794.4조원으로 2011년 435.9조원에 비해 358.6조원(82.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 대규모 용자업무 수행으로 관련 채권을 보유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2020년 말 자산총액이 684.4조원으로(18개 금융공공기관 자산 총액의 86.1%) 대부분을 차지

25) 「국가회계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말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증액 (b-a)	증률 (b/a)
은행형	한국수출입은행	55.1	54.6	60.9	73.1	81.9	89.8	83.9	89.8	92.3	97.6	42.5	77.0
	한국산업은행	127.9	143.0	143.6	217.8	224.5	219.1	213.2	209.8	217.8	251.9	124.0	97.0
	중소기업은행	179.9	190.8	203.7	207.9	226.0	241.5	256.1	268.9	294.8	335.0	155.0	86.1
	소계	363.0	388.3	408.2	498.8	532.3	550.3	553.3	568.5	604.9	684.4	321.4	88.6
보증·보험형	기술보증기금	3.3	3.2	3.4	3.3	3.4	3.4	3.1	2.9	3.0	3.6	0.3	7.6
	신용보증기금	8.3	8.0	7.9	8.1	8.4	8.4	8.3	7.8	8.1	12.0	3.7	44.8
	주택도시보증공사	5.7	5.7	5.8	6.1	5.6	6.3	6.7	7.2	7.6	7.8	2.1	37.7
	한국주택금융공사	9.0	9.8	10.5	10.0	10.6	11.3	12.6	14.7	19.1	20.0	11.0	123.0
	한국무역보험공사	2.6	3.0	3.3	3.7	3.9	4.3	4.2	4.3	4.1	5.0	2.3	88.7
	예금보험공사	22.7	26.5	29.8	25.6	21.8	21.4	20.3	18.6	18.5	18.7	△4.1	△17.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8	0.9	1.0	1.2	1.2	1.2	1.3	1.3	1.1	1.6	0.8	100.6
	서민금융진흥원	-	-	-	-	-	1.4	2.0	2.4	2.9	3.2	3.2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	2.7	4.2	8.5	8.5	-
	소계	52.4	57.1	61.6	58.1	55.0	57.9	58.5	61.9	68.6	80.2	27.9	53.2
융자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4	16.1	16.5	16.3	15.9	15.9	17.0	18.1	19.1	23.0	6.5	39.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0.01	0.05	0.04	0.03	0.03	0.04	0.02	0.0	-
	소계	16.4	16.1	16.5	16.3	16.0	15.9	17.0	18.1	19.1	23.0	6.6	40.0
자산관리형	한국자산관리공사	3.9	3.1	3.1	2.4	2.6	2.6	3.5	4.0	4.8	5.8	2.0	51.4
	한국투자공사	0.2	0.2	0.2	0.3	0.2	0.2	0.3	0.3	0.3	0.4	0.2	142.9
	한국벤처투자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33.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	-	0.2	0.2	0.5	0.5	-
	소계	4.1	3.4	3.4	2.7	2.9	2.9	3.9	4.5	5.5	6.8	2.7	66.3
합 계		435.9	464.9	489.7	576.0	606.2	627.0	632.6	653.1	698.1	794.4	358.6	82.3

주: 1. 각 공공기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설립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 설립됨

3. 한국산업은행의 2014년도 이전 수치는 2014년 12월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전 수치를 반영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과거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 비해 주택금융 지원 기관은 지속적인 이익 발생

○ 보증·보험형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1~2019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관련 재정은 영순원가²⁶⁾가 해당 기금에 관련된 국세, 부담금 등의 수익을 초과함²⁷⁾

-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 중소기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16년 이후 재정운영결과가 손실을 나타내고 있음
- 조선·해운업 및 해양플랜트 관련 부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1조 4,8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²⁸⁾의 경우 2015년 1조 8,951억원, 2016년 3조 6,41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주택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11~2020년 동안 대부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자산관리형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에 서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행 형	한국수출입은행	1,468	1,489	597	668	220	△14,873	1,728	5,970	3,016	1,204
	한국산업은행	14,124	9,469	△14,474	1,835	△18,951	△36,411	4,348	25,098	4,457	4,875
	중소기업은행	15,522	11,206	8,120	9,358	10,239	10,267	13,141	15,110	13,928	12,632
	소 계	31,114	22,164	△5,756	11,860	△8,493	△41,017	19,217	46,179	21,401	18,711
보 증 · 보 험 형	기술보증기금	△203	△1,575	△2,388	△2,011	265	△1,596	△2,109	△3,651	△1,078	△184
	신용보증기금	△451	185	△3,786	△4,114	△3,929	△6,104	△130	△1,878	468	△3,300
	주택도시보증공사	1,859	2,205	1,992	3,901	3,523	4,736	5,655	5,128	3,836	2,918
	한국주택금융공사	1,813	823	1,957	2,407	△114	5,309	3,124	6,226	5,525	△1,651
	한국무역보험공사	△2,401	△292	△2,760	438	△1,957	△5,578	△419	1,596	2,987	△1,155
	예금보험공사	△108,847	△39,031	15,578	28,426	43,155	45,487	41,562	39,325	40,208	40,88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115	△1,962	△4,111	△3,636	△3,678	△455	177	72	△561	△2,094

26)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수익(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수익)]으로 산정됨

27) 재정운영순원가에서 관련 국세, 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재정운영결과는 일반적인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 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경우 해당 금액이 클수록 기업운영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의 경우 재정운영결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충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용(원가)이 수익을 초과하여 재정운영결과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나타낼 경우에는 해당 기금의 건전성 악화 방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8) 한국산업은행의 2013년 당기순손실 발생 1조 4,474억원은 주로 STX 관련 채권 대손 비용 1.5조원 발생에 기인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민금융진흥원	-	-	-	-	-	△1,076	△3,139	△3,360	△2,406	1,021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	△1,955	△1,599	25,857
	소 계	△110,344	△39,648	6,480	25,412	37,264	40,722	44,722	41,505	47,380	62,294
융 자 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99	2,208	313	189	184	△1,074	△958	△1,377	△2,414	△2,6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	0	0	△11	△2	3	△13	△3	△1	△15
	소 계	2,799	2,208	313	178	182	△1,071	△971	△1,380	△2,415	△2,680
자 산 관 리 형	한국자산관리공사	1,060	953	510	939	829	1,095	426	729	627	585
	한국투자공사	161	192	247	514	187	220	333	374	611	967
	한국벤처투자	28	34	35	24	17	17	10	53	48	4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	-	-	-	-	-	-	22	25	△70
	소 계	1,249	1,180	793	1,476	1,033	1,332	769	1,178	1,311	1,527
합 계		△75,182	△14,096	1,830	38,927	29,986	△33	63,736	87,481	67,678	79,852

주: 1. 각 공공기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상기 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결과를 부호를 반대로 하여 표기하였음. 또한, 이해를 위해 기관별 당기순이익과 재정운영결과를 각 구분별로 합산하여 표기함

3.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설립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18년 6월 설립됨

4. 한국산업은행의 2014년도 이전 수치는 2014년 12월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전 수치를 반영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현황 집계 기준인 AUP(Agreed Upon Procedure) 기준에 따른 것임

6.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20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이전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996억원임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지원²⁹⁾ 등에 따라 BIS비율³⁰⁾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음

-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BIS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11년 12.53%에서 2020년 15.29%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29)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1.5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1.9조원, 2016년에는 3.6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2015년과 2016년 각각 1조 1,300억원과 1조 200억원의 출자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는 2015년 2조 550억원의 출자를 실시하였음(‘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참조)

30) BIS비율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 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text{BIS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quad \text{으로 산정됨}$$

-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바젤 III 최종안’의 2020년 조기도입 등에 따라 2020년 BIS비율 상승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요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등을 하향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도입³¹⁾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의 감안 필요
 - 정부는 2020년 3월 이후 전 금융권의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수행하면서 관련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수출입은행	10.63	11.61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한국산업은행	15.25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중소기업은행	11.70	12.37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3개 은행 평균	12.53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

-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 잔액 증가에 비해 기금 순자산 증가가 미달하여 보증·보험 운용배수³²⁾가 증가하고 있음
 - 2011~2020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보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보험 운용배수³³⁾는 증가하는 추세임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총 보증 운용배수가 2011년 6.1배 및 6.9배에서 2020년 12.0배 및 8.2배로 증가

31)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음

32) 보증·보험 운용배수는 각 금융공공기관의 연도 말 보증·보험 잔액을 기본재산 및 이월이익잉여금 등의 순자산으로 나눈 배수를 말함. 보증 및 보험은 향후 대손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이므로 해당 보증·보험에 대한 변제 능력을 유지하려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 보증·보험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등 적정 운용배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3)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운용배수는 각 기관별로 수행 업무 상 차이 등이 존재함에 따라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적정 운용배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서로 다른 기관 간 운용배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각 기관의 기간 별 운용배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적정 운용배수 관리를 위해 의미가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고유계정의 운용배수가 2011년 21.8배에서 2020년 40.3배로 증가하였음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배수는 2011년 90.3배에서 2020년 29.9배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무역보험기금의 순자산 증가 및 유효계약액 통계 작성 방법 변경 등에 기인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증가 등에 따라 운용배수가 2011년 25.7배에서 2020년 55.3배로 증가함

[보증·보험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보험 운용배수]

(단위: 배)

구 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기술보증기금		6.1	7.1	8.3	8.9	9.0	9.6	11.1	13.4	13.2	12.0	5.9
신용보증기금		6.9	7.2	8.0	8.5	9.0	9.9	9.9	9.9	9.8	8.2	1.3
주택도시보증공사		21.0	22.7	26.6	35.1	33.8	45.8	46.4	45.0	45.6	47.4	26.4
한국주택 금융공사	고유계정	21.8	31.0	32.4	29.2	37.8	39.5	41.9	37.9	36.3	40.3	18.5
	주택신용보증계정	10.2	12.0	10.6	9.7	10.6	11.8	11.7	10.9	11.0	13.3	3.1
	주택연금보증계정	7.9	8.8	11.1	11.9	12.8	13.1	15.1	14.8	15.0	11.6	3.7
한국무역보험공사		90.3	91.4	86.7	67.4	66.3	73.4	69.1	48.7	37.7	29.9	△60.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5.7	30.2	34.4	36.4	37.6	36.0	31.6	35.1	46.1	55.3	29.6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	-	-	-	-	12.0	10.2	11.9	6.6	6.5	-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

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 금융공공기관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16개 금융공공기관³⁴⁾에서 664.8조원의 융자(대출) 잔액 및 816.7조원의 보증 잔액, 83.4조원의 보험잔액 그리고 82.1조원의 투자잔액 보유
-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합계가 1,647.0조원으로 2020년 1,472.7조원 대비 11.8% 증가하는 등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의 최대 확대 추진³⁵⁾
- 융자(대출)잔액은 2016년 473.5조원에서 2021년 664.8조원으로 191.3조원(40.4%) 증가하였으며, 2021년 융자(대출) 잔액은 2020년 대비 8.7% 증가하여 2020년 증가율 12.4%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
- 보증잔액은 2016년 560.3조원에서 2021년 816.7조원으로 256.4조원(45.8%) 증가하였으며, 2021년 보증 잔액 증가율이 14.5%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2016년 보험잔액은 89.0조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83.4조원으로 5.5조원 감소(△6.2%)하였는데,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잔액 감소 6.9조원에 기인함
- 투자잔액은 2016년 53.8조원에서 2021년 82.1조원으로 28.3조원(52.5%) 증가하였으며, 2021년 말 기준 투자잔액 82.1조원 중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66.2조원)이 대부분(80.6%)을 차지

34)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상기의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음

35)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보도자료, 2020.4.22.,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2020.3.24.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증감	
							(b-a)	(b-a)/a
융자(대출)	473.5	494.6	515.8	544.1	611.6	664.8	191.3	40.4
(전년대비 증감률)	-	(4.5)	(4.3)	(5.5)	(12.4)	(8.7)	-	-
보증	560.3	578.3	594.5	628.7	713.2	816.7	256.4	45.8
(전년대비 증감률)	-	(3.2)	(2.8)	(5.8)	(13.4)	(14.5)	-	-
보험	89.0	87.2	75.3	77.9	76.6	83.4	△5.5	△6.2
(전년대비 증감률)	-	2.0	13.7	(3.5)	1.7	(8.9)	-	-
투자	53.8	52.9	56.8	58.5	71.3	82.1	28.3	52.5
(전년대비 증감률)	-	1.8	(7.5)	(3.0)	(21.8)	(15.2)	-	-
합계	1,176.6	1,213.0	1,242.5	1,309.3	1,472.7	1,647.0	470.4	40.0
(전년대비 증감률)	-	(3.1)	(2.4)	(5.4)	(12.5)	(11.8)	-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상기 각 연도별 잔액 집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6~2021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대출) 잔액은 191.3조원(40.4%)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의 증가 금액이 81.1조원(46.9%)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융자 잔액 중 가장 크게 증가
 - 2021년 말 중소기업은행의 융자(대출) 잔액은 254.0조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이 203.9조원으로 전체 융자(대출) 잔액의 80.3%의 비중을 차지
 - 2021년 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융자(대출) 금액은 151.7조원이며, 이는 관련 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임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융자(대출)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융자(대출) 잔액 합계	473.5	494.6	515.8	544.1	611.6	664.8	(100.0)	191.3	40.4
중소기업은행	173.0	181.8	192.7	206.0	233.5	254.0	(38.2)	81.1	46.9
한국주택금융공사	92.6	108.0	116.2	122.2	140.4	151.7	(22.8)	59.1	63.8
한국산업은행	118.6	116.8	115.8	120.8	134.9	146.9	(22.1)	28.3	23.8
한국수출입은행	73.9	69.2	69.6	70.7	72.4	77.6	(11.7)	3.7	5.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5	15.1	15.8	16.6	19.4	21.9	(3.3)	7.4	5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6	4.4	6.3	9.6	11.4	(1.7)	-	-
서민금융진흥원	0.65	0.77	0.81	0.78	0.78	0.74	(0.1)	0.1	13.9
한국해양진흥공사	-	-	0.17	0.47	0.42	0.43	(0.1)	-	-
주택도시보증공사	0.36	0.30	0.27	0.25	0.22	0.18	(0.0)	△0.2	△49.5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잔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사업등록업자에게 융자한 융자금으로, 1999년 전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융자금은 상환받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6~2021년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256.4조원(45.8%) 증가하였으며, 증가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165.2조원, 50.1% 증가)에서 발생

- 2021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816.7조원이며, 이 중 60.6%인 495.2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잔액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³⁶⁾ 등의 이행성 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³⁷⁾ 등의 금융성 보증을 수행하고 있음³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1년 보증 잔액이 123.3조원으로, 대부분 주택신용보증³⁹⁾과 주택연금보증⁴⁰⁾의 금융성 보증 금액임

36)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37)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38) 보증은 크게 이행성 보증과 금융성 보증으로 구분됨. 이행성 보증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을 말하며, 금융성 보증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 상환을 담보하는 보증임

39) 주택수요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 건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임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증잔액 합계	560.3	578.3	594.5	628.7	713.2	816.7	(100.0)	256.4	45.8
주택도시보증공사	330.0	355.7	366.8	384.6	427.0	495.2	(60.6)	165.2	50.1
한국주택금융공사	69.0	74.3	80.9	94.2	111.0	123.3	(15.1)	54.3	78.6
신용보증기금	59.1	60.9	61.2	63.5	78.8	91.5	(11.2)	32.3	54.7
한국수출입은행	53.6	39.0	34.8	32.3	28.0	30.1	(3.7)	△23.5	△43.9
기술보증기금	20.5	21.3	22.0	21.8	25.4	26.3	(3.2)	5.8	28.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9	9.4	10.1	11.4	21.2	22.9	(2.8)	13.9	156.5
한국산업은행	11.0	8.4	8.6	8.8	8.3	11.4	(1.4)	0.5	4.3
서민금융진흥원	1.8	3.3	4.0	4.9	6.0	6.6	(0.8)	4.8	271.1
중소기업은행	4.0	4.0	3.9	3.8	3.6	4.3	(0.5)	0.2	6.2
한국해양진흥공사	-	-	0.2	1.5	1.9	2.8	(0.3)	2.8	-
한국무역보험공사	2.4	2.0	1.8	1.7	2.1	2.3	(0.3)	△0.1	△4.2
한국자산관리공사	0.0	0.0	0.1	0.1	0.1	0.2	(0.0)	0.2	-

주: 1. 각 연도 말의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중복계상에서 제외하였음

3.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설립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2018년 7월 설립됨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잔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 잔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보험 업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험 잔액은 83.4조원으로, 이의 대부분(93.6%)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생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잔액은 2016년 85.0조원에서 2021년 78.1조원으로 6.9조원(8.1%) 감소

- 2018년 말에는 2017년 말 대비 보험 잔액이 12.9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보험에 대한 보험 잔액 산출 기준 변경⁴¹⁾에 따른 것임

40)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을 말함

41)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기존 보험잔액 산출 시 포함되어 있던 미래 상환기간의 이자금액을 내부 통계 기준 변경에 의해 제외하였음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험 잔액]

(단위: 조원,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험 잔액 합계	89.0	87.2	75.3	77.9	76.6	83.4	(100.0)	△5.5	△6.2
한국무역보험공사	85.0	83.0	70.1	72.6	71.3	78.1	(93.6)	△6.9	△8.1
신용보증기금	4.0	4.3	4.7	5.0	5.1	5.2	(6.2)	1.2	30.2
한국해양진흥공사	-	-	0.4	0.3	0.2	0.1	(0.1)	-	-

주: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잔액은 82조 1,074 억원이며, 이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은행(80.6%)에서의 투자금액으로, 한국산업은행의 2021년도 말 투자잔액은 66조 1,992억 원임⁴²⁾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잔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투자 잔액 합계	538,334	528,598	568,380	585,262	712,991	821,074	(100.0)	282,741	52.5
한국산업은행	491,928	469,150	487,606	482,036	571,040	661,992	(80.6)	170,064	34.6
한국벤처투자	24,432	34,182	40,297	45,217	58,482	72,775	(8.9)	48,343	197.9
중소기업은행	18,518	20,623	23,372	26,333	32,102	37,934	(4.6)	19,416	104.9
한국해양진흥공사	-	-	9,427	22,443	38,171	27,912	(3.4)	-	-
한국자산관리공사	0	0	9	165	2,686	7,494	(0.9)	7,494	-
한국수출입은행	1,082	1,727	2,925	3,742	4,663	6,202	(0.8)	5,120	473.4
신용보증기금	837	1,148	1,467	1,899	2,283	2,677	(0.3)	1,840	220.0
기술보증기금	1,537	1,768	1,932	1,958	1,955	2,063	(0.3)	526	34.2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	1,345	1,468	1,609	2,026	(0.2)	-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잔액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의 각 연도 말 평가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상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잔액 16.9조원(2020년 말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부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부록 1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수시 지정 현황(2022년 3월 기준)

1. 연도별 정기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2007	298	298	0	0		
2008	305	7	0	0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주)	
2009	297	9	17	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향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보캐피탈(지분매각)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아트컴(주),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폐지, 통·폐합)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부설기관),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순수예술창작법인),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관)
2010	284	19	10	-39 (+17)	한국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회귀약품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폐지), (주)한국토지신탁(지분매각), (주)농지개량(민영화), 자산신탁(민영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소규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민영화), (주)정리금융공사(폐지),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지정실익미비)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2011	286	8	6	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수산자원사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지정실익 미흡), 대한결핵협회(요건미 해당), 한국전자파연구원(폐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폐지),
2012	286 (288 수시 지정 에 의해 2개 증가)	7	3	-2 (통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IPO 및 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지정해제), 중소기업은행(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지정해제)
2013	295	10	-3	0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정부지원 비용감소), 한국기업데이터(주)(지분매각)
2014	304 (302)	10	0	-2 (+1 통합)	재지정)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신규) 국립생태원,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주)워터웨이플러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사(소상공인진흥원 + 시장경영진흥원)
2015	316	20	-6	0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주)해울,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한국표준협회(정부지원액 50%미만), 인천종합에너지(주)(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과 기관통합), 한국거래소(법상 독립적 사업구조 해소),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2016	323 (321)	12	-5	0	아시아문화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체육인재육성재단(정원미달),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회귀의약품센터,(기관 통 · 폐합), (주)해울(지정 실익 결여)
2017	332 (330)	13	-2	0	한국재정정보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부산과학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전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 대학교, 한양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통 · 폐합)
2018	338	9	1	0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지정실익 낮음)
2019	339	7	6	0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정동극장, IOM 이민정책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폐지, 실익 없거나 소규모)
2020	340	4	3	0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해산, 정부지원 축소)

구분	지정	신규	해제	변경	신규	해제
2021	350	12	-2	0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22	350	3	2	0	(재)한국보건정보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주. 해당 자료는 매년 초 공공기관 정기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연도별 수시 지정 현황

(단위: 개)

연도	신규	해제	변경	신규 (기관명)	해제 (기관명)	변경 (기관명)
2007	0	0	0			대한체육회('07.4월)
2010	1	△1	△2	국립중앙의료원('10.7월)	한국자산신탁(주)('10.3월)	근로복지공단('10.7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0.10월)
2011	0	0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1.5월)
2012	3	△1	0	기초과학연구원('12.5월), 한국임업진흥원('12.5월), 한국잡월드('12.10월)	경북관광개발공사('12.10월)	
2014	0	0	△2			문화예술위원회('14.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9월)
2016	0	0	△2			대한체육회('16.7월), 한국승강기안전 공단('16.7월)
2017	0	0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7.9월),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17.9월)
2021	0	0	△1			한국광해광업공단('21.12월)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록 2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2022년 3월 기준)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법제사법 위원회(3)	법무부(3)	기타공공기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2)	문화체육 관광부 (31)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단
		공기업(준시장형)(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무위원회 (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공정거래 위원회(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소비자원
		기타공공기관(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처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2)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1)	88관광개발(주)
	금융위원회 (7)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5)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2)	
국방위원회 (5)	국방부(3)	기타공공기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2)	기타공공기관(2)	
환경노동 위원회 (27)	환경부 (12)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1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4)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2)	(재)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 위원회 (5)	관세청(1)	기타공공기관(1)	(재)국세원산지정보원
	기획재정부 (4)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보건복지 위원회 (32)	보건복지부 (28)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19)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여성가족 위원회 (5)	여성가족부 (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교통 위원회 (28)	국토교통부 (28)	공기업(시장형)(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기업(준시장형)(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13)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34)	농림축산 식품부 (12)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5)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6)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축산환경관리원
	농촌진흥청(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해양수산부 (17)	공기업(시장형)(2)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공기업(준시장형)(3)	여수광양항만공사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4)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8)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외교통일 위원회 (5)	외교부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기타공공기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5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0)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2)	공기업(준시장형)(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기타공공기관(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행정안전위원회 (6)	경찰청 (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사혁신처(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57)	산업통상 자원부 (41)	공기업(시장형)(11)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준시장형)(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11)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1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2)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6)	(재)중소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특허청(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교육위원회 (22)	교육부 (2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공공기관 (19)	한국장학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기관별 세부적인 일반현황, 수입·지출, 재무구조, 인력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 간 일 2022년 4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tel 02 · 2070 · 3114)

디자인 · 인쇄 ㈜명문기획 (02) 2079-9200

ISBN 979-11-6799-04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162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